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경영 이행가이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경영 이행가이드



일러두기

본 가이드는 중소·중견기업이 ESG 경영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요구받을 수 있는 ESG 관리항목을 소개하고, 항목별 의의, 이행방안, 사례 등을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주 사용자는 글로벌기업 또는 국내 대기업의 협력사로 최근 ESG 경영요구를 직접적으로 받는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상장기업(또는 준비중인 기업), 금융권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가이드는 ESG 수준 진단 또는 평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ESG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체계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리사항을 제시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이행가이드 목적 및 구성

- '21년 3월, EU에서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실사 논의로 인해 **국내외 대기업의 협력사 ESG 관리요구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ESG 경영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반면, 중소기업은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에도 **이행 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와 거래처의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도입 요구를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최근 국내 대 중소기업 193개 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ESG'에 대한 인식 및 협력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공급망 ESG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가이드라인 제공'**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본 가이드는 현 시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의 ESG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율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제시함으로써 ESG를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길잡이 역할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ESG 경영관점에서 당면 과제 및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스스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ESG 관리 항목'을 정립하고 항목별 이행방안에 대해 제시하였음
 -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행사례를 제시하였으나, 현재 중소기업의 ESG 도입사례가 매우 부족하여, 대기업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밝힘
- 본 가이드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 관점**에서 국내 제조기반을 둔 중소기업 외에 **ASEM 회원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확장**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제표준 및 글로벌 ESG 공급망 이니셔티브등을 참고하여 개발하였음
- ASEM 회원국 내 기업을 비롯한 해외(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ASEM 회원국) 진출 또는 진출 계획을 가진 국내 기업 등 글로벌 공급망 내 중소기업까지 본 가이드의 활용이 가능
- 향후 ASEM 회원국에 특화된 부가적인 콘텐츠 개발이 지속될 예정임

| 참고 |

본 가이드 활용 시 유의사항

- 본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관리항목과 항목별 이행 방안, 절차 등은 기업의 조직 여건, 밸류체인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기를 권장함
- 본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국내 ESG 관련 법안 및 사례를 중심으로 담은 것임. ASEM 회원국에 진출한 사업장에 대해 적용할 경우에는 관리항목은 참고하되, 이행방안에 있어서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규나 지침 등을 참고하기를 권장함

Contents

I 중소기업과 ESG

1. 국내외 ESG 동향	03
2. 중소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2-1. 고객의 ESG 요구	08
2-2. 신용평가에 ESG 반영	08

II 중소기업 ESG 이행 가이드

1. 중소기업 ESG 관리 항목	13
2. 항목별 의미 및 이행 가이드	
2-1. 환경(Environment)	19
2-2. 사회(Social)	67
2-3. 지배구조(Governance)	95



중소 · 중견기업과 ESG

1. 국내외 ESG 동향
2. 중소 · 중견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 2-1. 고객의 ESG 요구
 - 2-2. 신용평가에 ESG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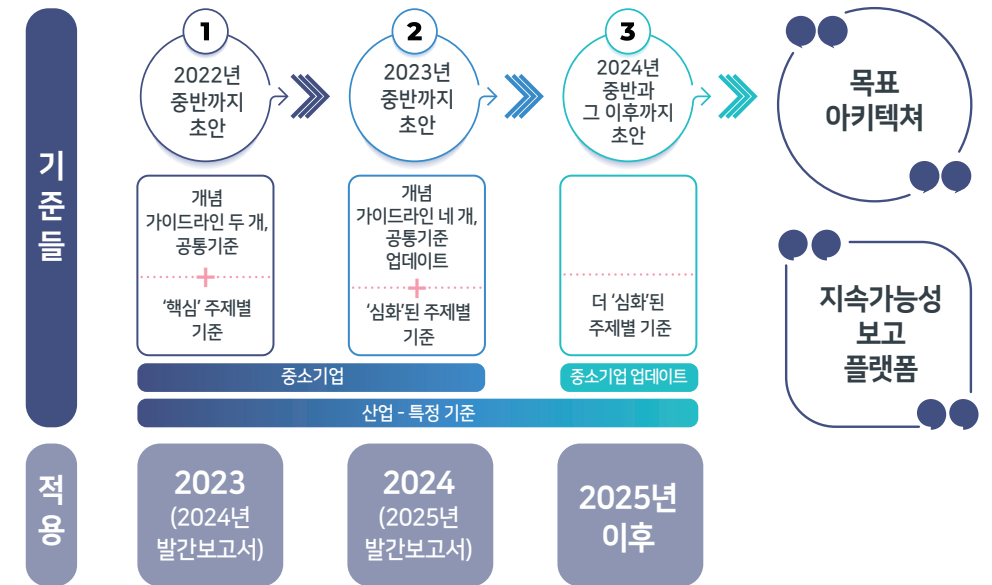
1 | 국내외 ESG 동향

국내외 주요 ESG 이슈 및 동향

🔍 국내외 ESG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 국내외적으로 ESG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법을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EU 집행위는 '21년 4월, 기존 비재무보고지침(NFRD)의 보고 요건을 수정한 기업 지속가능 보고 지침(CSRD)을 통해 중소기업에까지 공시 보고 의무 범위를 대폭 확대함
 - 중소기업의 경우, 비상장기업 및 초소형 기업을 제외한 모든 상장기업, 비EU법인의 EU 자회사 및 EU에 상장된 비EU법인도 '26년부터 지속가능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됨
 - 단, 중소기업의 규모 대비 커질 수 있는 부담 요인을 고려하여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대기업 대비 간소화된 지속가능성 표준화 기준 제시 예정(~'23년)

[그림1] 기업 지속가능 보고 지침(CSRD) 주요 내용



구분	CSRD 세부내용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비상장 대기업 전체(근로자수 250명 이상) • EU 상장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도 대상(단, 초소형 기업 제외) • EU 역내 상장된 외국법인도 대상에 포함
보고 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목표 및 성과 ▲경영진/자문 역할 ▲주요 지속가능 리스크 ▲측정 지표 ▲시기별(단기, 중장기) 정보 식별 절차 등 보고 •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감사(assurance)필요 • EU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에 따른 보고 요구
보고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보고 양식은 경영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식 • 보고 내용에 디지털 태그 요구(접근성 제고 목적)

| 출처 | 유럽 비재무정보 공시(NFRD) 보고서 한글 번역본, 임팩트온

- 이러한 흐름에 금융위는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환경(E)·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 활성화 및 단계적 의무화 추진 계획

[표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단계적 의무화 확대방안

구분	주요내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정보공개 가이드언스를 제시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 활성화 가이드언스에는 거래소가 직접 선정한 권고 공개지표 12개 항목, 총 21가지 지표에 관한 내용 포함 지표는 환경부문 5개 항목, 사회부문 4개 항목, 지배구조(조직) 부문 3개 항목으로 구분 * 환경(온실가스배출, 에너지사용, 물사용, 폐기물배출, 법규위반·사고), 사회(임직원 현황, 안전·보건, 정보보안, 공정경쟁), 지배구조(ESG 대응, ESG 평가, 이해관계자)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규모 이상(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

출처 | 금융위원회, 2021.01.14.,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 19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하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G)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26년부터 **소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의무공시 대상 단계적 확대**될 예정

[표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단계별 확대방안

적용시기	2019년(既시행)	2022년	2024년	2026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소코스피상장사

출처 | 금융위원회, 2021.01.14.,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



용어설명

-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란?** 환경 관련 기회·위험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 이슈 관련 개선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로, 매년 100여 개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이 중 거래소에 공시하는 회사는 20개사에 불과함('19년)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란?**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법인은 '19년 기준 200개사, '20년 기준 211개사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유럽에 진출계획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국내외 적으로 정보공시 의무화 움직임은 글로벌 공급망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다양한 ESG 경영과 정보공개 요구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탄소국경세 도입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탄소감축 전략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EU, 미국을 필두로 **주요국들은 탄소국경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음
- EU는 '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발표했으며 이는 고탄소 배출제품의 역내로 수입 시 제품별 탄소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구매 후 해당 수입에 대해 매년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2023년 시행 예정)

- 초기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인증서 구매 필요 없이 탄소배출량에 대한 신고로 대체할 예정이며, EU가 발표할 CBAM 세부 내용과 앞으로의 대응 및 협의과정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탄소세는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규모 관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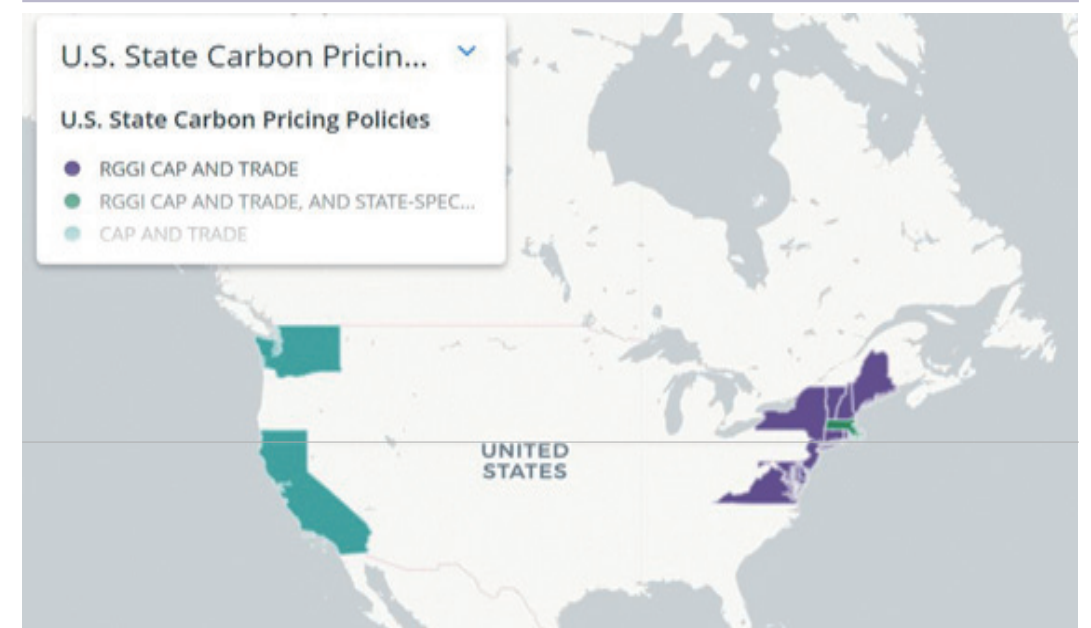
[표3]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누출 방지 및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 기업의 환경보호 노력을 유도
도입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2023~2025년 : 전환기간(수입품 탄소배출량 및 기납부 탄소비용 보고) 2026년 이후 : 본격 과세(탄소배출권(CBAM certificate) 구매 의무 부과)
적용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2026년 이후 적용대상 확대 가능)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과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업자가 CBAM 적용품목 수입 시 탄소배출량 만큼의 '탄소배출권(CBAM certificate)' 구매 * CBAM certificate: 이산화탄소 1톤 배출량에 해당, EU ETS 상 탄소배출권 주간 평균기에 판매될 예정
감면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지불한 경우 수입업체는 해당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의 감면 요청 가능
면제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와 유사한 탄소가격을 가진 국가(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최빈국 등에 대한 특별면제 검토 중

출처 | 뉴스웍스, 2021.07.29., '한은 "美·유럽 탄소국경세 도입하면 韓 수출 1.1% 감소"'

- 미국도 현재 탄소국경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강조하면서 **탄소국경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현재까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은 없으나 **卍 단위의 법안은 존재**하며,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는 탄소배출거래제를 운영하고 이외에도 미국 북동부 11개 주가 참여하는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도 존재함

[그림2] 미국 주별 탄소세 도입 지도



출처 | 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회계법인 EY한영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미국, 중국 3개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2023년 철강·석유·전자·자동차 등 **국내 주요 업종에서만 해마다 5억 3,000만 달러(6,000억 원)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3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해 16억 3,000만 달러(1조 8,700억 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많은 선진국에서는 탄소배출 감축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진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필수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탄소국경세 도입 국가들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탄소국경세는 일차적으로 유럽과 직접 교역을 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 업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수 있음
- 그러나 국가와 품목이 확장 될 가능성, 탄소 집약적인 소재(철강, 알루미늄 등)가 주 원료인 제품까지 규제가 강화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공급망의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

-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이슈 관리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서** 동시에 자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 공급망에 속한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EU소재 기업뿐 아니라 역내 수출 기업, 현지 법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도 제도 범위에 포함됨
 - 규제 대상 기업은 ESG 실사를 기반으로 공급망 ESG 실시 방법론, 잠재 ESG 부정영향, 공급망 ESG 관리 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실사 전략 보고서’ 형태로 매년 공시해야 함
 - 또한, 공급망 ESG 실사를 미이행하거나 공급망에서 이슈 발생 시, 벌·과금, 공공조달 입찰 배제, 정책적 지원 박탈 및 수입 제재 등 페널티를 받게 됨

구분	주요내용
적용 대상	• EU에서 활동하는 대기업 및 상장 중소기업
국제 기준	•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OECD 기업실사 지침, SDGs · EU 그린딜, 파리협정
실사 항목	• 인권 · 환경 · 지배구조
실사 범위	• 자사 사업장 사업 관계사, 전 공급망(Whole supply chain)
의무 사항	• 無연관 성명서 제출 * 기업실사 실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법적 제재	• 총매출액 기준 벌금 • 공공조달 및 공적자금 지원에서 제외

출처 | 중기이코노미, 2021.10.05., ‘글로벌 ESG공급망’ 관리 법률로 의무화 될 것

- 또한, EU차원의 공급망 실사법과 더불어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 회원국들은 개별적인 국내 실사법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유엔책임투자원칙(PRI)는 투자 과정에서 인권 항목을 포함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존 정보공개 프레임워크 중 한 부분으로 **공급망 인권 보고 의무화 방안을 추진** 중

- 미국의 경우, 『노예제근절 기업인증법』이 작년 발의된 상태이며, 이와 별개로 매해 신장 공급망 비즈니스 자문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행위를 근거로 신장지역관련 **공급망과 투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

국가	법안명	시행연도
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	2024
독일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2023
영국	현대노예법(UK Modern Slavery Act)	2015
프랑스	기업경계법(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	2017
네덜란드	아동노동실사법(Child Labor Due Diligence)	2022
미국	노예제근절기업인증법(Slave-Free Business Certification Act)	2020 발의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2012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2021.10.1.

- 기업 차원에서도 환경 규제 미준수로 인한 사업중단, 인권·노동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과 공급중단, 기업 이미지 훼손 등 리스크 예방을 위해 공급망 ESG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대기업이 ESG 공급망 관리 강화를 선언하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에게 인권과 환경을 중시하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중요 과제로, 전사 차원에서의 투명한 공급망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2 | 중소기업 ESG 경영 필요성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ESG 경영 상 당면 과제

고객의 ESG 경영 요구

- 국내외의 다국적기업들은 자사 제품 생산에 있어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공급망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하기 시작했고, 일부 기업들은 **공급망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ESG를 실천하지 않는 공급사와 거래를 제한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표6] 국내 주요기업 공급망 관리 현황

기업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를 통한 고위험 요소 개선 등 공급망 사회·환경 영향 관리 • RBA 협력사 평가를 통해 협력사의 지속경영 역량 평가 • SK하이닉스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및 전 협력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기준 및 법규 준수 요구 • 에코파트너 인증 취득 협력사에 한해 거래 진행 • 협력사의 부품, 원료, 생산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 평가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 대상 자가진단 및 현장실사를 통한 공급망 ESG 리스크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회 공급망 ESG 지속가능성 리스크 사전 스크리닝 및 현장진단 •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및 거래 제한 등 패널티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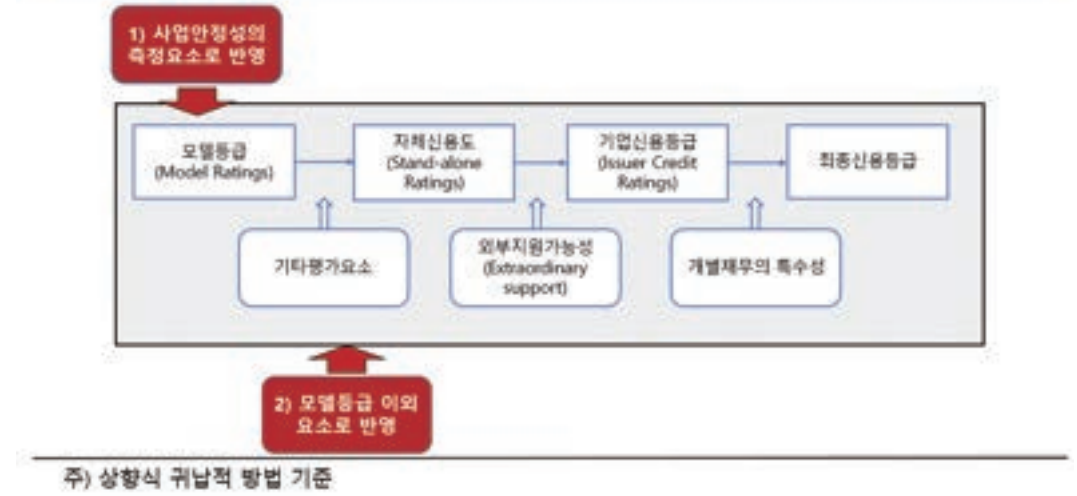
- ESG 요소에 대한 공급망 관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를 중심으로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새로운 무역장벽의 리스크도 고려**해야 함
-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ESG 친화적인 기업 제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ESG가 제품 구매 의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급망에 속하지 않는 기업도 ESG 경영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기업의 ESG 활동이 제품구매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3%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ESG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70.3%가 '경험이 있다'고 답함
 - 특히 '친환경·사회공헌·근로자 우대' 등 ESG 우수기업 제품의 경우, 경쟁사 동일제품 대비 추가 가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88.3%에 달함

신용평가에 ESG 반영

- 해외 신용평가사의 경우, 국내보다 빠르게 **ESG 평가 결과를 신용등급에 반영**하였으며, 이렇듯 신용평가에 ESG를 반영하는 글로벌 사례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듀크 에너지(Duke Energy)의 경우, 석탄발전소에서 과도하게 석탄재가 배출된다고 보고 신용등급을 'A-Stable'에서 'A-Negative'로 조정하여 ESG에 따른 신용위험을 알림
- '20년 10월, 한국신용평가는 최초로 **신용평가 시 ESG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특수목적채권 외에도 회사채 평가에 ESG 요인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위한 ESG 위험요인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ESG 리스크가 신용등급에 반영되는 과정을 설명하였음

[그림3] ESG 위험요인 분석 프레임워크

[그림 1] KR 등급결정체계 상 ESG 요인 반영 방법



출처 | 임팩트온, 2021.06.14., '한기평, 채권·회사채에도 ESG 반영한다'

- 한국신용평가 이외에도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 3사 모두 ESG 인증 평가를 도입하여 실시 중이며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기업들에게 **ESG 경영이 재무적 위험을 넘어 신용위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함
 - 3사 모두 공동으로 프로젝트 적합성, 사후보고 체계, 조달 자금관리 측면으로 ESG를 평가하는 것은 동일하나 각 평가 요소에 대한 가중치나 구체적인 항목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음
- 급변하는 정부 정책 및 규제와 고객의 ESG 요구 강화, 신용평가 영향 등 ESG를 둘러싼 여러 이슈는 곧 **기업의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 가능한 **기회/리스크 요인은 향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ESG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은 사전에 탄소 규제, 기업공시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고객사 및 소비자의 요구, 신용평가에 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전체적으로 ESG 경영 수준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중소 · 중견기업 ESG 이행 가이드

1. 중소 · 중견기업 ESG 관리 항목
2. 항목별 의미 및 이행 가이드
 - 2-1. 환경(Environment)
 - 2-2. 사회(Social)
 - 2-3. 지배구조(Governance)

1 | 중소기업 ESG 관리 항목

중소·중견기업의 각 ESG 관리항목별 자가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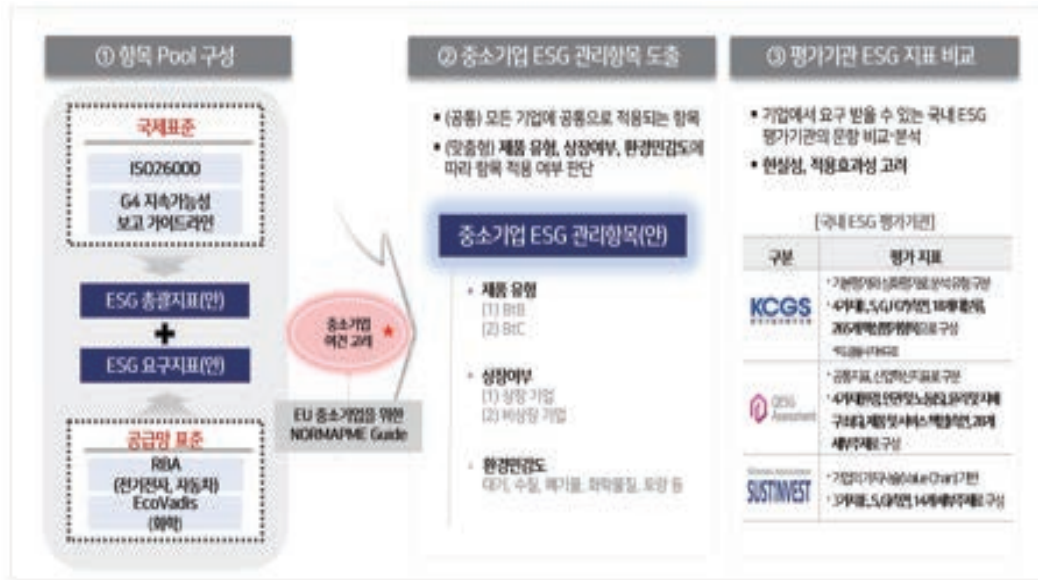
- ESG가 활성화됨에 따라 검증·평가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급증하고, 평가 지표가 다양해져 기업들이 ESG 경영과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주제의 범위가 광범위함

[표] 국내외 주요 ESG 검증·평가기관	
구분	기관명
해외	블룸버그, 로베코, FTSE, CDP, MSCI, FTSE러셀, S&P,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 레피니티브(Refinitive), ISS, BSI Group Korea, DNV 등
국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로이드, 한국품질재단, 한국경영인증원, 한국표준협회, 한국기업데이터, 한화자산운용, 서스틴베스트 등

출처 | 머니S뉴스, 2021.08.16.,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81309138053977>

- 이렇듯 다양한 지표 가운데 ESG 경영 추진에 앞서 중소기업들은 영역별 실질적 리스크 및 기회 관리를 위해 경영 현황과 ESG 실행 능력을 식별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사만의 실천 과제를 스스로 정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이에 본 가이드에서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항목을 설정할 수 있도록 ESG 경영을 추진하는 데 고려해야 할 범위로서 **‘중소·중견기업 ESG 관리항목’**을 제시함
- ‘중소·중견기업 ESG 관리항목’은 크게 ①지표 풀(pool) 구성, ②중소기업 ESG 관리 항목 도출, ③평가기관 ESG 문항 비교와 같은 3가지 단계를 거쳐 도출하였음
 - (지표 Pool 구성) 국내외 ESG 관련 표준 및 공급망 이니셔티브 상 진단·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지표 Pool을 구축함으로써 ESG 경영 추진 범위 정의
 - (중소기업 ESG 관리항목 도출) 지표 Pool 가운데 중소기업의 규모 등 여건을 고려하여 중요도가 높거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항목 도출
 - (평가기관 ESG 문항 비교) 금융기관, 원청기업, 제3자 평가기관 등에서 중소기업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기준과 비교를 통해 현실성, 적용효과성 점검 및 보완
- 중소·중견기업 여건 고려 시, ‘EU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NORMAPME)’과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참여기업의 현황 및 피드백을 참고하였음
- 도출된 항목은 국제표준 및 이니셔티브, 평가지표에서 중복하여 언급하는 사항을 ESG 경영 범위(Scope)로 정의하고 있으며,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 외에 기업의 **고객 유형, 상장여부, 환경민감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구분됨**
- 따라서 각 중소기업은 자사 비즈니스 특성과 당면 규제 등 경영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통해 항목별 관리 방향을 조정할 수 있음

[그림4] 중소·중견기업 ESG 관리항목 도출 접근방법론



출처 | 머니뉴스, 2021.08.16., 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1081309138053977#_entiple

[표] '중소·중견기업 ESG 관리항목' 구성 체계

구분	표기 방법	정의
핵심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O, GRI, EU Normapme 등 국제 표준과 RBA, EcoVadis 등 공급망 표준에서 대부분 요구하는 항목 업종과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요구받는 항목으로 최대한 도입하기를 권장함 "E"부문에서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4개 항목은 적용대상일 경우 도입 대응하지 못했을 때 리스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 핵심항목으로 배치되는 특징을 보임 e.g. 컴플라이언스(법적제재), 사고예방(피해보상), 에너지&온실가스(거래) 등
부가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O, GRI, EU Normapme 등 국제 표준과 RBA, EcoVadis 등 공급망 표준 중 일부에서 요구하는 항목 기업규모(조직여부), 사업여건,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기를 권장함
조건항목	●* 또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유형(B2C or B2B), 상장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관리항목

- '중소·중견기업 ESG 관리항목'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의 3가지 측면에 대해 E(환경)부문 19개, S(사회)부문 10개, G(지배구조)부문 9개로, 총 3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중소·중견기업의 특징 및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S(사회), G(지배구조) 부문은 최소화함
 - (E) 다른 부문에 비해 문항이 상대적으로 세분화 (5개 중분류, 19개 항목) 되어 있으며, 업종별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매체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함
 - (S) 4개의 중분류, 10개의 항목으로 구성, (G) 3개의 중분류, 9개의 항목으로 구성
- 관리항목은 업종, 규모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핵심항목(24개)과 기업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부가항목(14개)로 구성됨
- 제품 유형, 상장여부, 공급망 포지셔닝에 따라 관리항목이 상이하다는 특징을 반영하여 상장기업 과 B2C 기업군 등에 추가 요구되는 항목(9개)은 *로 별도 표기하였음
 - 비즈니스 대상이 소비자(Customer)인 B2C 기업은 환경(E), 사회(S) 부문에 있어 제품 환경 및 소비자이슈 등 소비자 관련 6개 항목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음
 - 상장기업은 지배구조(G) 부문의 이사회 운영, 준법경영, 정보공개 등 3개 항목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음

중소·중견기업 ESG 관리 항목

● 핵심항목, ○ 부가항목, * 조건항목(B to C, 상장기업 등의 경우 해당)

대분류	대분류	항목	세부내용	항목
환경	환경경영	전략	환경경영 목표와 세부 추진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시스템	환경경영 실행을 위한 내부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인증	사업장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ISO 14001 등)을 확보 또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
		컴플라이언스	환경법규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있습니까?	●
	환경오염예방	대기	대기오염물질 관리(NOx, SOx, 먼지 등 배출량 파악 및 관리, 저감 프로그램 등)를 하고 있습니까?	●
		수질	수질오염물질 관리(BOD, COD/TOC, SS, T-P, T-N 등 배출량 파악 및 관리, 저감 프로그램 등)를 하고 있습니까?	●
		폐기물	사업장 내 폐기물 관리(일반/지정/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매립/소각/재활용/기타처리량, 원천저감 프로그램, 재활용 촉진 등)를 하고 있습니까?	●
		화학물질	화학물질 관리(배출량 파악 및 관리, 저감 프로그램 등)를 하고 있습니까?	●
		기타	토양/지하수, 해양오염, 소음진동 등 기타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사고예방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고 시 비상대응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자원사용절감	원부자재	원부자재 사용량 관리와 절감(재생소재 사용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수자원	사업장 내 용수사용량 관리와 절감(재이용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에너지/온실가스	에너지절감	에너지 사용량 관리(직접에너지/간접에너지 사용량)와 절감을 위한 활동(고효율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하고 있습니까?	●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사업장 내 재생에너지를 사용(구매·생산)하고 있습니까?	○
		온실가스	온실가스 관리(직접/간접 배출량 산정, 관리, 보고)와 감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
	제품환경	기술투자	제품의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해 R&D투자, 기술 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친환경설계	제품 설계 시 수송, 사용, 폐기단계 등 제품의 전 과정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제품/기술 인증	제품/기술에 대한 친환경인증(환경표지, 우수재활용(GR), 저탄소인증, 녹색기술, 환경신기술 등)을 확보 또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
		소비자보호	제품 사용 시 소비자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한 대책(위험평가, 대체물질 사용, 위험고지 등)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습니까?	○*
	사회	인권/노동	근로조건	법정 근로시간 및 합리적 근로시간을 장려하고 산업평균 수준의 복지혜택(육아휴직, 자기계발 기회 확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강제노동/아동노동			조직의 고용 관행 내 강제노동/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

대분류	대분류	항목	세부내용	항목	
사회	인권/노동	다양성/기회균등	임직원에게 고용, 승진, 업무 수행에 있어 성별, 장애 유무, 출신국가 등 요건에 의한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공개적 수치심, 폭언 등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 위반 시 징계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방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매년 재해율을 관리하고, 근로자 안전/보건 정책 및 프로그램(안전보건 교육,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인증	사업장 또는 제품(기술)에 대한 안전보건경영 인증(ISO 45001, MADE SAFE® 등)을 확보 또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	
	소비자 이슈	개인정보보호	수집, 보관, 처리에 관한 정보 보안 법률 요건을 준수하는 개인정보 보안 규정 및 지침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제품안전 및 품질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안전 및 품질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까?	●*	
		소비자 의견 수렴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드백 할 수 있는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사회공헌	지역사회 발전 및 참여	지역사회 공헌 및 개발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관련 활동(공헌방침 수립, 산학협력, 창업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	
	지배구조	ESG 경영체계	최고경영자 의지	최고경영자는 ESG 경영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습니까?	●
			조직/시스템	ESG 경영 추진을 위한 담당 인력 또는 조직이 있으며,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이사회 운영			ESG 기회 및 위기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준법경영		준법경영	ESG 관련 법규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관련 리스크가 없도록 관리하는 조직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윤리경영	반부패, 공정경쟁 등 사업청렴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습니까?	●	
커뮤니케이션		정보공개	이해관계자들의 ESG 정보공개 요구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	
		내부 의사소통	ESG 관련 이슈 발생 시, 내부 직원에 대한 비밀보장, 고충처리, 차별 및 보복 금지 등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	
공급망 관리		환경	협력사 선정 시 법규준수 여부, 환경리스크 등을 선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	
		사회	협력사 선정 시 공정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 인권보호, 윤리경영 적용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	

※ 청색 음영처리된 항목은 업종 및 사업장의 특성 등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 종류에 한해 적용여부 결정

[표7] '중소·중견기업 ESG 관리항목' 및 ESG관련 국제 표준/이니셔티브, 평가지표 비교

분류	항목	ISO 26000	GRI	Normapme	RBA	EcoVadis	CGS	QESG	SUSTINVEST
환경	전략	●	●	●	●	●	●	●	
	시스템	●	●			●	●	●	
	인증					●	●	●	●
	컴플라이언스		●		●	●	●	●	
	대기	●	●	●	●	●	●	●	●
	수질	●	●	●	●	●	●	●	●
	폐기물	●	●	●	●	●	●	●	●
	화학물질	●		●	●	●	●	●	●
	기타					●			
	사고예방	●	●		●	●	●		●
	원부자재	●	●	●	●	●		●	
	수자원	●	●	●	●	●	●	●	●
	에너지절감	●	●	●	●	●	●	●	●
	재생에너지	●		●					
	온실가스	●	●		●	●	●	●	●
	기술투자	●					●	●	●
	친환경설계	●		●			●	●	●
	제품/기술 인증			●				●	●
	소비자보호	●	●	●	●	●	●		
	사회	근로조건	●	●	●	●	●	●	●
강제노동/아동노동		●	●	●	●	●		●	
다양성/기회균등		●	●	●	●	●	●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		●	●	●	●	●
산업재해 방지		●	●	●	●	●	●	●	●
인증						●		●	●
개인정보보호		●	●	●	●	●	●		●
제품안전 및 품질		●	●	●			●		●
소비자 의견 수렴		●		●	●		●		
지역사회 발전 및 참여		●	●	●			●		●
지배 구조	최고경영자 의지	●	●		●	●	●	●	●
	조직/시스템	●	●		●	●	●	●	●
	이사회 운영		●		●		●	●	●
	준법경영	●	●	●	●	●	●	●	●
	윤리경영	●	●	●	●	●	●	●	●
	정보공개		●		●	●	●	●	●
	내부 의사소통	●		●	●	●		●	
	환경	●	●	●	●	●	●	●	●
	사회	●	●	●	●	●	●	●	●

2 | 항목별 의미 및 이행 가이드

I. 환경(Environment)

부문별 관리항목

● 핵심항목, ○ 부가항목, * 조건항목(B to C, 상장기업 등의 경우 해당)

중분류	체크리스트	구분
전략	환경경영 목표와 세부 추진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시스템	환경경영 실행을 위한 내부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인증	사업장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ISO 14001 등)을 확보 또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
컴플라이언스	환경법규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있습니까?	●
대기	대기오염물질 관리(NOx, SOx, 먼지 등 배출량 파악 및 관리, 저감 프로그램 등)를 하고 있습니까?	●
수질	수질오염물질 관리(BOD, COD/TOC, SS, T-P, T-N 등 배출량 파악 및 관리, 저감 프로그램 등)를 하고 있습니까?	●
폐기물	사업장 내 폐기물 관리(일반/지정/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매립/소각/재활용/기타처리량, 원천저감 프로그램, 재활용 촉진 등)를 하고 있습니까?	●
화학물질	화학물질 관리(배출량 파악 및 관리, 저감 프로그램 등)를 하고 있습니까?	●
기타	토양/지하수, 해양오염, 소음진동 등 기타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사고예방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고 시 비상대응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원부자재	원부자재 사용량 관리와 절감(재생소재 사용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수자원	사업장 내 용수사용량 관리와 절감(재이용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에너지절감	에너지 사용량 관리(직접에너지/간접에너지 사용량)와 절감을 위한 활동(고효율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하고 있습니까?	●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사업장 내 재생에너지 사용(구매·생산)하고 있습니까?	○
온실가스	온실가스 관리(직접/간접 배출량 산정, 관리, 보고)와 감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
기술투자	제품의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해 R&D투자, 기술 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친환경설계	제품 설계 시 수송, 사용, 폐기단계 등 제품의 전 과정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제품/기술인증	제품/기술에 대한 친환경인증(환경표지, 우수재활용(GR), 저탄소인증, 녹색기술, 환경신기술 등)을 확보 또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
소비자보호	제품 사용 시 소비자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한 대책(위험평가, 대체물질 사용, 위험고지 등)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습니까?	○*

※청색 음영 처리된 문항은 사업장의 특성(업종 등)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 종류에 한해 적용여부가 결정됨

- 최근 코로나 사태로 환경, 보건,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자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20 세계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세계를 위협할 요인 'TOP 5'는 모두 환경 문제가 독자지하였으며, 이에 전 세계 경제상황과 관련해 환경 문제 해결을 제일 우선 시 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의 경영방향과 실적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1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ESG의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60% 수준으로 가장 많았음** ※사회는 26.7%, 지배구조는 13.3%
- 환경 분야 중에서도 **기후변화·탄소배출(26.7%)**이 가장 화두이며, 기후변화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탄소중립이 손꼽히면서 국내외적으로 **저탄소·탈탄소**로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
 - 2021년 4월, 40개국에 참여한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해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앞 다퉈서 발표했으며, 한국 역시 2030년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대폭 상승함
- 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ESG 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 환경 분야가 39.7점으로 지배구조(68.8점)나 사회(47.6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임에 따라 환경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업은 생존을 위해 환경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E-1 | 환경경영 > 전략

관리 항목

환경경영 목표와 세부 추진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기업은 환경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의의

추진목표는 곧 기업이 전반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을 나타내는 이정표이며 세부 추진계획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 환경경영의 최대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선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보유해야 함

- 추진목표와 계획은 환경경영 방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 도달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여 조직을 행동하게 만들
- 지금과 같이 경영 환경의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추진 계획은 일관된 방향으로의 발전을 가능케 함으로서 기업의 효율적인 ESG 경영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줌

이행 방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의 위험과 기회요인을 모색하고 세부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목표는 정량적·정성적으로 설정해야 함

- 기업은 목표 수립 시 중·장기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시각에서 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자사의 현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함
 - 환경경영 관련 법률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기업의 중요한 환경측면, 기술적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영업상 요건과 시장 환경의 변화, 이해관계자의 요구 등 주요 이슈를 고려해서 목표를 수립하도록 함
 - 환경경영의 목표는 매해 실행평가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음
- 환경경영의 목표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음
 - 첫째,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사회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방향
재생에너지, 그린모빌리티, 자원순환, 친환경 소재 및 제품 등
 - 둘째, 기존 비즈니스(사업장, 제품)에서 저탄소기술을 도입하여 수주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
친환경 원료 구입, 순환자원 이용, 저탄소 공정기술, 친환경 기술도입 등
 - 셋째, 기존 비즈니스가 유지되기 위해 규제준수를 철저히 하는 방향
환경인허가 정비, 컴플라이언스 체계, 환경경영 데이터 관리 등
- 세부 추진계획은 환경목표와 서로 일치해야 하며, 기업 내부의 환경성과를 효율적으로 높이고자 경영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인력계획, 설비 투자 계획, 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 등 조직 전체의 활동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되도록 함
 - 모든 세부 추진계획은 'SMART' 요소를 포함하여 특정적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며(Measurable) 기업의 구성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을 만큼(Agreed-to) 합리적이며(Reasonable), 시간 및 기간이 고려(Time-bound)되어야 함
- 설정된 환경경영 목표 및 세부 추진 계획은 문서화하여 조직 전반에 철저히 주지시키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이행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함

| 사례 1 |

ESG 로드맵 수립

- S사는 기업의 ESG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ESG 각 부문별 세부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2030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공식 홈페이지 상 공개함으로써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 선포

[그림5] S사 2030 ESG 로드맵



| 출처 | S사 홈페이지

비고 (출처)

- GRI G4 Standards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E-2 | 환경경영 > 시스템

관리 항목 | 환경경영 실행을 위한 내부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항목 구분 | ○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합한 환경성과 평가지표(KPI)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의의 | 성과관리는 조직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들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으로, 경영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전략의 실행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성과관리를 통해 개인의 업무와 조직 및 팀 성과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대 수준과 실제 수준과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과 조직 역량개발 및 전사적 전략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함
- 환경성과관리시스템은 기업의 다양한 환경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리수단으로, 기업의 환경경영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그 필요성이 대두

이행 방안 | 환경전략과 기업의 특성 및 상황 등을 반영하여 목적에 부합한 환경성과 평가지표(KPI)를 설정하고, 환경경영 이행 수준,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 환경법규 및 규제 준수 등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함

- 환경성과 평가지표(KPI)는 전략수립 과정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선정하고, 기업의 여건, 국내 또는 글로벌 관련 이슈 등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성과관리와 전략 수립 프로세스는 일련의 과정으로,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의 선정과 목표 설정 등의 작업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통을 통해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비재무적인 부분의 성과 향상을 고려한 균형 잡힌 의사결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고려한 공정한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평가 가능
- 성과관리체계는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하여 단시간에 구축될 수 없으므로 조직의 성숙도에 따라 도입 정도를 결정하도록 하며, 초기부터 무리하게 확대 적용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사례 1 | 1:1 성과관리 프로그램 도입

- H사는 리더와 구성원이 주기적으로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리더 대상 제도 설명회 및 코칭 스킬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 체제 활성화

| 출처 | 한국경제, 2020.09.17., 'H사, 1:1 성과관리 프로그램 도입'

| 사례 2 | 녹색경영시스템 성과지표(KPI)

- 조직은 녹색경영시스템의 효과적 실행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녹색경영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해야 함
- 녹색경영 성과지표 선정 시 '①외부 요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의 특성, ②국내외 표준 부합성, ③효과적 실행, 측정 및 개선 시 필요성'을 중점으로 고려해야 함
- 조직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필수 녹색경영 성과지표 이외에 추가적인 지표를 고려할 수 있음

[표8] 필수 녹색경영 성과지표

경영성과지표 (MPI)	운영성과지표 (OPI)
녹색경영 목표 수립률	에너지 사용량
녹색경영 목표 달성률	에너지 사용량 원단위
MRO 제품에 대한 녹색구매 비율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원부자재에 대한 녹색구매 비율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녹색제품 투자 비율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녹색제품 비율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용수 사용량
교육훈련기간	용수 사용량 원단위
의견 및 이의제기	원부자재 사용량 원단위 개선률
사업장 관련 법규위반	폐기물발생량 원단위
제품 공급 관련 법규위반	폐기물 재활용률
녹색경영 성과 공개 주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원단위
녹색공정 투자 비율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원단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원단위

| 출처 | <http://isoerp.com/green-1.php?PHPSESSID=4a84f8f69b7ef42f1a70f17d60711c5b>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E-3 | 환경경영 > 인증

관리 지표 토양/지하수, 해양, 소음진동 등 기타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

친환경경영 및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인증을 통해 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의의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인증은 기업의 환경경영 추진 계획, 환경성과,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고객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하여금 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주는 효과

-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은 취득 준비 과정에서 기업의 환경경영 프로세스가 정립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ESG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함

이행 방안 ISO 14001, ISO50001, GMS 등 국내외 사업장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함

- 하기 설명하는 인증 외 '친환경', '녹색', 'ECO', '저탄소'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 분야 및 활동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혁신 역량 강화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인증체제도 같은 효력을 발휘함
- 취득한 인증은 환경경영에 대한 기업의 의지 및 경영 성과 등과 같은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해야함

[표9] 국내외 주요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주요 인증		세부내용	
ISO14001 (환경경영)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이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수행하고 관리하고 있음을 인증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해 사전에 환경문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적 접근방법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활동 전반의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표준 요구사항 이행 조직의 상황, 리더십, 기획, 지원, 운영, 성과평가, 개선 등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화를 위한 직접비용 절감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사고의 사전 예방 · 최소화 환경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환경 문제점 해결 국제적 신뢰 획득을 통한 Green기업 이미지 개선 및 대외 무역장벽 극복
ISO50001 (에너지경영)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 · 개선에 대한 인증 규모와 산업, 지리적 위치 상관없이 어느 조직이든 적용 가능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EnMS(에너지경영시스템) 표준 요구사항 이행 경영책임, 에너지방침, 에너지기획, 실패 및 운영, 점검, 경영검토 등 에너지 소비와 목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주요 부분 확인 및 정책 개발 · 실행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처와 수요처를 포괄하는 전사적 에너지 관리 실현 에너지 저감 및 효율 개선 기술 확보 및 상품화 핵심인력 코칭을 통한 시스템구축으로 실무담당자의 역량 확보 목표관리제를 비롯한 관련 국내외 법 규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및 GMS, ISO14001, ISO9001 등 인증과 통합 용이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통한 이해관계자와의 녹색성과 커뮤니케이션
GMS (녹색경영)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녹색경영시스템이 정해진 표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 평가 조직이 녹색경영 성과를 지속적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 ※ 녹색경영: 조직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경영 필수요소 및 성과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만족 필요 (필수요소) 에너지경영, 온실가스 배출 · 제거 관리,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 (성과평가) 경영성과지표(MPI) 13개, 운영성과지표(OP) 14개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친화적 기업이미지 제고 GMS 인증 취득을 통해 ISO50001 핵심 충족 가능

비고 (출처)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E-4 | 환경경영 > 컴플라이언스

관리 항목 환경법규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있습니까? **항목 구분**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민감도가 높은 제조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환경법규 제 ·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경매체별 준법감시 및 내부관리를 위한 인력 또는 담당조직이 지정되어야 한다.

의의 기업의 다양한 환경 법규 준수는 위반 자체로의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및 사고, 분쟁 등의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관리 활동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기업에서는 제품의 생산을 포함한 제반 행위에 대해 다양한 환경 법규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배상책임, 벌금, 행정조치, 기업의 이미지 하락 등 직 · 간접적 제재로 인해 경제적 손실 및 책임 비용이 발생하게 됨
- 그럼에도 2020년 국내 환경법규 위반 현황 조사 결과, 2,370건의 위반이 발생하였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개선명령, 초과부과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음
 -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제정 · 개정되는 각종 환경법규에 대한 부담과 기업 차원의 전략, 대응 부족 등으로 환경 법규 위반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함

[표10] 2020년 매체별 행정처분 공개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계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조업정지, 과징금 등	개선명령, 경고 등	초과부과금, 손수고발 등
대기	1,083(45.7%)	137(12.7%)	50(4.6%)	864(79.8%)	32(3%)
수질	676(28.5%)	43(6.4%)	57(8.4%)	526(77.8%)	50(7.4%)
폐기물	117(4.9%)	8(6.8%)	39(33.3%)	65(55.6%)	5(4.3%)
화학	283(11.9%)	0(0%)	0(0%)	283(100%)	0(0%)
토양	2(0.1%)	0(0%)	0(0%)	2(100%)	0(0%)
소음 · 진동	176(7.4%)	9(5.1%)	13(7.4%)	146(83%)	8(4.5%)
가축 · 분뇨	32(1.4%)	3(9.4%)	6(18.8%)	18(56.3%)	5(15.6%)
기타	1(0%)	0(0%)	0(0%)	1(100%)	0(0%)
총계	2,370(100)	200(8.4)	165(7)	1,905(80.4)	100(4.2)

출처 | ㈜에코엔파트너스, '2020년 환경법규 위반현황 및 환경관련 뉴스자료 조사'

- 제재조치가 벌어진 후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은 극도로 제한적이고, 손실 비용이 크므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전에 컴플라이언스에 관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음

이행 방안 다양한 환경법규 중 기업 운영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규제를 파악하고, 관련 법률 공유 제 · 개정 사항 모니터링, 자가 진단 등 효과적 내부통제 및 자발적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일련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환경부 소관 법률의 약 40%가 기업의 활동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법규로, 기업은 관리해야 할 법률 · 규제를 목록화하여 제 · 개정사항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
 -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자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법률을 미리 파악하고, 전체가 아닌 법률 내 규제를 목록으로 정리함으로써 관리 대상을 축소하도록 함

[표11]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규제 법안

번호	법률	번호	법률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14	자연환경보전법
2	대기환경보전법	15	지하수법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6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4	대기관리구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7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5	물환경보전법	18	화학물질관리법
6	석면안전관리법	19	폐기물관리법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환경정책기본법
9	소음/진동관리법	22	환경영향평가법
10	약취방지법	23	환경보건법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3	토양환경보전법		

출처 | <https://www.better.go.kr/ba.rgst.MiniRegulNLawSIPL.laf>

- 또한, 시스템에는 환경법규 위반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활동 등 사후 조치에 관한 계획도 포함되어야 함
-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해외 수출기업은 국내에서 발효된 각종 환경관련 법률 및 지침과 더불어 수출 국가의 다양한 환경 관련 지침들도 고려해야 함

| 사례 1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COMPASS

- COMPASS는 주요 국가·산업별 환경규제와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최신정보(뉴스), 분석보고서, 법률 요약정보·원문 및 환경제재 사례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종합정보망을 제공
- 또한,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 컨설팅, 환경규제 관련 행사, 세미나 및 교육 진행

[표12] 종합정보망 내 주요 정보

구분	내용
국제 환경규제	국내외 환경규제·협약 최신뉴스, 국내외 환경규제·협약분석 보고서, 국내외 환경규제·협약 법률 요약정보 및 원문 정보, 환경제재 사례
규제물질정보	EU REACH SVHC후보물질, EU REACH 허가물질/제한물질, EU RoHS 예외조항 부속서 III/부속서 IV
출판물	센터에서 발간한 국내외 환경규제·협약 분석·대응·이행 관련 출판물
자료실	센터에서 개최·실시한 각종 행사, 세미나 및 교육 관련 자료집
전문기관 정보	국내외 환경규제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소개 및 등록(신청)
모니터링 정보 제안	환경규제 모니터링 외부 전문가의 국내외 환경규제 분석 관련 정보화 제안
상담지원	전화·온라인·센터 방문·비대면 상담, 현장 컨설팅
행사·세미나·교육	행사, 세미나 및 교육 등 개최 공지 및 각종 기업지원사업 등 안내사항 공지

출처 | <https://www.compass.or.kr/>

| 사례 2 | 환경법규 위반 현황 관리

- S사는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엄격한 사내 관리 기준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최근 3년 환경법규 위반 현황을 관리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외부에 공개

[표13] S사 환경법규 위반 현황

구분	단위	연도		
		2018	2019	2020
벌금	건수	0	0	0
	금액	0	0	0
제재 건수	건수	0	0	0

출처 | S사 2020 CSR 보고서

| 사례 3 | 환경법규 준수 평가표

- S사는 사업장이 적용받는 법률의 준수 사항을 정리하여 평가표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준수여부 확인

[그림6] 환경법규 준수 평가표 (예시)

구분	법규	준수 평가 항목	준수 여부		준수 사항(비고)
			확인	준수	
대기 환경 법규	국회 제213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사항		○	연간오염물질 배출량
	국회 제214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사항		○	연간오염물질 배출량
	국회 제215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사항		○	연간오염물질 배출량
	국회 제216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사항		○	연간오염물질 배출량
	국회 제217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사항		○	연간오염물질 배출량
	국회 제218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사항		○	연간오염물질 배출량
	국회 제219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사항		○	연간오염물질 배출량
	국회 제220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사항		○	연간오염물질 배출량
	국회 제221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사항		○	연간오염물질 배출량
	국회 제222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사항		○	연간오염물질 배출량
	국회 제223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사항		○	연간오염물질 배출량
	국회 제224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사항		○	연간오염물질 배출량
	국회 제225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사항		○	연간오염물질 배출량
	국회 제226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사항		○	연간오염물질 배출량
	국회 제227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사항		○	연간오염물질 배출량

출처 | S사, 2012.11.8., '환경법규 준수 평가표'

비고 (출처)

- GRI G4 Standards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E-5 | 환경오염예방 > 대기

관리 항목

대기오염물질 관리(NOx, SOx, 먼지 등 배출량 파악 및 저감 프로그램 등)를 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1~5종 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발생량기준)의 경우 해당
- 생산 공정의 대기배출시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발생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의의

환경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현 상황에서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각 매체별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및 감축활동은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임

- 특히, 미세먼지의 대규모 감축을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등 대기환경 규제는 오염물질 배출 및 감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음
- 다양한 환경 분야 중 대기 분야의 중요성 강화는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기업의 환경성과 및 경쟁력 확보 등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저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이행 방안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배출량을 정량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현황을 고려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다양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함

[표14] 대기오염물질 관리 절차

단계	세부내용
① 대기오염 적법관리체계 구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적법 관리를 위한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관리 및 지속적 모니터링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주요 관리 데이터: 질소산화물(NOx) 배출량(ton), 황산화물(SOx) 배출량(ton), 먼지(TSP) 배출량(ton),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원단위(NOx, SOx, TSP)(ton/억 원) 등
③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 설정	오염물질 배출 실적 및 재무·회계적 의사결정 기반 감축 목표 구체화
④ 대기오염물질 저감 활동 이행	오염물질 저감 기술 도입, 주요 방지시설 설치, 노후시설 및 공정 개선 등
⑤ 정보 공개	배출량, 감축목표, 감축 활동 성과 등 관련 정보 내·외부 공개

※기본적으로 환경데이터는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 통일된 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기오염 적법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내 배출시설·배출구 현황 및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파악하여 관리대상을 목록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 상 배출허용기준을 모니터링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주기적으로 측정·산정함으로써 사업장 전체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해야 함
 - 배출량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확인하거나 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한 실측에 의해 계산할 수 있음
 - 대상 사업장에 한해 배출농도, 배출가스유량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http://sodac.nier.go.kr>)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표15]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산정방법

구분	세부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TMS)	• CleanSYS를 통해 사업장별 실시간 배출농도 및 연간/지역별 배출량 확인 가능 ·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실측에 의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x 배출량(kg) = $\sum \{ \text{자가측정 농도(ppm)} \times \text{배출가스유량(Sm}^3/\text{hr)} \times \text{연간 가동시간} \times 10^{-6} \times 46 \div 22.4 \} / \text{자가측정 횟수}$ • SOx 배출량(kg) = $\sum \{ \text{자가측정 농도(ppm)} \times \text{배출가스유량(Sm}^3/\text{hr)} \times \text{연간 가동시간} \times 10^{-6} \times 64 \div 22.4 \} / \text{자가측정 횟수}$ • 먼지 배출량(kg) = $\sum \{ \text{자가측정 농도(mg/Sm}^3) \times \text{배출가스유량(Sm}^3/\text{hr)} \times \text{연간 가동시간} \times 10^{-3} \} / \text{자가측정 횟수}$

-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 설정)** 사업장의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실적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구체화해야 함 (e.g. 00년까지 00년도 배출량 대비 00% 감축)
 - 기업의 대기오염저감 및 제도 대응 관련 예산, 투자비용 등 재무·회계적 요소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설정하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생산성 저하, 공정 비효율 등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됨
- **(대기오염물질 저감활동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고, 기업 현황을 고려하여 **주요 방지시설 설치, 노후시설 개선, 공정 개선** 등 저감 프로그램 계획
- **(정보공개)** 이해관계자들이 환경개선에 대한 기업의 노력 및 성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환경목표, 성과데이터, 저감 프로그램 결과 분석 등 정성적/정량적 정보 대외적 공개

| 사례 1 | 대기 관련 환경규제 위반 유형

- 대기 관련 규제 위반 유형 중 '허가 및 신고요건 미이행', '배출·방지·처리시설 관리 기준 위반'이 대부분이므로, 자사에서 해당 유형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 요망

[표16] 대기부문 세부유형별 위반현황

위반 형태	2020년	
	건수	비율
1. 무허가(미신고) 배출·방지·처리·취급시설 설치·운영	148	13.7%
2. 허가 및 신고 요건 미이행(변경허가, 변경신고 요건 미이행 포함)	264	24.4%
3. 배출·방지·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미설치, 미가동, 방지, 기준미달)	235	21.7%
4. 배출허용기준(오염기준) 초과	88	8.1%
5. 오염물질 배출·방류 시 방지·처리시설 미유입 또는 희석	26	2.4%
6. 측정·검사기준 미준수(측정기기 관리, 측정·검사 의무 및 횟수 위반 등)	94	8.7%
7. 오염물질 처리·취급·운반·보관·저장 기준 위반(폐기물, 가축분뇨 등)	0	0.0%
8. 가동개시(작업 시작) 신고 미이행 (배출시설 가동, 특정공사 개시 등)	4	0.4%
9. 행정처분(조치명령)미이행	0	0.0%
10.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적 및 면적자 준수사항 위반 등	0	0.0%
11. 무단방류, 무단투기, 공공수역 유출 등	0	0.0%

12.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위반(교육 미이수 등)	75	6.9%
13. 기록 관련 위반(전자정보시스템, 운영일지, 측정기록부 등)	121	11.2%
14. 기타(유해물질 안전 · 표시기준 위반)	0	0.0%
15. 기타(타법 위반, 계약사항 미이행, 보고 및 검사 불응 등)	5	0.5%
16. 기타(위반사유 미공개 또는 위반정보 불충분, 개인 등)	4	0.4%
17. 기타(폐쇄 · 멸실에 따른 허가 취소 등)	19	1.8%
소계	1,083	100%

출처 | ㈜에코엔파트너스, '2020년 환경법규 위반현황 및 환경관련 뉴스자료 조사'

| 사례 2 |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참여

- H사는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등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저녹스버너)을 추가 설치함
- 또한, 해당 시설을 최적운영 하기 위해 발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관리하고 있음

출처 | H사, '2020 환경안전보건 성과 보고서'

| 사례 3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①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항, ②대기배출시설 운영관리, ③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관리, ④환경기술인 근무상태 확인'에 대한 자가진단을 수행해야 함

[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항
 - 배출시설 허가증(신고증명서)의 내용과 실제 시설 설치 사항이 다른 것이 없는가(변경허가, 변경신고)
 - 새로운 배출시설 설치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증설 · 교체 · 폐쇄
 -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사용하는 원료 및 연료 변경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기타 사항 변경(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허가사항, 일일조업시간 등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설치 신고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배출되는지 (신고된 오염물질 이외 자가측정 확인 필요)
 - 가동개시 신고 후 조업을 하고 있는가
- 대기배출시설 운영관리
 - 제조공정 확인사항
 -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서류등에 의한 공정흐름도, 원료사용량 등 제조공정 확인
 - 단위시설의 Vent, Safety Valve 등 관리상태
 - 정상운영 여부 확인
 - 부식, 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 배출장치* 설치여부
 - * 공기조절장치(댐퍼), 가지배출관(바이패스 덕트) 등
 - 가동중지 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확인(원인, 기간 등)
 - 보일러, 기타사항 확인
 - 점화용 보조연료(가스, 경유등) 사용 여부

- 지역연료사용기준 준수여부(저황유 사용여부)
- 연소물질(연료 등)의 종류 및 적정량 투입 여부
- 고체연료사용승인 확인
- 약취발생물질 무단소각 여부

3.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관리

- 설치여부 확인
 -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방지시설 면제대상 제외)
 - 허가(신고)시 설계된 도면(규모, 용량, 위치 등)과 일치 여부
- 정상운영 여부 확인
 - 방지시설 가동여부(적산전력계 등)
- 정상운영 여부 확인
 - 부대기계, 기구류(계량기, 각종 모터 등)의 정상 성능 발휘 여부
 -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량과 방지시설 처리능력 비교
 - 약품의 적정량 투입 및 소모품의 정기교체(여과물 교체등) 여부
 - 주기적 점검 실시 여부
 - 가동 및 고장수리에 관한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 관계서류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과 적산전력계의 가동시간 비교확인
- 오염물질 배출상태 확인
 - 1차 육안으로 매연 및 먼지 배출상태
 - 측정공의 위치 및 측정대 적정설치 여부
 - 자가측정 실시 결과(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 포함) 및 반기별 측정결과 보고서 제출 여부
 - ※ 자가측정 대상 · 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참고
 - 총 배출구수/시료채취배출구 확인
- 측정기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가
 - TMS, 적산전력계, 유량계 고장방치 여부 등 확인
- 운영기록부 기록 · 보존 여부
 - 매일 작성 및 결재권자 결재 여부
 - 법정서식에 맞게 기록 및 보존 여부
- 4.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확인
 - 환경기술인의 종별 자격기준이 적정한가
 - 환경기술인 임명여부 및 자격기준 적정 여부 확인
 -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를 하였는가
 - 자격증 대여 불가
 - 환경관계분야 전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가
 - 최초교육 : 최초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 보수교육 :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

출처 | 원주지방환경청,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환경관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공유'

비고 (출처)

- ISO 26000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GRI G4 Standards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E-6 | 환경오염예방 > 수질

관리 항목

수질오염물질 관리(BOD/COD/TOC, SS, T-P, T-N 등 배출량 파악 및 관리, 저감 프로그램 등)를 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보유한 1~5종 사업장의 경우 해당

•생산 공정 폐수배출시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발생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의의

환경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현 상황에서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각 매체별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및 감축 활동은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임

- 산업의 다양화 및 대규모화 등으로 인해 산업폐수는 각종 중금속을 비롯한 고농도 유기성 물질 등 고도처리를 요하는 난분해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오염물질에 대한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 및 처리가 요구됨
- 또한, 폐수 배출의 감소는 물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절감할 수 있는 수단임

이행 방안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현황을 고려한 수질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다양한 수질오염물질 저감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함

[표17] 수질오염물질 관리 절차

단계	세부내용
① 수질오염 적법관리체계 구축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적법 관리를 위한 배출허용기준 관리 및 지속적 모니터링
②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주요 관리 데이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ton), 총유기탄소량(TOC) (ton)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ton), 부유물질(SS) 배출량(ton), 총인(T-P) 배출량(ton), 총질소(T-N) 배출량(ton),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원단위(ton/억 원) 등
③ 수질오염물질 감축 목표 설정	오염물질 배출 실적 및 재무·회계적 의사결정 기반 감축 목표 구체화
④ 수질오염물질 저감 활동 이행	오염물질 저감 기술 도입, 주요 방지시설 설치, 노후시설 및 공정 개선 등
⑤ 정보 공개	배출량, 감축목표, 감축 활동 성과 등 관련 정보 내·외부 공개

※ 기본적으로 환경데이터는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 통일된 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질오염 적법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내 배출시설 및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파악하여 관리 대상을 목록화하고,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 상 배출허용기준을 모니터링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더라도 1일 폐수 배출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의 제외 조건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정보 확인 필요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주기적으로 측정·산정함으로써 사업장 전체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해야 함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지역별(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로 구분되므로 사업장이 어느지역에 적용되는지를 파악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 단, 수질오염물질은 대기 오염물질과 달리 사업장 개별 처리 이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의 수처리가 가능하여 해당 조건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의
 - 배출농도는 직접 측정법(현장 측정법)을 통해 산정하며 여러 번 측정할 경우 평균농도로 결정하고, 배출량은 수처리 후 농도와 배출량, 연간조업일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함

[표18]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산정 방법

• 배출량(g/yr)= 수처리 후 농도(mg/L)×폐수방류량(m³/일)× 연간조업일수(일/yr)×1,000L/m³×1kg/1,000,000mg

- (수질오염물질 감축 목표 설정) 사업장의 전체 수질오염물질 배출실적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수질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구체화해야 함 (e.g. 00년까지 00년도 배출량 대비 00% 감축)
 - 기업의 수질오염저감 및 제도 대응 관련 예산, 투자비용 등 재무·회계적 요소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설정하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생산성 저하, 공정 비효율 등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됨
- (수질오염물질 저감활동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고, 기업 현황을 고려하여 주요 방지시설 설치, 노후시설 개선, 공정 개선 등 저감 프로그램 계획
- (정보공개) 이해관계자들이 환경개선에 대한 기업의 노력 및 성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배출량, 성과데이터, 환경목표, 저감 프로그램 결과 분석 등 정성적/정량적 정보 대외적 공개
-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폐수 수질 측정지표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 유기탄소(TOC)로 전환되므로, 기존 운영 중이던 사업장은 개정 기준 이행을 준비해야 함
 - 기존 분석 항목(COD, BOD, SS 등)과 함께 총유기탄소(TOC) 분석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충족 여부 사전 파악

| 사례 1 |

수질 관련 환경규제 위반 유형

- 수질 관련 규제 위반 유형 중 '배출허용기준(오염기준) 초과', '기록관련 위반'이 대부분이므로, 자사에서 해당 유형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 요망

[표19] 대기부문 세부유형별 위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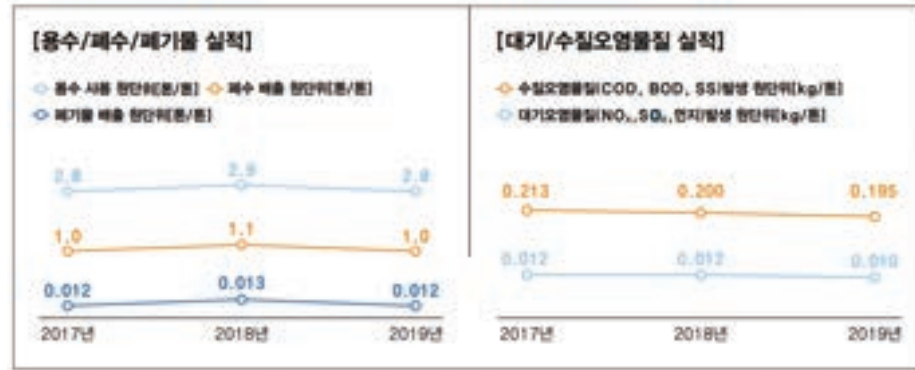
위반 형태	2020년	
	건수	비율
1. 무허가(미신고) 배출·방지·처리·취급시설 설치·운영	54	8.0%
2. 허가 및 신고 요건 미이행(변경허가, 변경신고 요건 미이행 포함)	94	13.9%
3. 배출·방지·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미설치, 미가동, 방치, 기준미달)	3	0.4%
4. 배출허용기준(오염기준) 초과	229	33.9%
5. 오염물질 배출·방류 시 방지·처리시설 미유입 또는 회석	11	1.6%
6. 측정·검사기준 미준수(측정기기 관리, 측정·검사 의무 및 횟수 위반 등)	7	1.0%
7. 오염물질 처리·취급·운반·보관·저장 기준 위반(폐기물, 가축분뇨 등)	0	0.0%
8. 가동개시(작업 시작) 신고 미이행 (배출시설 가동, 특정공사 개시 등)	1	0.1%
9. 행정처분(조치명령)미이행	5	0.7%
10.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위반 등	16	2.4%
11. 무단방류, 무단투기, 공공수역 유출 등	10	1.5%
12.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위반(교육 미이수 등)	70	10.4%
13. 기록 관련 위반(전자정보시스템, 운영일지, 측정기록부 등)	135	20.0%
14. 기타(유해물질 안전·표시기준 위반)	0	0.0%
15. 기타(타법 위반, 계약사항 미이행, 보고 및 검사 불응 등)	5	0.7%
16. 기타(위반사유 미공개 또는 위반정보 불충분, 개인 등)	2	0.3%
17. 기타(폐쇄·멸실에 따른 허가 취소 등)	34	5.0%
소계	676	100%

출처 | ㈜에코엔파트너스, '2020년 환경법규 위반현황 및 환경관련 뉴스자료 조사'

| 사례 2 | 보고서를 통한 환경성과 공개

- H사는 수질을 포함한 각 매체별 최근 3년간 실적을 원단위로 정리하여 환경성과를 보고서에 게재

[그림7] H사의 환경성과



출처: H사, '2020 환경안전보건 성과 보고서'

| 사례 3 |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①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항, ②배출·방지시설 운영 관련, ③방지시설 면제자 준수사항, ④환경기술인 근무상태 확인'에 대한 자가진단을 수행해야 함

[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1.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항

- 배출시설 허가증(신고증명서)의 내용과 실제 시설 설치 사항이 다른 것이 없는가(변경허가, 변경신고)
 - 폐수배출량이 50%이상 또는 700m³/일 증가
 - 사업장의 종류(종별)가 변경된 경우
 -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하는 경우
 -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한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기타 사항 변경(폐수배출 공정,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폐수 위탁업체 및 기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가동개시 신고 후 조업을 하고 있는가

2. 배출·방지시설 운영 관련

- 방지시설이 정상가동 되고 있는가
 - 현장확인
 - 방지시설 고장방치(기기고장 등) 여부
 - 전력사용량 및 기타 관계장부 등 비교검토
- 처리약품의 정상적 투입 여부 확인
 - 현장확인
 - 표준계산서에 의한 약품구입량, 재고량, 톤당 투여량 및 소모량 비교 검토(허위기록여부)

- 비밀배출구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 현장확인(폐수가 새어나가는 곳이 없는지 확인)
 - 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 비교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계도면 검토

- 최종방류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처리상태 육안 확인
 - 시료채취 및 수질분석
 - 기준 초과시 과부하 여부, 처리공법 적정성 여부 등 검토

- 측정기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가
 - TMS, 적산전력계, 유량계 고장방치 여부 등 확인
- 운영일지 기록·보존 여부
 - 매일 작성 및 결재권자 결재 여부
 - 법정서식에 맞게 기록 및 보존 여부

3. 방지시설 면제자 준수사항

- 전량위탁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 폐수 저장시설 설치(폐수 5일분 이상 보관, 폐수양계측기(눈금 등) 부착 여부 확인)
 - ※ 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경우 별도 저장시설 필요 없음
 -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수탁처리계약서 작성·보관
 - 물바로스시스템을 통해 폐수위·수탁확인서 입력
 - 매년 관할기관에 폐수위탁실적 보고

- 전량 재이용하는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는가

4.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확인

- 환경기술인의 종별 자격기준이 적정한가
 - 환경기술인 임명여부 및 자격기준 적정 여부 확인
- 환경관계분야 전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가
 - 자격증 대여 불가
- 환경관계분야 전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가
 - 최초교육 : 최초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 보수교육 :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

출처: 원주지방환경청,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환경관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공유'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E-7 | 환경오염예방 > 폐기물

관리 항목

사업장 내 폐기물 관리(일반/지정/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매립/소각/재활용/기타처리량, 원천저감 프로그램, 재활용 촉진 등)을 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사업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른 배출량을 파악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를 관리하며 폐기물 발생량 감축 및 재활용 제고를 위한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의의

환경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현 상황에서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각 매체별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및 감축 활동은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임

- 특히, 순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산업계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산업폐기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생산기술의 고도화 및 전문화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과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폐기물 관리가 중요해짐
- 또한, 폐기물 발생량의 감축은 생산수율을 증대시켜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를 발휘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게 됨

이행 방안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을 집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해야 함

[표20] 폐기물 관리 절차

단계	세부내용
① 사업장폐기물 적법관리체계 구축	폐기물 적법 관리를 사업장 폐기물 유형 및 적법처리 방안 파악
②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집계	주요 관리 데이터: 일반·사업장·지정·건설폐기물 발생량(ton),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원단위(ton/억 원), 폐기물 매립량(ton), 폐기물 소각량(ton), 폐기물 재활용량(ton), 폐기물 기타처리량(ton) 등 * 모든 데이터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해당 시)건설폐기물로 구분하여 종류별로 관리
③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목표 설정	폐기물 배출 실적 및 재무·회계적 의사결정 기반 감축 목표 구체화
④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제고 활동 이행	폐기물 재활용 기술 도입, 오염발생 원천 제거, 공정 제어 등
⑤ 정보 공개	발생량, 감축목표, 감축 활동 성과 등 관련 정보 내·외부 공개

* 기본적으로 환경데이터는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 통일된 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장폐기물 적법관리체계 구축) 사업장폐기물의 성상 및 유형을 파악하여 관리 대상을 목록화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 상 적법한 폐기물 처리·보관 기준 모니터링

- 사업장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에 해당

[표21] 폐기물 분류체계

구분	기준
생활폐기물	가정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일반폐기물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페인트 등 21종 의료폐기물(의료기관 및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
	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해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집계) 폐기물 처리 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동일 유형별로 합산하여 관리함으로써 전체 폐기물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함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거나, 배출 시설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1일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올라시스템 상 데이터 입력 의무 발생

-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목표 설정)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실적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목표를 구체화해야 함 (e.g. 00년까지 00년도 배출량 대비 00% 감축, 00년까지 재활용 비율 00% 달성)

- 기업의 폐기물 발생 및 제도 대응 관련 예산, 투자비용 등 재무·회계적 요소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설정하되, 폐기물 감축을 위해 생산성 저하, 공정 비효율 등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됨

-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제고 활동 이행) 원천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거나,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기 이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재활용하는 방안 모색

- (정보공개) 이해관계자들이 환경개선에 대한 기업의 노력 및 성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발생량, 환경성과 데이터, 환경목표, 감축 및 재활용 제고 프로그램 결과 분석 등 정성적/정량적 정보 대외적 공개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자가처리)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승인'을 받아 운영해야 하며, 이외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재활용업 신고를 받은 적법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함

- 위탁업체 선정 시,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처리방법에 따라 적합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함
 - 환경부는 처분대상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방법별 전국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정리한 리스트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므로 처리업체 선정 시 해당 자료를 참고할 것을 권고함 (* 환경디지털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위탁 계약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올라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면 폐기물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위반 또는 법에서 정하는 재활용 및 준수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처리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지체 없이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함

- 현장확인인 사업장 스스로도 진행할 수 있으나 폐기물적정처리 추진센터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사례 1 |

폐기물 관련 환경규제 위반 유형

- 폐기물 관련 규제 위반 유형 중 '오염물질 처리·취급·운반·보관·저장 기준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자사에서 해당 유형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 요망

[표22] 폐기물부문 세부유형별 위반현황

위반 형태	2020년	
	건수	비율
1. 허가 및 신고 요건 미이행(변경허가, 변경신고 요건 미이행 포함)	10	8.5%
2. 배출·방치·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미설치, 미가동, 방치, 기준미달)	3	2.6%
3. 오염물질 처리·취급·운반·보관·저장 기준 위반(폐기물, 가축분뇨 등)	65	55.6%
4. 행정처분(조치명령)미이행	11	9.4%
5.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위반(교육 미이수 등)	4	3.4%
6. 기록 관련 위반(전자정보시스템, 운영일지, 측정기록부 등)	17	14.5%
7. 기타(타법 위반, 계약사항 미이행, 보고 및 검사 불응 등)	7	6.0%
소계	117	100%

출처: ㈜에코엔파트너스, '2020년 환경법규 위반현황 및 환경관련 뉴스자료 조사'

I 사례 2 | 폐기물 배출사업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①폐기물 처리 전 확인사항, ②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사항, ③폐기물 보관 및 처리, ④(해당 시) 올바른시스템 입력, ⑤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이수'에 대한 자가진단을 수행해야 함

[표] 폐기물 배출사업장 자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1. 폐기물 처리 전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의 지정폐기물 여부를 검사해보았는가 (오니, 폐흙착제, 폐흡수제,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등) • 폐기물별 위탁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증명서(처리계획 확인증명서)에 변경사항이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보고한 폐기물량이 신고한 폐기물량보다 증가 ·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 폐기물 처리방법 및 위탁 처리업자가 변경된 경우 · 사업자 상호·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
3. 폐기물 보관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보관기준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과 벽면이 갖춰진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 · (지정폐기물) 법정 양식의 보관표지판 설치 ·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 폐기물이 보관시설로부터 흘러내리거나 누출되지 않고,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지 여부 · 폐기물을 법정 보관기한 내에 처리하였는지 여부 • 폐기물을 허가받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고 있는가
4. 올바른시스템(AlIbaro)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인계·인수내역을 올바른시스템(AlIbaro)에 입력하고 있는가 • 매년 2월까지 전년도 폐기물 배출 실적을 보고하였는가
5.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폐기물 처리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경우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출처 | 원주지방환경청,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환경관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공유'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E-8 | 환경오염예방 > 화학물질

관리 항목

화학물질 관리(배출량 파악 및 관리, 저감 프로그램 등)를 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생산 공정의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용 또는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의의

환경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현 상황에서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각 매체별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및 감축 활동은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임

- 특히, 화학물질은 제조, 운반, 사용, 판매, 폐기 등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어 환경정책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

이행 방안

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고 화학물질 배출량 및 사용량 등을 집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현황을 고려한 화학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다양한 화학물질 배출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함

[표23] 화학물질 관리 절차

단계	세부내용
① 화학물질 적법관리체계 구축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적법 관리 지원을 위한 시설별/세부규정별 취급기준 관리 및 지속적 모니터링
② 화학물질 배출량 및 사용량 집계	주요 관리 데이터: 화학물질 종류, 화학물질 사용·배출량*(ton), 화학물질 배출량 원단위(ton/억 원), 화학물질 이동량(폐수 이동량, 폐기물 이동량)(ton), 화학물질 이동량 원단위(ton/억 원) 등 * 배출량 데이터는 각 매체별(대기, 수계, 토양)로 세부 구분하여 관리
③ 화학물질 감축 목표 설정	화학물질 사용·배출 실적 및 재무·회계적 의사결정 기반 감축 목표 구체화
④ 화학물질 사용·배출 저감 활동 이행	유해화학물질 대체, 공정개선 등
⑤ 정보 공개	환경데이터, 감축목표, 감축 활동 성과 등 관련 정보 내·외부 공개

*기본적으로 환경데이터는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 통일된 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화학물질 적법관리체계 구축)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함께 입·출고 목록, 사용부서 및 용도, 위해성, 법규상 항목(허용기준유지대상 물질 등) 등을 파악하여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화학물질은 위해·유해성에 따라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구분되며, 4가지 중 1가지만 해당되더라도 유해화학물질로 구분됨

[표24] 유해화학물질 구분

구분	세부내용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 유독물질 지정고시 [별표]에서 해당 목록 확인 가능
사고대비물질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화학물질
제한물질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유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금지물질	유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 된 화학물질

- **(화학물질 배출량 및 사용량 집계)** 취급 화학물질의 사용·배출량, 이동량 등 정량적 환경 데이터는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해야 함
- **(화학물질 감축 목표 설정)** 사업장 전체의 화학물질 배출실적을 기반으로 분야별(대기, 수계, 토양) 정량적인 화학물질 사용·배출 감축 목표를 구체화해야 함(e.g. 00년까지 00년도 배출량 대비 00% 감축)
 -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 및 제도 대응 관련 예산, 투자비용 등 재무·회계적 요소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설정하되, 화학물질 배출 감축을 위해 생산성 저하, 공정 비효율 등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됨
- **(화학물질 사용·배출 저감활동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화학물질 사용·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고, 기업 현황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사용, 공정개선 등 저감 프로그램 계획
- **(정보공개)** 이해관계자들이 환경개선에 대한 기업의 노력 및 성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배출량, 성과데이터, 환경목표, 저감 프로그램 결과 분석 등 정성적/정량적 정보 대외적 공개

화학물질 중에서도 특히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므로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규정된 취급제한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저독성 원·부재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 성상(고체·액체·기체)과 위험성, 독성 등 특성을 고려하여 저장·보관 방식도 고려해야 함

[표25] 유해화학물질 제거/대체를 위한 회사 차원의 로드맵

단계	세부내용
Step 1	팀의 구성: 화학물질 제거를 위한 전사적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팀, Taskforce, 생산부서 또는 개발부서 포함, 외부 전문가 활용 · 가능한 최고 경영층의 명시적 인정을 받도록 함 · CEO 지시가 있을 경우 선수행하되, Step 2와 동시 진행할 수도 있음
Step 2	유해화학물질 제거를 위한 논리 개발, 설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층, 관리자, 근로자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 · 국내외적 변화, 법규의 강화, 최근의 사고, 근로자의 관심, 사회의 변화, 동종 업계 벤치마킹 · 경제적 이득,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논리가 없다면 다른 측면에서 더 큰 논리를 만들어내야 함
Step 3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질 중 유해물질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용물질 인벤토리 구축 · 위험성 분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장단기적 계획: 즉시 제거 가능 또는 장기적 검토 필요 물질 구분
Step 4	신규물질도입 시 검증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E팀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Step 5	유해물질 미사용에 대한 정책 대내외 발표, 전사적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O가 회사 방침으로 공표하게 함 · 대규모 회사: 대내외 발표, 소규모: 내실 있게 추진
Step 6	주기적 검토,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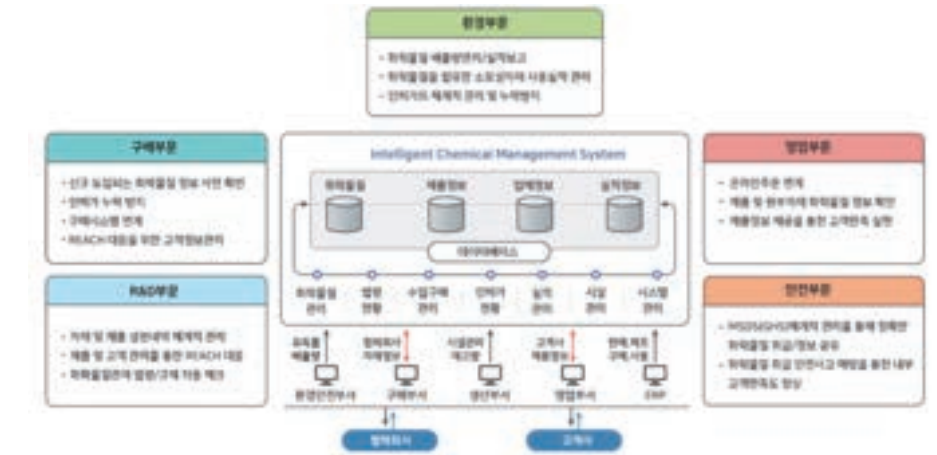
| 출처 | https://kiha21.or.kr/monthly/2016/10/SOBGBO_2016_s342_37.pdf

| 사례 1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MS) 활용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MS)은 다양한 화학물질의 제조, 구매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화학물질 정보를 관리하고 국내외 규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 화학물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유통 기업, 화학물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등 대부분의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음

[그림8] 화학물질관리시스템(CMS) 구성도

| 출처 | <http://www.yullin.com/Gems/CMS>

| 사례 2 |

화학물질 외부 유출 방지 다중 방어 체계 구축

- 반도체 제조업의 A사는 1선 방어(건물 내 바닥 Leak 센서 설치), 2선 방어(건물 밖 유출 방지 트렌치 설치), 3선 방어(우수로 실시간 감시)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외부 유출방지 체계 구축

[그림9] 화학물질 외부 유출방지 다중방어 체계



| 출처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우수사례 및 주요 부적합 사례

비고
(출처)

- ISO 26000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E-9 | 환경오염예방 > 기타

관리 항목 토양/지하수, 해양, 소음진동 등 기타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

생산 공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토양/지하수, 해양, 소음·진동 등 기타 환경 분야의 오염원을 파악하고, 발생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의의 환경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현 상황에서 환경오염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활동은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임

- 토양오염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염이 발견된 시점에는 이미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누출되어 지하수 등 주변 환경으로 확산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염물질이 흡착되어 토양에 장기간 머물러 오염토양의 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전에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짐
- 해양오염의 발생 빈도는 높지 않으나 사고 발생 시 피해의 규모와 범위가 크고, 원상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려 선제적으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생활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생활환경보전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면서, 소음·진동은 다른 오염에 못잖은 중요성을 가짐
-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은 토양/지하수, 해양, 소음진동 등 기타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에도 관심을 가져야함

이행 방안 각 매체별 법에서 명시하는 규제를 준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 여부 및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을 이행하며 더 나아가 오염원을 제거 또는 저감하기 위한 활동을 이행해야 함

[표26] 매체(토양/지하수, 해양, 소음진동)별 규제 사항

구분	주요내용	주요 규제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토양오염 우려기준, 대책기준 준수, 토양오염의 신고, 토양오염 검사*, 오염 원인/오염도 조사 조치, 토양정밀조사 실시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사업장 해당
지하수	지하수법,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오염방지, 지하수오염 우려/발생 신고, 수질검사,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오염지하수 정화 명령, 정화계획 수립 등
해양	해양관리법	오염물질 배출금지, 폐기물 배출률 준수, 해양오염방지활동,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설치, 해양시설 신고,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관리, 해양시설 안전점검 등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사업장소음 규제 기준 준수 등

| 사례 1 | IoT 기반 토양 및 지하수오염정화 공정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 H사는 토양/지하수의 오염변화 및 오염도를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술력을 완성하여 빅데이터 및 정보화, 인공지능을 연결한 표준화된 실시간 모니터링 운영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스마트 공정관리 구현

[그림10] IoT 기반 지하수 정화 및 관리 시스템



| 출처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2020.03.26., “IoT기반 토양 및 지하수오염정화 공정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오염원 누출막는다”

| 사례 2 | 해양환경 보전 및 정화활동

- S사는 사업장 주변 청정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정기적 해안가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자체 해상오염 방제조직 구성 및 방제장비를 구비하여 정례적 방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해상오염사고 대비
- 해상 부유물 제거작업, 해상오염 수시점검 및 즉각적 방제활동, 해상오염방제조직 구성 등

| 출처 | S사 홈페이지

| 사례 3 | 소음·진동 저감 활동을 위한 체크리스트

- 사업장의 경우, 작업소음, 실외기, 압축기, 각종 설비음 등 다양한 소음원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소음저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함

[표27] 기계 설비 사업장 소음·진동 저감 활동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리스트
1	소음 규제 기준, 방음시설 설치 기준 등 관련 법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수한다.
2	사업장의 소음도 및 인접한 영향 지역이 허용하는 소음도를 고려하여 사업장 벽체, 천장 등에 대한 차음설계를 실시하고, 필요시 실내벽면도 흡음 처리한다.
3	저소음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한다.
4	장비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소음을 줄이기 위해 장비의 작동방법을 바꾸거나, 충격에 의해 소음이 발생하는 지점에 유연한 재료를 부착한다.
5	각각의 장비를 차례로 운전하며, 고소음 장비의 동시운전을 삼간다.
6	기계 전체, 특히 기계소음이 크게 나는 부분을 감싸 소음을 줄인다.
7	기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수리하여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
8	엔진, 공기압축기 등의 고소음 장비 및 배기가스 배출구에 소음기를 설치한다.
9	소음저감 조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훈련한다.
10	주거지역 등 정온시설과 인접한 경우 야간작업을 줄인다.

| 출처 | 서울특별시, 2016.08., ‘도시 소음관리 매뉴얼(사업장소음)’

비고
(출처)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E-10 | 환경오염예방 > 사고예방

관리 항목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고 시 비상대응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항목 구분



잠재적 환경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방하고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해야 한다.

의의

환경오염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영활동으로 인한 오염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기업은 신체 및 재물 피해배상, 오염지 정화와 재발 방지, 이로 인한 사업장 설비 가동 중지 등 직접적 금융적 손실과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신뢰도 저하, 기업 이미지 훼손 등 간접 피해를 받게 됨
- 따라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선 산업별 사업장의 환경·안전 수준과 관련된 사업주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행 방안

주기적인 사업장 점검을 통해 잠재적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이행하고, 오염사고에 대한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정기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함

-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오염사고를 환경안전감시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니터링함으로써 사고를 예측/예방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효과적인 통합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환경사고의 감시를 위해 보안, 관제, 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된 CCTV, Video Management System, VideoSurveillance 등의 환경안전감시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함
- 사업장 자체 및 외부의 시설물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설 점검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사업장 내 비치함으로써 담당자 이외 경영진 등 사업장 전 임직원이 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경영진은 정기적으로 이를 열람하여 설비 투자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시설·설비의 점검·보수 결과를 보고받아 보완사항을 조치하는 등 사업장 정비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함
-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는 외부까지 환경오염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응을 위한 차단설비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상시 방제장비와 물품을 구비하여 환경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체계 구축
 -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사고는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사업장 자체 대응 방안으로는 사고 대응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환경복구 업체 선정, 협의 등 대책 마련을 통해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마련
-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사업장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의무 가입 대상인 경우, 환경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함

[표28]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시설

구분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준시설
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5종)* 유독물질 지정고시 [별표]에서 해당 목록 확인 가능 •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배출시설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5종) •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무방류시설 포함)

구분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준시설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과 지정폐기물 배출시설은 해당 없음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아래의 시설 · 저장용량 1천 KL 이상인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 사고대비물질을 상위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유해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대비물질을 상위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시설 중 아래의 시설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 포함) 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출처 | 환경책임보험 길라잡이, 2021.06

- 또한, 유형별·단계별 사고대응계획이나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전사 및 인근 지역 주민에게 공유하고, 사고 발생시 안전하고 질서정연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함

| 사례 1 |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 원칙 및 비상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리스트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 원칙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비상계획 수립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회사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회사는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 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회사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 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회사와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2019년도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보고서

| 사례 2 |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장비숙달 교육

- 구미시는 환경보전과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치 매뉴얼 및 실제 환경오염사고 대응 사례 이론 교육과 사고대응 장비 숙달 실습을 진행하여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준비

[그림11] 구미시 2020년 환경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및 장비숙달 교육



| 출처 | 경북뉴스, 2020.08.07., '2020년 환경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및 장비숙달 교육 실시'

| 사례 3 | 환경오염사고 비상대응훈련

- S사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공장 전 임직원과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하여 비상대응 규정에 따라 실전과 동일한 수준의 훈련을 진행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사고 확산 차단·주민 대피 등 유사사비상대응체계 점검 및 보완 활동을 이행함

[그림12] S사 환경오염사고 비상대응훈련



| 출처 | 경북일보, 2019.07.17., '영주 S사, 전사 비상 대응훈련 실시'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E-11 | 환경오염예방 > 원부자재

관리 항목

원부자재 사용량 관리와 절감(재생소재 사용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재생소재, 재활용재 함유 자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자재 사용규모를 절감해야 한다.

의의

지속가능한 원부자재 사용은 자원의 이용 효율 극대화 및 환경오염 저감 등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 비용 및 원가 절감을 통한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짐

-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산업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졌으며, 급상승한 천연자원 가격, 쓰레기 폐기 비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은 원료에서 최대 가치를 추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가 주류를 이루는 선형경제 시스템으로는 당연한 위기를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어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과 순환이 가능한 자원을 경제활동의 순환계로 되돌려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시스템으로의 도입이 추진됨
- 순환경제의 추구는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재활용의 수익성,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가 절감으로 연계되어 장기적인 기업의 수익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됨

이행 방안

제품의 자원 사용량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불가능한 원부자재를 지속가능한 소재 등으로 대체해야 함

- 대체 물질 선정 시, 단순 친환경성만을 고려하기 보단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명, 내구성, 가격 등 여러 요소를 다방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제품 또는 서비스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그 기능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기업의 경제성과 환경성이 확보되는 경우, 원천적으로 투입되는 자원의 사용량 저감을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모든 생산과정에서 개선 사항을 분석하고, 공정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음

| 사례 1 | 제품 생산 시 천연유래 소재 대체

- M사는 기존 목재 펄프 및 플라스틱을 통해 제조하던 제품의 원료를 천연소재인 해조류로 대체하여 제품생산 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제품 생산
- 제조공정이 기존 제품보다 시간과 에너지를 단축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되고,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비싼 원재료의 단점을 버려지는 부산물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성 확보

[그림13] 해조류 부산물로 제작한 제품



| 출처 | M사 홈페이지

| 사례 2 | 자원 절감 노력

- C사는 신제품 개발 시 해당 재활용률이 75% 이상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75% 이하로 산정되면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대체하거나 실제 재활용 공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
- 제품군에 대해 재활용 레진을 플라스틱 중량 대비 5% 수준으로 시범 적용 추진

| 출처 | C사 홈페이지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E-12 | 자원사용절감 > 수자원

관리 항목

사업장 내 용수사용량 관리와 절감(재이용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용수 사용량을 정량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품 생산 시 사용하는 용수량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의의

수자원은 천연 자원으로써 종류와 양이 한정되어 있어 이용의 최소화·관리만으로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환경보호와 함께 원가 절감, 수처리 비용 감소 등 기업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짐

-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에 따르면, 한국은 수자원 보유량 대비 인구밀도가 높아 국민 1인당 활용 가능 연간 수자원량이 1,453m³에 불과하며 이는 세계 153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129위에 해당하는 열악한 수치로, 수자원 절약의 필요성을 나타냄
-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물 사용량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물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심화될 전망을 보여 국가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비롯하여 식품, 자동차, 화학·철강 등 대부분의 제조 공정에서 물은 필수 유틸리티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 부족 이슈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어 기업에게 수자원 관리는 필수 영역임

이행 방안

전체 사업장의 용수 취수량, 소비량, 재이용량 등을 정량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자원 재이용을 위한 공정개선, 신규 설비 및 청정생산기술 도입 등 다양한 용수 사용 절감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함

- 주요 관리데이터 : 용수 취수량*(ton), 용수 소비량**(ton), 용수 소비량 원단위(ton/억 원), 용수 재이용량(ton), 용수 재이용률(%)

* 용수 취수량 데이터는 상수, 지하수, 하천수 등 취수원별로 구분하여 종류별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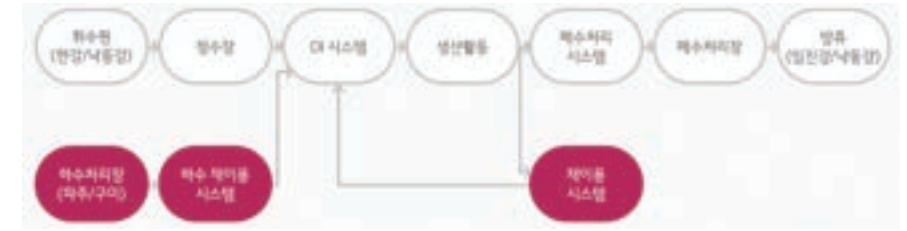
** 용수 소비량= 용수 취수량 - 용수/폐수 방류량

※ 기본적으로 환경데이터는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 통일된 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용수 재이용량의 증가는 용수의 취수량과 배출되는 폐수의 양, 제반 비용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재이용률은 수자원의 효율성 척도로 사용될 수 있음
- 사업장의 전체 용수 소비량 및 재이용 실적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용수 소비량 감축 또는 재이용량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e.g. 00까지 00년도 용수 소비량 대비 00% 감축),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 개선, 재이용 설비 도입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감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함
 - 기업이 용수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을 줄이는 것, ②설비투자로 폐수로 배출되는 물의 양을 줄이는 등 물 순환 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 그러나 물 자체가 제품의 원료가 되는 경우, 생산과정에서 물이 필요한 경우, 열을 식히는 등 여러 과정의 용수가 존재 하는 만큼 생산 과정에서의 수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이 환경개선에 대한 기업의 노력 및 성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용수사용량, 재이용량, 재이용률 등 환경성과 데이터, 저감 프로그램 결과 분석 등에 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사례 1 | 용수 재이용 시스템 도입

- L사는 용수 재이용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활동에서 발생한 낮은 농도의 폐수를 자체 정화해 재이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를 공업용수로 재사용함



| 출처 | L사 홈페이지

| 사례 2 | 3R 활동 및 방류수 모니터링 등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 S사는 3R(Reduce, Reuse, Recycle) 활동과 방류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원단위 용수 사용량 목표인 50톤/억원 달성을 위해 각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을 핵심성과지표로 선정하고 연간목표를 수립하여 관리함
- 또한, 용수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각 사업장 별로 수자원을 오수, 폐수, 공정용수, 초순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매월 각 법인의 수자원 항목별 재이용률은 글로벌녹색경영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출처 | 환경경제신문 그린포스트 코리아, 2020.06.24., '물 사용·폐수 방류 획기적으로 줄인 착한 기업들'

| 사례 3 | 폐수 정화 기술 도입 및 관련 전문가 양성

- S사는 용수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을 최적화하고, 멤브레인 기술을 도입해 고농도폐수를 정화시켜 유틸리티 설비에 사용하는 등의 방안을 사용하여 폐수 재이용률을 제고함
 - * 멤브레인: 특정 성분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막
- 또한 전문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질을 전공한 박사급 인력을 배치하고, 임직원 대상으로 기술직무교육을 운영하여 용수 절감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의 노력을 이행함

| 출처 | S사 홈페이지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E-13 | 에너지/온실가스 > 에너지절감

관리 항목

에너지 사용량 관리(직접에너지/간접에너지 사용량)와 절감을 위한 활동(고효율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사업장 전체 직접·간접에너지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사용량을 절감해야 한다.

의의

새로운 기후 대응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에너지 부문에서 혁신이 요구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은 경쟁력 개선과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Climate Watch와 세계자원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Our World in Data'가 정리한 전 세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73.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 그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24.2%는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유통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로서, 이는 산업공정에서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활동의 중요성을 나타냄
- 에너지 사용량 절감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에너지 비용은 회사 운영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절감활동은 회사의 이익을 높이는 것과 직결됨

이행 방안

전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직접, 간접으로 분류하여 각각 사용량을 정량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설비의 에너지 효율 향상, 고효율 설비 교체, 연비 개선 등 효율적 소비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해야 함

- 주요 관리데이터 : 사용 연료(석유, 석탄, 가스, 전기 등)별 에너지 사용량(GJ), 에너지 사용량 원단위(GJ/억 원)

※ 기본적으로 환경데이터는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 통일된 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에너지 사용량은 온실가스 배출원 기준과 동일하게 직접에너지와 간접에너지로 구분되고, 직접에너지는 사업장에서 직접 소유 또는 관리하는 배출원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간접에너지는 사업장에서 구매한 전력, 열, 스팀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를 지칭함
- 에너지 사용량(GJ)은 사용하는 연료량과 연료별 총발열량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분야의 정량적인 감축 목표(e.g. 00년까지 00년도 사용량 대비 00% 감축)를 설정해야 함

[표29] 에너지사용량 산정 방법

- (직접에너지) 에너지 사용량(GJ) = 연료사용량(Nm³, L) × 연료 총발열량 (MJ/Nm³, MJ/L) ÷ 1,000
- (간접에너지) 에너지 사용량(GJ) = 전기사용량(kWh)** × 연료 총발열량 (MJ/kWh) ÷ 1,000

*에너지법 시행규칙 상 단위 사용, **소비기준

[표30]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일부 발취)

연료명	단위		총발열량	순발열량
	에너지법 시행규칙 상	TJ로 환산 시		
도시가스(LNG)	MJ/Nm ³	TJ/1,000,000Nm ³	43.1	38.9
도시가스(LPG)	MJ/Nm ³	TJ/1,000,000Nm ³	63.6	58.4
등유	MJ/L	TJ/1,000m ³	36.7	34.2
B-C유	MJ/L	TJ/1,000m ³	41.7	39.2
경유	MJ/L	TJ/1,000m ³	37.8	35.2
휘발유	MJ/L	TJ/1,000m ³	32.7	30.4
전기(소비기준)	MJ/kWh	TJ/GWh	9.6	9.6

출처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12]

- 기존 설비의 에너지 효율 향상, 고효율 설비 설치, 사업장 단열 강화, 시설 연비 개선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이행해야 함
-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이 환경개선에 대한 기업의 노력 및 성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 감축량, 환경성과 데이터,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결과 분석 등에 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사례 1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및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절약효과가 큰 설비·기기를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4개 분야 22개 품목에 대해 모든 인증 제품을 검색하여 제품별 에너지효율 및 성능 관련 정보를 제공함
- 마찬가지로,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신고제품의 대기전력과 용량 관련 정보를 제공함
※ https://eep.energy.or.kr/higheff/hi_eff_intro.aspx 에서 확인 및 제품 설명자료 다운로드 가능

[표31] 인증 및 프로그램 신고 제품 품목

항목	분야	체크리스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조명설비	LED유도등, 문간판용 LED모듈, 등기구, LED램프,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
	단열설비	고기밀성 단열모, 냉방용 창유리필름
	전력설비	무정전전원장치, 인버터, 펌프, 원식식 송풍기, 터보압축기, 전력저장장치(ESS),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스크류 냉동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항온흡습기, 가스히트펌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카세트, 전자레인지,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 유무선공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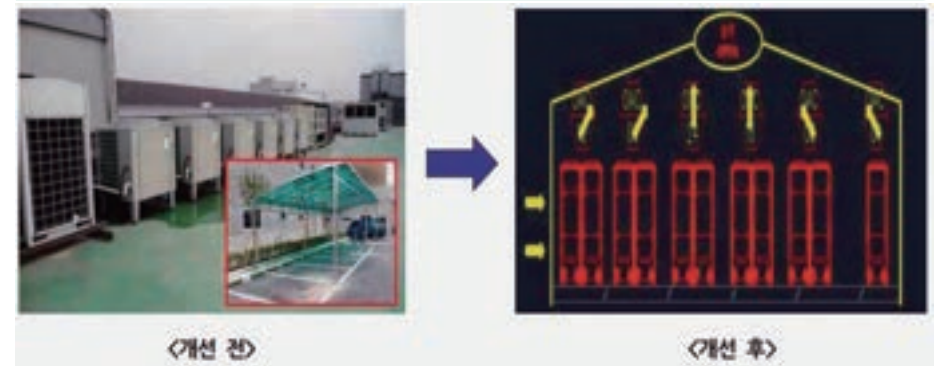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https://eep.energy.or.kr/main/main.aspx>

| 사례 2 |

시스템에어컨 응축기 차단막 설치

- G사는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가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되어 압축기의 압축 동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필요 이상의 전력소비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실외기에 차광막 설치

[그림14] G사의 에너지 감축 개선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18년 기업협력군 에너지 동행사업 우수사례집

| 사례 3 |

LED 조명 교체

- D사는 사무동, 실험실, 휴게실, 공장 조명 등에 사용되는 저효율 일반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표32] D사의 사업장 내 조명 교체

위치	기존조명	수량(개)	소비전력(W)	연간소비 (kWh/년)	개선조명	소비전력(W)	연간소비 (kWh/년)
실험실	LF32W*2	5	320	960	LED20W*2	200	600
휴게실	LF32W*2	2	128	384	LED20W*2	80	240
사무동	LF32W*2	20	1,280	3,840	LED20W*2	800	2,400
사무동	삼파장18W	20	360	1,080	LED10W	200	600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18년 기업협력군 에너지 동행사업 우수사례집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E-14 | 에너지/온실가스 > 재생에너지

관리 항목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사업장 내 재생에너지를 사용(구매 or 생산) 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에너지(석탄, 석유 등)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의의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외 대기업들이 RE100을 통해 이에 동참하면서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현재 EU,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은 제품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는 수준이나 점차 강화되어 2027년에는 기준치 이상 제품은 수출규제 대상이 될 전망으로, 탄소배출이 기업 비용으로 반영될 것
- 한국은 '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기업의 RE100 참여를 권고하고 있으며 효율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형 RE100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국가적 움직임에 국내외 기업들도 탄소배출·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사뿐만 아니라 공급망 및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이행 방안

태양광 패널 등 사업장 내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및 한국형 RE100(K-RE100)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는 등 이행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

- 재생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수집되는 에너지로 정의되나, 재생 가능한 자원의 범위가 다양하여 일부 에너지는 기준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수소에너지, 연료전지에너지, 석탄가스화/연료화에너지'는 신에너지로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지만, 기존 연료를 새로운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화학반응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재생이 불가능하여 재생에너지에 속하지 않음
-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의미할 뿐 재생에너지와 동일시되면 안되고, 이는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로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외에서의 사용을 지양함

[표33] 재생에너지 종류

구분	주요내용
태양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 물질을 만들지 않고, 소음이 없음 ● 발전기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간단히 설치가 가능하며 초기 설치비용이 저렴함 ● 수명이 길고 유지비용이 거의 없음 ● 전력생산량이 일조량에 의존하며 에너지 밀도가 낮아 태양전지를 많이 필요로 함
태양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 물질을 만들지 않고, 소음이 없음 ● 설치가 간단하며, 설치 및 유지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 ● 봄, 여름에 비해 겨울철에는 에너지 생산 조건이 불리함 ● 에너지 밀도가 낮으며 간헐적이고 투자비용과 발전단가가 높아 비경제적임
풍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이 많이 부는 산이 많고 해안선이 길어 풍력발전에 유리한 환경 ● 설치기간이 비교적 짧고 한 번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함 ● 소음이 발생하며, 새들의 이동을 방해함 ● 전력 수요가 있는 곳과의 접근성이 떨어짐
수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생산 외에 농업용 저수지, 보,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음 ● 국내 부존 잠재력이 많아 보급효과가 크며 에너지 밀도가 높아 꾸준한 발전 공급 가능 ● 댐의 초기 건설비용이 많이 들며 지형 침수에 따른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있음 ● 강수량에 따라 전기 공급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구분	구분내용
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갈될 염려가 적음 ●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으며 에너지 밀도가 작고, 시설비가 비쌘 ● 전력 수요지와 거리가 멀
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화석 연료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재생성을 가지고 있어 고갈 문제가 적음 ● 에너지 활용도가 높으나 바이오에너지 원료 확보를 위해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함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고 에너지도 얻을 수 있음 ●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음
지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자체가 에너지원이며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함 ● 보급 잠재력이 높으며 발전 비용이 저렴함 ● 채산성이 떨어지며 환경적 제약이 있음
수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인구의 27%, 산업단지의 71%가 바다에 접해 있어, 해수열을 이용한 냉난방에 유리함 ● 열효율이 높으나 지역적 한계가 있음 ● 하천수나 해수의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 출처 | 환경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미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위치, 부지 용이성 등 사업장만의 특징과 재생에너지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 적합한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에너지는 정량적으로 관리해야 함

- 주요 관리데이터 : 재생에너지 생산량(kWh), 재생에너지 이용량(kWh),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대체 비율(%)

※ 기본적으로 환경데이터는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 통일된 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가 발전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은 한국형 RE100 참여를 통해 '녹색프리미엄제, 인증서(REC)구매, 제3자PPA, 지분투자'와 같은 이행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음

[표34] 한국형 RE100 이행수단

구분	이행구조	주요 내용
녹색프리미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소비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 참여방법 : 한전에서 공고하는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REC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소비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한 RE100 인증서(REC)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 ● 전기소비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제3자P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전력을 구매 ● 전기소비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활용

구분	이행구조	주요 내용
지분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소비가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자체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사용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이행 등에 활용

출처 | https://www.knrec.or.kr/business/policy_re100.aspx

- 한국에너지공단은 공장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바이오, 수소에너지 등의 신·재생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 이므로 이와 같은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활용하기를 추천함

사례 1 |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항만배후단지 물류기업 창고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전기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중소 물류기업의 신규 수익창출 기반으로 조성
- S사는 사업장 내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2,847MWh의 에너지를 생산했으며, 생산 전력은 사무실 조명과 전열, 공조시설, 사내 전기차 충전소, 전광판 등에 활용

[그림15] 사업장 내 태양광 패널 설치



출처 | (左) 매일일보, 2018.05.23., '인천항 물류기업 창고 지붕 태양광 패널 설치사업 완공 코앞', (右) 데일리안, 2021.04.01., 'S사, 탄소저감 선봉장... 반도체 사업장서 태양광 발전'

비고 (출처)

- ISO 26000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E-15 | 에너지/온실가스 > 온실가스

관리 항목

온실가스 관리(직접/간접 배출량 산정, 관리, 보고)와 감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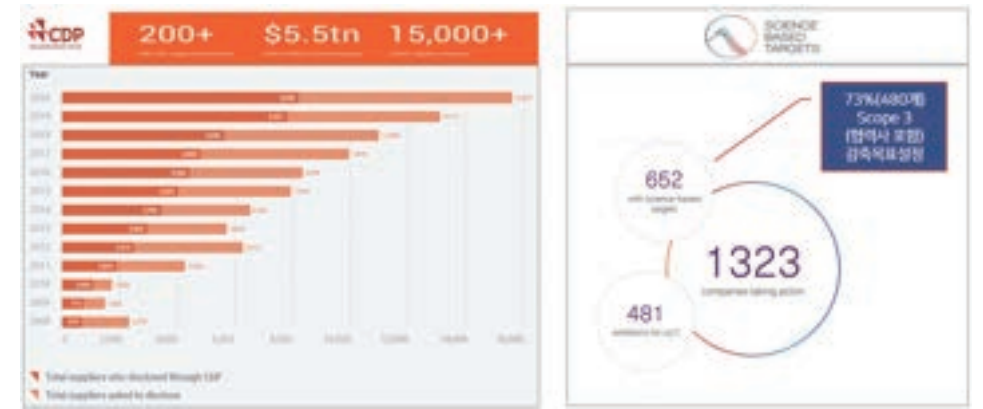
생산 공정의 직접/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하여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주요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의의

CDP Supply Chain, SBTi 등 과 같은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통해 주요 고객사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설정 및 협력업체 관리체계 구축 활동을 이행하면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관리 요구 증가

- 세계 각국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기업 경쟁력 및 성과가 결정될 여지가 증가함
 - EU, 미국 등 국내 주요 수출국에서는 환경규제 강화 방안으로 탄소국경세가 논의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미진한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
- 이러한 흐름에 대기업들이 각종 이니셔티브를 통해 협력사를 포함한 Scope 3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활동을 이행함으로써 협력사의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 활동에 대한 요구가 급증함

[그림16] 글로벌 기업의 CDP, SBTi 참여 증가



출처 | (左) <https://www.cdp.net/>, (右) <https://sciencebasedtargets.org/>

이행 방안

전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원을 직접, 간접으로 구분하여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관련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모색함

- 주요 관리데이터 :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Scope 1) (ton CO₂eq),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Scope 2) (ton CO₂eq),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Scope 1,2) (ton CO₂eq/억 원)
 - ※ 기본적으로 환경데이터는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 통일된 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표적인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이 있으며, 사업장은 이 중 배출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배출원은 어디인지 파악해야 함
 - 국내에선 6대 물질만 온실가스 관리대상 물질로 정하여 관리를 요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삼불화질소(NF₃)를 포함한 7대 물질 모두 관리대상에 해당하므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유동적인 관리가 필요함

[표35] 온실가스 종류 및 특성

온실가스	지구온난화지수*	온난화기여도**	수명(yr)	주요 배출원
CO ₂	1	55	100~250	연료사용, 산업공정
CH ₄	21	15	12	폐기물, 농업, 축산
N ₂ O	310	6	120	산업공정, 비료사용, 폐기물
HFCs	140~11,700	24	70~550	냉매, 용제, 발포제, 세정제
PFCs	6,500~11,700		냉동기, 소화기, 세정제	
SF ₆	23,900		충전기절연가스, 반도체 식각용 가스	

*CO₂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대적 척도, **대기 중 농도 관점에서의 온실가스별 온난화 기여 비율

출처 |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0828073326405.pdf>

- 배출원은 배출 형태에 따라 직접배출(Scope1)과 간접배출(Scope2)로 구분하여 관리 배출원 범위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배출원에 따라 직접배출(Scope1), 간접배출(Scope2), 기타 간접배출(Scope3)로 나뉘지만 사업장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은 Scope1,2에서 이루어지므로 중소·중견기업의 관리범위는 Scope2까지가 적당함
 - 기업의 경제성과 환경성이 확보되거나 고객사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도의 요구를 받는 경우, Scope3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공급망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배출원 목록별로 자료를 구축한 것

[표36] 사업장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범위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직접배출(Scope1)	고정연소 배출	보일러, 버너, 터빈, 히터, 소각로, 엔진 등 사업장에서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생산설비 또는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
	이동연소 배출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
	탈루성 배출	연료 및 소화기, 에어컨, 냉장고, 정수기 등과 같은 다른 물질들의 사용, 저장, 이동, 생산,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배출
간접배출(Scope2)	구매한 전력, 스팀(열) 수도 또는 동력 등 생산과정에서의 배출	
기타 간접배출(Scope3)	구입 자재의 추출 및 생산, 구입 연료의 운송, 생산품 및 서비스의 사용에 의한 배출 등	

출처 |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0828073326405.pdf>

- 사업장의 편의를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tool을 마련하고, 범위 내 배출원에 대한 온실가스 직접/간접 배출량 및 총배출량을 산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함 (e.g. 00까지 00년도 배출량 대비 00% 감축)

[표37]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식

에너지원	산정식
전기	$\Sigma[\text{전력사용량(MWh)} \times \text{배출계수}(\text{GHG}(\text{CO}_2/\text{CH}_4/\text{N}_2\text{O})/\text{MWh}) \times \text{지구온난화지수}]$
LNG	$\Sigma[\text{연료사용량}(\text{Nm}^3) \times \text{순발열량}(\text{MJ}/\text{Nm}^3) \times \text{배출계수}(\text{kgGHG}(\text{CO}_2/\text{CH}_4/\text{N}_2\text{O})/\text{TJ}) \times 10^{-9} \times \text{지구온난화지수}]$
열(스팀)	$\Sigma[\text{열(스팀) 사용량(Gcal)} \times \text{배출계수}(\text{GHG}(\text{CO}_2/\text{CH}_4/\text{N}_2\text{O})/\text{Gcal}) \times \text{지구온난화지수}]$
등유	$\Sigma[\text{연료사용량}(\ell) \times \text{순발열량}(\text{MJ}/\ell) \times \text{배출계수}(\text{kgGHG}(\text{CO}_2/\text{CH}_4/\text{N}_2\text{O})/\text{TJ}) \times 10^{-9} \times \text{지구온난화지수}]$
B-C유	$\Sigma[\text{연료사용량}(\ell) \times \text{순발열량}(\text{MJ}/\ell) \times \text{배출계수}(\text{kgGHG}(\text{CO}_2/\text{CH}_4/\text{N}_2\text{O})/\text{TJ}) \times 10^{-9} \times \text{지구온난화지수}]$
LPG	$\Sigma[\text{연료사용량}(\text{Nm}^3) \times \text{순발열량}(\text{MJ}/\text{Nm}^3) \times \text{배출계수}(\text{kgGHG}(\text{CO}_2/\text{CH}_4/\text{N}_2\text{O})/\text{TJ}) \times 10^{-9} \times \text{지구온난화지수}]$
국내무연탄	$\Sigma[\text{연료사용량}(\text{kg}) \times \text{순발열량}(\text{MJ}/\text{kg}) \times \text{배출계수}(\text{kgGHG}(\text{CO}_2/\text{CH}_4/\text{N}_2\text{O})/\text{TJ}) \times 10^{-9} \times \text{지구온난화지수}]$
취발유	$\Sigma[\text{연료사용량}(\ell) \times \text{순발열량}(\text{MJ}/\ell) \times \text{배출계수}(\text{kgGHG}(\text{CO}_2/\text{CH}_4/\text{N}_2\text{O})/\text{TJ}) \times 10^{-9} \times \text{지구온난화지수}]$
경유	$\Sigma[\text{연료사용량}(\ell) \times \text{순발열량}(\text{MJ}/\ell) \times \text{배출계수}(\text{kgGHG}(\text{CO}_2/\text{CH}_4/\text{N}_2\text{O})/\text{TJ}) \times 10^{-9} \times \text{지구온난화지수}]$

- "순발열량"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12]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및 배출계수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적용
- "배출계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10]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 적용
 - 전기의 "배출계수"는 '14~'16년 3개년도 평균값 적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 "39.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용" 부분 참고)
 - 열(스팀)의 "배출계수"는 열(스팀)을 공급하는 사업자별 고유 배출계수 적용
- "지구온난화지수(GWP)"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 적용

-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인을 배출원별로 파악하고, 투자예산 인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해야 함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체제(CDM) 등 국내외 제정되는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도 감축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음
 - 저탄소 기술 도입, 공정 개선 등 개별적으로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온실가스 절감기술 DB를 통해 업종별, 대상설비별 타 기업의 개선활동을 참고하기 바람
 - ※ http://tips.energy.or.kr/savingtech/db_search.do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방법론과 다양한 사례가 제시된 '21년 ASEC에서 발간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가이드"를 참고하기를 권함
-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이 환경개선에 대한 기업의 노력 및 성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원단위 포함), 환경성과 데이터, 저감 프로그램 결과 분석 등에 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사례 1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

-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전환을 고려하여 내부 감축을 최대한 추진 후, 잔여 배출량에 대한 상쇄 활동 이행

[그림17] 감축수단 종류 및 우선순위 설정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E-16 | 제품환경 > 기술투자

관리 항목 | 제품의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투자, 기술 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항목 구분 | ○

제품(또는 서비스)의 환경성을 제고하고자 우수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의의 국제적으로 제품 중심의 규제수단과 유인수단을 통해 제품 전 과정에서 환경성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기술연구·개발은 환경규제의 효율적 준수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됨

-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환경법 또는 관련 규정이 엄격해지고, 소비자들이 제품(또는 서비스) 구매 시 사회·환경 요소를 고려하면서 친환경제품(또는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
- 이러한 흐름은 기업에게 가격경쟁력 약화와 시장 축소 등의 위기요인을 작용할 수 있으나 환경기술 연구·개발로 인해 친환경시장의 재편에 따른 새로운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기업은 제품(또는 서비스)의 성능, 가격 등을 유지하되 환경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환경기술 연구·개발이 요구됨

이행 방안

자발적 연구·개발 및 외부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제품(또는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환경 개선 기술을 확보해야 함

- 경제성,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자체적 기술 연구·개발이 어려운 기업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협업하여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정부 기관 또는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단, 협업 시 기업 고유의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수익 배분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표38] 오픈 이노베이션 유형

유형	주요 내용
내향형(outside-in)	기업이 연구, 개발, 상업화의 과정에서 외부의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으로부터 지식이나 아이디어 등을 얻는 것
외향형 (inside-out)	기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외부에 내보내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상업화하는 것

- 환경기술개발사업 중 이전·사업화 대상 환경기술은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매년 환경 R&D 우수성과*를 공개하므로 필요 기업은 이를 참고할 것을 권고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www.keiti.re.kr:8445/site/keiti/ex/board/List.do?cbldx=341>)
- 또한, '중소기업 대상 R&D 지원사업' 등 정부의 중소기업 대상 지원 사업을 찾아 이를 활용하도록 함

[표39] 2020 환경 R&D 우수성과 사례집



| 출처 | <https://www.keiti.re.kr:8445/site/keiti/ex/board/List.do?cbldx=341>

| 사례 1 | 녹색혁신기업 선정 및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31개사를 선정하여 성장 전주를 지원하기로 함
- 선정 기업에게는 연구개발과 사업화 자금뿐만 아니라, 정책옹호·투자·보증 등 녹색금융 연계 지원도 이루어짐

[표4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 개요

사업명	주관	주관 지원대상, 분야	'20년 선정	'21년 선정	지원내용 (3년, 30억원)
그린벤처	중기부	(지원대상) 혁신형 중소기업 (분야) 녹색기술 인증	20개사	15개사	환경(R&D) 12.5억원 이내 (사업화) 17.5억 원이내문제
녹색혁신기업	환경부	(지원대상) 중소기업	21개사	16개사	(R&D) 7.5억원 이내 (사업화) 22.5억 원 이내

| 출처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732>

| 사례 2 |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 G사는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자원봉사자 등 특정 다수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모두 활용하며, 1억 3천만 명 이상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품화 가능성 평가 그룹 형성
- U사는 각기 다른 업종 부문의 연구기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기구의 구조적·기능적 변화에 따른 보완책으로 혁신 성과에 기여 가능한 다른 회사나 대학 연구소 등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채용

| 출처 | IT R&D 정책 동향, 오픈 이노베이션의 개념과 성공사례

비고 (출처)

• ISO 26000

E-17 | 제품환경 > 친환경설계

관리 항목 | 제품 설계 시 수송, 사용, 폐기단계 등 제품의 전 과정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항목 구분 | ○*

제품 설계 시 생산뿐 아니라 수송·사용·폐기 전 과정의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원 및 유해물질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종제품의 친환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B2B 기업의 경우 소재선정과 부품설계 등에 적용할 수 있다.

* B2C 기업군 적용

의의 국제적으로 제품 중심의 규제수단과 유인수단을 통해 제품 전 과정에서 환경성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친환경소비 인식이 증가하면서 친환경제품은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요소가 자리잡음

- 친환경설계는 제품 가격이나 기능, 안전, 디자인 등 기본적인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제품 전 과정에 걸친 환경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로, 제품 개발 시 환경성이 추가적으로 고려된 친환경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함
- 기업은 이를 통해 제품 경쟁력 제고, 환경규제 대응, 관련 인증 획득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행 방안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하고, 친환경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이슈가 되는 6대 전략과 관련된 세부 활동을 이행해야 함

- 친환경설계는 조직 내부의 특정 기능에 의해 완성될 수 없으며, 제품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부서의 협조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공급업체, 유통업체, 폐기물처리업체)의 지원이 반드시 요구됨
- 6대 전략이란 '①유해물질 저감, ②재활용가능성 향상, ③에너지효율 향상, ④물질사용량 저감, ⑤환경오염 배출물질 저감, ⑥사용수명 최적화'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이슈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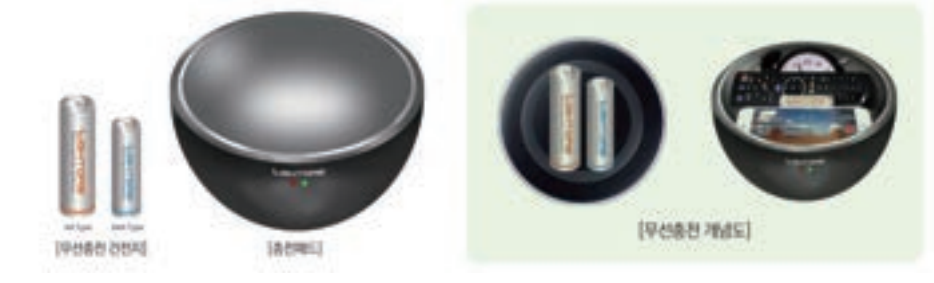
[표41] 친환경설계 6대 전략

구분	이행 방안	주요 이슈 업종
유해물질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료·부품, 제품의 제조, 사용 그리고 폐기 시점까지 사용 또는 배출되는 유해물질 양 최소화 부품 조립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유해물질에 의한 영향이 적은 부품의 공급업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산업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등 가공조립형 산업 철강, 화학, 제지 등
재활용가능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설계단계에서 제품 재활용의 경제성과 기술 측면 고려 제품회수 및 효과적인 재활용을 통한 재자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등 가공조립형 산업
에너지효율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공정 및 사용단계(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서의 주요 환경이슈 생산비, 제품유지비 등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과 직접적으로 연결 에너지 효율 설비 및 회수시스템 등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제조 공정 전기전자
물질사용량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제조를 위해 요구되는 자원의 소비 최소화 제품 중량 또는 부피의 감소나 수율 향상, 재활용 물질사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제조 공정
환경오염물질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의 전 과정 동안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물질 규명 및 환경영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제조 공정
사용수명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장 및 성능저하의 이유로 인한 조기 폐기 방지 부품의 모듈화 및 부품교체의 용이성 제고 (설계단계에서 고려) 제품 사용, 이상상태에 대한 진단 및 해결방법 등의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등 가공조립형 산업

| 사례 1 | 무선충전 건전지 및 충전패드

- J사는 일회용 건전지 대체가 가능한 자기공명방식 충전패드 및 전용 건전지 개발
- 건전지가 삽입된 리모컨이나 장난감 등 건전지 사용제품 자체를 패드에 넣어두면 다음날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충전 건전지는 타사의 무선 충전패드와 호환 가능

[그림18] J사의 무선충전 건전지 및 충전패드



| 출처 | 2016년도 친환경 창조경제를 위한 예코디자인 우수 사례

| 사례 2 | 제품 생산, 소비, 폐기 전 과정의 친환경

- C사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여 사용 이후 회수,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품을 설계하며 재활용률이 75% 이상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함
- 냉매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제품에 사용되는 냉매를 친환경 냉매로 전환하고, 폐기 시 기존 사용 냉매는 회수, 전량 재활용함

| 출처 | 전자신문, 2021.03.10., '가전업계도 ESG'열풍... 친환경 요소 강화

| 비교 (출처)

- ISO 26000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E-18 | 제품환경 > 제품/기술인증

관리 항목 | 제품/기술에 대한 친환경인증(환경표지, 우수재활용(GR), 저탄소인증, 녹색기술, 환경신기술 등을 확보 또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 항목 구분 | ○*

생산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국내의 친환경인증을 통해 기업과 제품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해당 인증제도에서 B2B 품목이 적용될 수 있을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B2C 기업군 적용

의의 | 친환경인증을 통해 기업의 생산 제품/기술에 대한 환경적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제품/기술에 대한 친환경인증은 고객(소비자)으로 하여금 기업의 경영 체계, 제품 및 서비스 환경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줌

이행 방안 | 환경표지(환경마크), 저탄소인증 등 국내외 제품 인증 및 녹색기술인증, 환경신기술인증 등 국내외 기술 인증을 취득 후,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함

- 하기 표에서 설명하는 인증 외 '친환경', '녹색', 'ECO', '저탄소'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특허, 연구개발 등 친환경 혁신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유사한 효력을 발휘함
 - 여러 친환경제품/기술 인증 가운데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및 향후 계획에 맞춰 적합한 인증을 선택하도록 함
- 취득한 친환경 관련 인증은 환경경영에 대한 기업의 의지 및 노력의 객관적 근거로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홈페이지 등 소통채널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해야 함

[표42] 국내외 주요 친환경제품 및 기술인증

구분	주요 친환경인증	주요 규제
제품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용도의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해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선별 표시 ● 제품 환경성, 품질, 소비자정보기준 적합성 증명 필요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상 대상별 인증기준」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별 표준 및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제품생산 전 과정에서 품질 및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인증 ● 환경친화성, 재활용 파급효과, 특허사용 허용 기준 만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한 제품 인증 ●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 탄소배출량(동종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탄소배출량의 평균값) 이하이거나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온실가스 감축량 3.3%) 필요 ※ 하기의 국제 '탄소발자국 인증'이 국가 실정에 맞게 조정된 인증

구분	주요 친환경인증	주요 규제
제품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저탄소인증'과 동일하게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수요 ● 단, 수출기업은 자국 탄소발자국 인증보다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카본 트러스트사의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는 추세 ● 제품 종류와 기준에 따라 탄소측정, 탄소저감, 탄소감축패키징, 탄소중립, 탄소중립패키징, 저탄소, 100% 재생에너지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펌프, 인버터, LED램프 등 23개의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 효율 및 품질시험 결과가 우수한 제품 인증 ● 제품심사기준 및 공장심사기준 만족 필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상 심사기준 참고
기술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외국 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함에 따른 새로운 기술에 대해 우수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인증 ●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평가된 신규성 및 우수성(기술 성능, 현장 적용성) 모두 만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 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보전 10개 분야의 유망기술을 인증 ● 기술우수성과 녹색성에 대한 인증기준 만족 필요

| 사례 1 |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

- L사는 제품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10% 이상 감축하고, 제품 전 주기 동안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하여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

[출처] 전자신문, 2013.06.19., 「이제는 에너지안보다」(22) L사 "가전 친환경서도 앞선다"

| 사례 2 | 제조 기술에 대한 녹색인증 획득

- S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FR기술* 적용 저NOx 가스버너 제조기술'에 녹색기술인증 획득 하였으며, 저 NOx 가스버너 역시 성능인정을 받아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지정을 받아 대외적으로 기술력 입증
*강제 내부 재순환(FR: Forced Internal Recirculation)

[그림19] S사 녹색기술인증서 및 제품



[출처] Kharrn, 2020.05.31., 'S사, FIR 저NOx버너 '녹색인증'

비고 (출처)

- GRI G4 Standards

E-19 | 제품환경 > 소비자보호

관리 항목

제품 사용 시 소비자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한 대책(위험평가, 대체물질 사용, 위험 고지 등)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이슈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최종 제품의 소비자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B2B 기업도 고려할 수 있다.

* B2C 기업군 적용

의의

제품 사용으로부터 유해물질, 독성 등에 소비자들이 위해를 입은 경우가 증가함에도 소비자로서는 어떤 제품이 위해 문제를 야기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됨

-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건강상의 피해 또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켜 기업의 제품 위험로부터의 소비자 안전 확보가 중요 이슈로 떠오르게 됨
-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제품을 이용하는 입장으로, 제품의 위해성 피해 측면에서 약자 입장이므로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과 보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요구됨

이행 방안

관련 법규 확인 및 제품 시험 분석 평가를 통해 소비자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제품의 인체 유해성·위해성 등)를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함

- 관련 법규에 기재된 의무 사항을 확인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분석 등을 진행하여 제품에 포함된 위해성을 확인해야하며, 위해성이 발견된 경우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수입 금지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관련 법령	목적	세부 준수 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 지원	(제10조)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적합한지 확인 받아야 함
		(제11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 금지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게 제품 제조·승인·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환경보전법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등 으로부터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	(제19조 1항)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 사업 활동 등에서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함 (24조)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의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제품 판매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가능함

관련 법령	목적	세부 준수 사항
제품안전기본법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 지원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성 조사 결과 제품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제품 수거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해성평가는 주로 외부로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실시하려는 제품의 물리적 특성과 함께 제품 함유 구성성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함
 - 관련 법에서 지정한 시험분석기관에서 제품 시험 분석을 진행해야하며, 시험분석기관별 시험 분석이 가능한 항목이 지정되어 있음

[표43]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선정 기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신규 등록된 화학물질로서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
- 생물에 대한 유해성(독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물질
-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있거나, 제품 내 함유량이 많아 인체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물질
- 국제적 규제 또는 관심물질로서 제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물질

출처 |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자사 제품의 사용 소비자에게 실제 발생한 사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사례가 없는 경우 타 사의 동일 제품 사고 사례, 국내외 주요 데이터베이스, 논문과 기존 결과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음

[표44] 제품함유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위해성 확인 항목

평가항목	세부시험 항목
독성동태, 대사 및 분포	흡수, 분포, 대사, 배출
급성독성	급성 경구독성, 급성 흡입독성, 급성 경피독성, 기타 경로에 따른 급성독성
자극/부식성/과민성	피부자극성/부식성, 눈자극성/부식성, 피부과민성, 호흡기 과민성
반복투여독성/만성독성	반복투여(경구, 흡입, 경피) 독성, 표적기관에 대한 독성
생식/발달독성	생식독성, 발달독성/최기형성
신경독성	신경독성 및 행동이상
유전독성(변이원성)	시험관 내 (in vitro)시험, 생체 내 (in vivo) 시험
면역독성	세포매개성 면역시험, 체액성 면역시험, 대식세포 기능시험, 자연살해세포 기능시험
발암성	동물실험(인체 대상 포함), 발암기작 연구
역학연구	코포트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출처 |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 기업은 소비자가 구매 및 사용 과정에서 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법적 요구사항 사항을 준수함은 물론 소비자 오인 혹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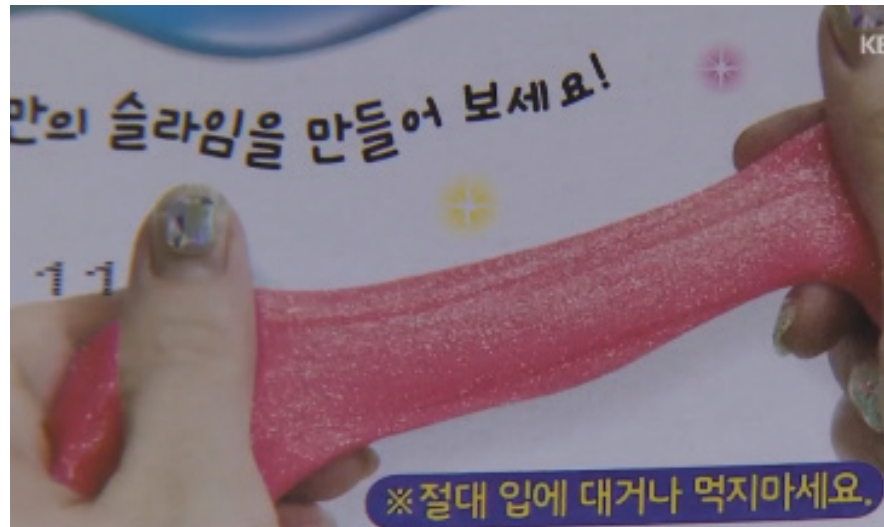
I 사례 1 | 어린이용품 20개 리콜

- 유명 유아용품 업체가 판매하는 아동용 책상과 의자로 친환경 소재로 만든 제품이라고 홍보해 인터넷 후기도 많은 제품임
- 시험 분석 결과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납이 검출되었으며, 긴과 신장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의 136배 넘게 검출 됨
-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되거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적발된 추가 제품 20개에 대한 즉시 리콜 명령이 내려짐

출처 | KBS뉴스, 2021.10.21., 일부 아동용 책상에 '납 30배 초과'...어린이용품 20개 '리콜'

I 사례 2 | 슬라임 제품 방부제 · 납 257배 초과

- 슬라임 제품에 TJ 기준치의 257배가 넘는 납과 2.6배가 넘는 붕소가 함께 검출되었으며, 한 색종이 제품은 기준치를 넘는 납이 검출됐고, 한 찰흙 제품에선 방부제가 발견되었음
- 적발된 제품은 모두 63개, 이 가운데 8개 제품에 대해선 즉시 리콜명령이 내려짐



출처 | KBS뉴스, 2021.10.21., 일부 아동용 책상에 '납 30배 초과'...어린이용품 20개 '리콜'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II. 사회(Social)

부문별 관리항목		구분
중분류	체크리스트	
근로조건	법정 근로시간 및 합리적 근로시간을 장려하고, 산업평균 수준의 복지혜택(육아휴직, 자기계발 기회 확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강제노동/ 아동노동	조직의 고용 관행 내 강제노동/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
다양성/ 기회균등	임직원에게 고용, 승진, 업무 수행에 있어 성별, 장애 유무, 출신국가 등 요건에 의한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공개적 수치심, 폭언 등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 위반 시 징계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
산업재해 방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매년 재해율을 관리하고, 근로자 안전/보건 정책 및 프로그램(안전보건 교육,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인증	사업장 또는 제품(기술)에 대한 안전보건경영 인증(ISO 45001, MADE SAFE® 등)을 확보 또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
개인정보보호	수집, 보관, 처리에 관한 정보 보안 법률 요건을 준수하는 개인정보 보안 규정 및 지침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제품 안전 및 품질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안전 및 품질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까?	●*
소비자 의견 수렴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피드백 할 수 있는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지역사회 발전 및 참여	지역사회 공헌 및 개발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관련 활동(공헌방침 수립, 산학협력, 창업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

- 현재 ESG 중 E(환경) 부분이 단연 강조되고 있으나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전환, SNS 공간의 의견 형성 및 확대 용이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S(사회) 요소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실제 경영진의 도덕성, 젠더 이슈, 근로자의 비인간적 처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홀 문제가 불매운동,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이 접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을 넘어 기업에 대한 평가도 소비의 기준이 되었음을 의미함
 - 소비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소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나의 예시로 소비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매 운동, 소비 장려 운동도 넓은 의미의 사회적 소비로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ISO 26000, SRI(사회책임투자) 등 관련 지수들이 명확해지면서 이에 입각한 투자활동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선 S(사회) 요소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됨
- 따라서 기업은 더 이상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이미지 제고나 홍보 측면에서만 활용하기 보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이해와 노력을 통해 기업 경영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S-1 | 인권/노동 > 근로조건

관리 항목

법정 근로시간 및 합리적 근로시간을 장려하고, 산업평균 수준의 복지혜택(육아휴직, 자기계발 기회 확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기업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운영 원칙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업 평균 수준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한다.

의의

코로나19 등 최근의 여러 사회적 상황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이 맞물리면서 자본주의의 개념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되었고, 근로자는 더 이상 단순한 피용인이 아닌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여겨짐

- 2019년, BRT의 이해관계자 변경 극대화에 대한 서명과 2020년, 다보스포럼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언급은 사실상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완전히 전환됐음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노사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보편적 원칙으로서 인적자본, 근로조건, 인권경영, 경영관여 등에 중요성을 두고 근로자를 보는 관점을 변화시켜야 함

[표45] 노사관계 변화에 따른 주요 고려사항

구분	주요내용
인적자본	근로자에게 투자하는 것
근로조건	근로자에게 공정한 보상과 혜택을 제공하는 것
인권경영	근로자를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경영관여	근로자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는 것

- 특히,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근로기준법」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과 대상 업종, 위반에 대한 벌칙사항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됨

이행 방안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하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등을 실시하여 선택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휴직, 자기계발, 성과배분 등 산업 평균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함

- 기업별로 도입 시기가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자사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업 특성 및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함
- 유연근무제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조정될 경우, 근로시간 파악을 위해 전자적 방식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며,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든 임직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별연장근로인가제 : 갑작스러운 설비 고장, 업무량 대폭 증가 등 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제도

[표] 인가사유별 인가기간

인가 사유	1회 최대 인가기간	1년간 활용 가능 기간
제1호(재난 등)	4주 이내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2호(인명보호 등)		
제3호(돌발적 상황)		
제4호(업무량 급증)		
		90일
		*제3호, 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
제5호(연구개발)	3개월 이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사를 거쳐 활용 기간 연장 *추가 연장근로 현황,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시행 여부 확인 심사 후 연장

- 유연근무제 : 통상의 근무시간 ·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시간 · 근로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유형이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사전에 근무수립이 가능할 경우, 일정 기간에는 많이 근무하는 대신 다른 기간에는 적게 근무하여 6개월 이내 동안 평균 주52시간을 맞추도록 조정하는 제도

[표] 단위기간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형

구분	2주 이내	2주 초과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실시요건	① 취업규칙 개정 ② 특정주, 특정일 지정 ③ 특정주 60시간 초과 불가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② 단위기간 6개월 이내 실시 ③ 특정주 64시간, 특정일 12시간 초과 불가	
1주 한도	60시간(=48+연장12)	64시간(=52+연장12)	

- 선택적 근로시간제 : 1개월 평균*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또는 1주당 근로시간 제약 없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하도록 하고 기간 만료 후 연장근로수당을 정산하는 제도

* 단,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3개월까지 활용이 가능

※ 도입 요건 :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21.05., '주52시간제도 핵심내용 묻고, 답하기'

-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유연근무제와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표46]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구분	2주 이내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 방문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 방안을 제시, 관련 지원제도 등 안내 · 연계 * 주52시간 초과 인원 및 직군별 근로형태와 시간 확인 후, 상황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및 지원제도 제시 교대제 개편 또는 유연근로제 도입 필요 시 노무사(전문가 지원단)와 연계하여 상담 진행 기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일터혁신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연계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노무사 및 근로감독관이 근로시간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 · 해법 제시, 이후 사업장은 개선결과 제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근로시간 감독 면제 또는 개선 권고사항 이행 시 차년도 근로시간 감독 면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우수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게 정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노동시간 단축계획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유형, 6~49인), 조기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유형, 5~299인) 대상으로 실시
노사발전재단 장시간근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컨설턴트가 현행 근로형태 및 시간을 분석 후, 근로시간 단축 지원 컨설팅 제공 유연근로제를 통해 다양한 실근로시간 줄이기 근로유형*제시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대제 전환, 유연근로시간제, 스마트워크, 장시간 직무분할, 휴가축진제도, 근로시간관리 시스템 구축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 설계 컨설팅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노사발전재단

- 또한, 기업은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 할 수 있음
- 또한, 복지제도 설계 시 근로자의 사망·장해·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문화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함

| 사례 1 | 근무시간관리 프로그램 운영

- S사에서는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일환으로 'PC 온·오프제'를 실시하여 사내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관리 및 정시퇴근 문화 확립
- 결제 승인에 따른 계획된 연장근무만 시행할 수 있으며, 이외 시간에는 PC를 강제 종료

| 출처 | 위키리스크한국, 2019.05.07., '주 52시간 근로제' 앞둔 보험사들... 'PC온오프제 확대' 추세

| 사례 2 | 유연근무제 및 초과 근로시간 관리

- S사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를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여 직원들이 일별·주별로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절하면서 한 달 동안 정해진 근무시간을 맞추도록 함
- 더불어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R&D) 인력에게는 '재량 근로제'를 실시하여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성과를 극대화하기만 하면 되도록 완전한 자율권 부과
- '포괄 임금제 원칙적 폐지' 방침에 맞춰 시간 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초과 근로수당 엄격하게 관리

| 출처 | 중앙일보, 2018.05.29., 'S사, 월단위로 근로시간 알아서... 유연근무제 확대'

| 사례 3 |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 K사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과 남성 육아기 단축근무를 장려하며 직원 휴가 활성화를 위해 휴가비 지원
- 더불어 임직원 종합검진, 자녀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 중이며 자기계발비 지원 및 각종 직원 기념일 축하 이벤트, 단합대회 등 전사 행사를 운영
- 그밖에 연도별, 분기별 우수혁신인 시상 등의 다양한 포상제도로 개인의 성취감 제고

| 출처 |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

비고 (출처)

- ISO 26000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GRI G4 Standards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S-2 | 인권/노동 > 강제노동/아동노동

관리 항목

조직의 고용 관행 내 강제노동/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근로자 고용에 있어 어떤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으며 법률 상 "최소연령"이하의 아동노동은 금지해야 한다.

의의

문명사회에서 강제노동은 노예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과 여러 국가의 법률은 아동에 대한 보호원칙을 밝히 최소연령 이하의 아동 노동을 엄금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의 경우,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이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치주의가 정착한 선진국이라도 공공연한 강제·아동노동이 발견되지 않을 뿐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기업은 스스로 이용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자회사나 공급망 또는 해외 법인 등 어느 곳에서도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이행 방안

기업의 경영방침에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회사 및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정기적 실사를 이행해야 함

- 기업은 인신매매나 채무노역에 관여하는 조직이나 업체에게 인력을 공급받지 않도록 유의하며, 이러한 인력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해서는 안됨
-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계약서 등의 서류에 항목을 포함시켜 명시적으로 요구하도록 함
-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근로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적 방법을 고려함으로써 아동이 고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용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육기회 제공 등 구제조치를 취해야 함
 - 신분이 위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추가로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사례 1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체크리스트

• 답변은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으로 구분

항목	체크리스트
강제노동 금지	회사는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하도록 배려한다.
	회사는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이를 보관하지 않는다.
	회사는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회사는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회사는 노동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항목	체크리스트
강제노동 예방	회사는 외국의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아동노동 금지	회사는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교육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회사는 서류를 통해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아동노동 조치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고려한다.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시간은 7시간/일,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경우, 건강·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의무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한다
	회사는 아동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회사는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연소자들이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2019년도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보고서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S-3 | 인권/노동 > 다양성/기회균등

관리 항목

임직원에게 고용, 승진, 업무 수행에 있어 성별, 장애 유무, 출신국가 등 요건에 의한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기업은 임금, 승진, 보상, 교육기회 등 채용 및 고용활동에서 성별, 출신국가, 장애유무 등 요건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되고, 조직의 전반적인 성과 평가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의의

비차별은 여러 가지 인권 원칙 중 가장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로 법률에 의해서도 보장받고 있으며, 조직의 다양성 관리를 통해 동일 성향 집단의 획일적인 아이디어로부터 탈피하고 기업의 생산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상이한 문화 및 특성을 가진 임직원의 다양한 시각을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고,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채용과 승진을 통해 다양한 인재 풀(Pool)의 확보가 가능함
 -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에서 다양성과 관련된 조사에 따르면(18), 경영진의 다양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매출의 약 절반이 최근 3년 간 출시된 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했으며, 다양성이 평균 이하인 기업에 비해 매출이 약 9% 높다는 결과가 나타남
- 소비 행위를 통해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표출하는 가치 소비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기업 이미지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공정한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변동할 가능성이 큼

이행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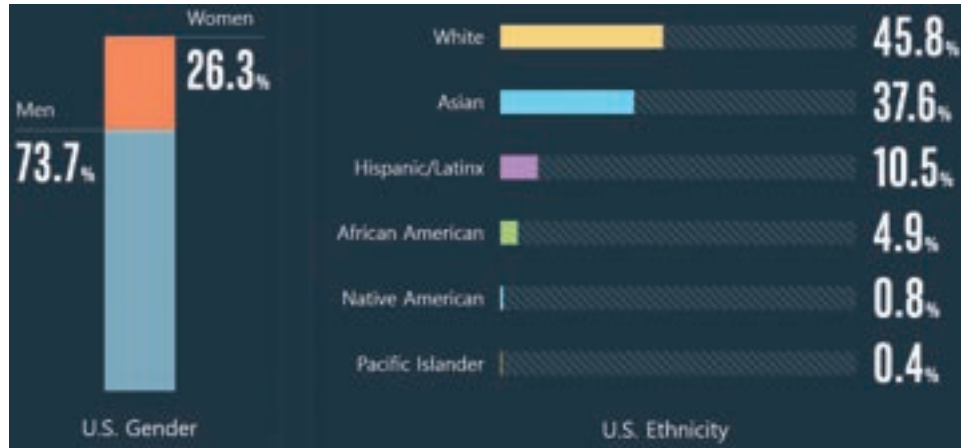
조직 전반의 다양성과 대표성 데이터를 추적하여 파악한 차별 현황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승진 등 기회 부여에 있어서 자의적 평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 평가의 명확한 기준 제시 및 조직 내 인식을 개선해야 함

- 대부분 국가에서 비차별정책은 보편적인 인권으로 확립되어 관련 법률이 존재하므로 이를 사전에 검토하여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법률이 미비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자체적 비차별원칙을 설정하여 준수해야 함
- 보다 객관적인 인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임직원의 각 다양성 데이터(성별, 종교, 국적, 사회적 신분 등)와 직급, 급여 등을 집계하여 차트화하고 상관성을 분석해야 함
- 고용 및 성과평가의 전 과정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하고 일관되도록 설정하고, 다양성에 관한 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기회 차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함
 - 인사평가 기준과 항목을 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수립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확립할 수 있음
 - 다양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일방적이고 통제적인 성격보다 자율적이고 양방향인 성격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진행하면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
- 고용에서 차별적 취급은 금지되지만, 사회적 취약층을 위한 특별한 배려는 차별이 아니므로 두 사항을 명확히 구별할 줄 알고, 법에 의해 요구되는 배려 이외에 자율적으로 취약층에게 고용 상의 배려를 할 수 있음

| 사례 1 | 임직원의 급여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형평성 평가

- 사는 당국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급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직급 및 직업 유형, 인종, 성별로 나누어 기입한 표를 포함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상에 게재함으로써 투명한 정보를 공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등한 급여 체계를 수행하겠다고 선언함

[그림20] 사 직원 스냅샷



| 출처 | 사 홈페이지

사례 2 | 고용상의 비차별 체크리스트

• 답변은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으로 구분

항목	체크리스트
고용상 비차별	회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회사는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고용상 남녀 비차별	회사는 동등한 사업 내의 동등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회사는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회사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회사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등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회사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회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관(기업)(자회사, 지사 등)은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2019년도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보고서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S-4 | 인권/노동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리 항목 |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공개적 수치심, 폭언 등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 위반 시 징계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 ●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동에 대하여 절차를 마련하여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의의 |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환경을 저해하고 법적 분쟁, 이미지 손실 등 기업에게 간접적 부담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관련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더 나아가 적극 대응하지 않은 기업에게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가하는 방향으로 법의 제재가 강화됨
-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훼손은 물론 그 목격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를 낮추고 이직·퇴직률을 높여 정상적인 조직 운영을 저해할 수 있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장 내 괴롭힘 한 건 당 연간 약 1,550만 원 이상의 비용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추정 가능한 최소 금액으로, 실제 근로자의 정성적 요소에 의한 손실까지 고려하면 그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함
-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 선진국 구별 없이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도 해당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함

이행 방안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직의 내부 규정을 제·정비하여 행위에 대한 정의, 처벌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한편, 신고 절차를 수립하고, 문제 해결 조치 및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행해야 함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통한 개념 정립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해당 행위에 따른 징계 수위, 진행 절차 등을 기재한 규정을 도입해야 함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모두 총괄시킬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음
 - 괴롭힘에 대한 개념 설정 시, 설문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성 및 합리성을 강화하도록 함

[표47] 직장 내 괴롭힘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 조직 내 신고절차를 수립할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고 조사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담당하도록 하며, 조사 종결 후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피해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방식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 후, 반복행위의 발생여부 등 피해자의 근무환경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표48]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단계	세부내용		
사건접수	신고, 인지		
상담	피해자가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등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조사	(조사 생략)	약식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사 보고	정식 조사
괴롭힘 사실 확인 및 조치	괴롭힘 상담 보고서를 작성,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적절하게 조치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 *합의 결렬 시 피해자 재상담 후 정식조사 의뢰 등 피해자 의사 확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모니터링	합의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사례 1 | 괴롭힘 신고 사이트 운영 및 처벌 명시

- P사는 홈페이지상에 직장 괴롭힘·성희롱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해당 신고의 처리결과확인도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성희롱 및 폭언 근절을 포함한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에 대한 윤리규범을 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퇴사 조치까지 가능한 무관용 처벌을 시행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음

[표49] P사의 윤리규범 (일부 발췌)

-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즉시 알리지 않은 경우
 -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도경영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윤리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

출처 | P사 홈페이지

사례 2 | 그룹 차원의 윤리 위반 행위 관리

- K사는 내부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임직원의 행동에 대하여 그룹 차원의 윤리경영 담당을 두고 신고를 받고, 더불어 임직원 전용 인트라넷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관련 상담 및 제보가 가능하도록 함

[그림21] K사 윤리경영 위반 제보 업무처리 절차



출처 | K사 홈페이지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S-5 |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방지

관리 항목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매년 재해율을 관리하고, 근로자 안전/보건 정책 및 프로그램(안전보건 교육,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 성과목표 설정 및 전담관리체계 구성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의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함으로써 기업은 법규 위반 리스크뿐만 아니라 산재로부터 비롯되는 직접/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및 기업의 사회적·인도주의적 책임을 예방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
-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경영성과에 있어 생산차질, 기업이미지 하락, 노사관계 악화, 노동력 상실 등의 간접적 손실과 사고처리비용, 배상 책임 비용, 오염 발생 시 정화비용 등의 직접적 손실을 불러일으킴
 - 고용노동부는 2015년 이후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2015년 20조원에서부터 2020년 30조 원까지, 최근 6년 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이행 방안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공유하고, 산업재해를 관리, 작업환경 정기점검, 안전보건교육 등 업무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안전보건 수준 제고를 위한 목표 달성 과정을 관리해야 함

- 기업은 우선적으로 안전보건 규정과 이에 입각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0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보유한 제조업, 건설업 등의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규정 작성을 권고함
- 사업장 내 유해·위험 설비의 설비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작업환경 안전보건 위험도를 자체점검하고, 기업차원에서 위험요인별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 장비를 제공함
 - 점검결과는 자체점검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두고, 점검 날짜를 표기하여 변동사항, 특이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
 - 안전보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공정이나 물질, 설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조치가 요구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프레스, 절단기, 크레인, 리프트, 화학설비, 고소작업대 등 위험설비는 안전검사 필수
- 최소 3년의 산업재해율을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현황, 안전 업무 수행실적, 안전작업 수행능력 및 안전작업 계획 등 산업재해 지표를 산출하여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성과목표 설정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업종 평균 재해율과 비교하여 높을 경우, 원인 분석 및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 안전보건 교육은 기업에서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 5대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로, 근로자별 대상 교육 실시 시기·내용·시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 외 사업장의 중대위험요소, 안전운전절차 및 비상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 자체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체 교육일지 및 자료, 사진 등 자료를 분기별로 보관해야 함
 - 공정안전교육훈련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실시하되,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표50]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

구분	실시 시기	교육 시간*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매분기 3~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의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1~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1~2시간 이상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 시 실시	2~16시간 이상

*세부 교육 시간/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 참고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도출 시, 다음과 같은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함과 더불어 평가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함
 - 최초 작업 시,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의 위험성 평가·관리에 필요한 표준모델, 업종별 사례,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권고

[표51] 위험요인 도출을 위한 주요 위험성평가 기법

기법	세부 사항
4M	Machine(기계적), Media(물질·환경적), Man(인적), Management(관리적) 4가지 분야로 그룹화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체크리스트 평가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 상태, 위험 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
사고예상 질문분석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예상 질문을 통해 사전에 확인
위험과 운전분석(HAZOP)	공장(공정)이 원래 설계된 운전목적으로부터 이탈하는 원인과 그 결과를 찾아보며 그로 인한 위험 요소와 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 -단순 위험요소의 파악 단계를 넘어, 위험하지 않아도 효율을 저하시키는 문제점 파악
작업안전분석(JSA)	특정 작업을 주요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과 잠재적인 사고를 파악하고, 그를 최소화 및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결함수 분석(FTA)	사고 결과로부터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낳을 수 있는 장치의 이상과 고장의 다양한 조합을 표시
사건수 분석(ETA)	발생 가능한 초기사건을 선정하고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고결과를 예측·평가
원인-결과분석(CCA)	사고 결과와 원인의 상호관계 예측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 지침해설서

- 작업 관련 질환의 발병을 분석을 통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확인하고, 고위험 질환의 초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 검진 프로그램을 이행함

사례 1 | 성공적인 위험성평가를 통한 무재해 9배수 달성

- H기업은 공정별 유해·위험 정보를 파악하고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개선 전 10.9 수준이었던 위험도를 4.1 수준까지 낮추는 결과를 도출하여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음

[그림22] H사의 위험성평가를 통한 개선 전후 비교

공정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유형	개선전 위험도	개선대책	개선대책의 실시			개선후 위험도	비고
					완료일장	부서	담당자		
간조 (PVC)	해로운가(중량물60-70kg)를 밀어서 인조거름 넣을 시 근로자에게 질환 위험	근로자에게	12	도움 리프트 설치	2020.10.21	내용고형	1	완료	
PVP분말	PVDC,PVC로밀 채운시 가스발생	공통	12	국소배기장치설치	2020.12.20	표준직	4	완료	
비물리충전	용기에 속압을 작업자가 반복적으로 걸면서 근로자에게질환 위험	근로자에게	12	작업 자동 공압기 제어 설치	2020.12.30	표준직	4	완료	
비물리조립	중량산별기 적용시 일관되게 작업 위험	직업	12	보호장비 설치	2020.10.30	표준직	3	완료	
장재료 입고	지게차 운전 중 작업자의 충돌사고 우려	공통	12	후방카메라 설치	2020.12.30	보건관리	9	완료	
장재료 보관	지게차 운행중내 작업자 접근시 충돌사고 우려	공통	12	후방카메라설치	2020.12.30	보건관리	9	완료	
반동	작업자 충돌 위험	공통	12	방호울 설치	2020.10.30	보건관리	3	완료	
배출조작	이송조작 할때 작업자 눈앞 높이가 낮아 추락 위험	주요	12	안전방호대 설치 (배출면으로부터 높이 130cm이상)	2020.11.30	표준직	4	완료	
출판 (SP-300)	롤러상자 회전부에 작업	직업	9	방호장비설치	2020.10.30	내용고형	3	완료	
배출전과정	배출라인으로 이동하는 배출물 20kg/분 저체시 압력 저하를 작업자가 인지하지 못해, 배출관 낙하시 사고 발생 위험	공통	9	압력 감지 제어장치와 감광동 설치	2020.10.20	표준직	3	완료	
라이프실트	조제행의 모터부 소음 발생으로 인한 (87.1dB)	주요	9	모터구동방식변경 (제안→작업일정표)	2020.11.30	표준직	6	완료	
개선 전 위험도			10.9	개선 후 위험도			4.1		

출처 |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 리플릿

사례 2 | 산업안전 보장 체크리스트

- 답변은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으로 구분

항목	체크리스트
작업장안전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회사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상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 되고 있다.
	회사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회사는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회사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항목	체크리스트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임신을 한 노동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장애인들이 회사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필수 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회사는 노동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노동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제공되고,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회사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산업 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회사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회사는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전문가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재해 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2019년도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보고서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S-6 | 산업안전보건 > 인증

관리 항목

사업장 또는 제품(기술)에 대한 안전보건경영 인증(ISO 45001, MADE SAFE® 등)을 확보 또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국내외 인증을 통해 기업과 제품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의의

기업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식별하고 사전 관리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안전보건경영은 기업의 궁극적 목적인 이익창출과 사회적 책임인 재해예방 대책을 병행하는 것으로, 기업은성공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재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
-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조직의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내부적으로 이행되는 안전보건 평가는 대외적 신뢰를 얻기 어려우므로, 독자적 제3자에 의한 인증을 통해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음

이행 방안

ISO 45001, KOSHA-MS, MADE SAFE® 등 국내외 안전보건경영 인증을 취득 후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함

- 하기 설명하는 인증 외 '안전', '보건'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 분야 및 활동에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 혁신 역량강화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인증체제도 같은 효력을 발휘함
 - 여러 인증 가운데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및 향후 계획에 맞춰 적합한 인증을 선택하도록 함
- 취득한 인증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기업의 의지 및 노력의 객관적 근거로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홈페이지 등 소통채널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해야 함

[표52] 국내외 주요 안전보건경영 인증

주요 안전보건경영 인증	세부내용
 <p>ISO 450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재해 및 질병의 감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 ● 국제 표준 규격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조직의 상황, 리더십, 기획, 지원, 운영, 성과평가, 개선 등) 구축 필요
 <p>KOSHA-MS (舊, KOSHA 180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45001을 한국 실태에 맞게 수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향후 ISO 45001로 전환하기 쉽도록 구성 ●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도록 인증 기준, 심사비, 심사 일수 등 세분화 기준 적용 ● 안전보건 경영체제분야(27개), 활동수준분야(14개), 경영관계자 면담 분야(6개)로 47개 항목의 기준 만족 필요
 <p>MADE SAF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에 대한 인증 제공 ● 제품의 모든 원재료에 대해 발암물질, 내분비 교란제, 중금속, 고위험 살충제 등 유해 화학물질이 없는지 심사

| 사례 1 |

KOSHA-MS 인증 취득 및 홍보

- Y기업은 전 직원의 안전기사 취득을 독려, 현장 내 모든 장비에 사람을 자동 인식하는 AI 기반의 영상인식시스템 장착, 사내 안전보건 전문가 육성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력함으로써 KOSHA-MS 인증을 취득하고 이를 홈페이지·블로그 등에 게시함

[그림23] Y사의 KOSHA-MS 인증서



| 출처 | Y사 홈페이지

| 사례 2 |

5가지 노력을 통한 ISO 45001 인증 취득

- K기업은 특정 사업 부문에 있어서 ①관련 법·제도에 부합하는 표준 안전관리계획 수립, ②체계적인 위험성 평가 절차 운영, ③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자기점검 활동 강화, ④위험·특수 공종별 상세한 작업 가이드라인 제정, ⑤안전보건과 관련한 노사협의체 운영 노력을 기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ISO 45001 인증서를 수여받음

| 출처 | K사 홈페이지

비고 (출처)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S-7 | 소비자이슈 > 개인정보보호

관리 항목

수집, 보관, 처리에 관한 정보 보안 법률 요건을 준수하는 개인정보 보안 규정 및 지침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기업 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B2C기업군에만 적용

의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부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법적·사회적으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의무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에게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을 비롯한 고객손실, 매출 및 신용도 하락, 이미지 훼손 등의 부정적 영향과 더불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의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 및 민간의 1,300여 개 기관에서 4,700만 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221개 기관에서 53억 원 수준의 과징금, 26억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정보는 유출 발생 2일 내에 평균 1.3%의 시장가치를 상실하며 이는 98.9백만 원 수준의 손실로 이해할 수 있음
- IT 기술의 급격한 발달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의 확산속도는 빨라지고 그 규모 또한 점차 대형화 되고 있으며, 2차, 3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위험이 높아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특히 IT, 통신서비스 등의 산업에서는 개인정보의 중요도가 높아 사고 발생 시 ESG 등급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침

이행 방안

「개인정보보호법」에 입각한 조직 내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 침해에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정보관리 활동을 실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침(처리방침)'을 작성·공개하여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에 관한 전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

[표53]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일부 발췌)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처리·보유 기간
● (해당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단,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근거와 항목을 명시해야 함)
● (해당 시)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
● (해당 시)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KISA, 2020.12.,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비롯한 정보 유출, 오남용, 불법 유통 등을 모두 포괄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성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책임자를 확보해야 함

- 개인정보의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를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고, 필요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침해 발생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

* 개인정보파일 운용 시스템의 신규 도입 및 변경 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제도

[표54] 개인정보 유형별 분류 및 예시

구분	주요내용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이메일 주소,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신체적 정보	● (신체정보)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정보, 키, 몸무게 등 ● (의료·건강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病歷) 등
정신적 정보	● (성향정보) 도서·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 (내면의 비밀 등)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재산적 정보	● (개인금융정보) 소득,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동산·부동산 보유내역, 저축내역 등 ● (신용정보) 개인신용평가정보, 대출 또는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사회적 정보	● (교육정보) 학력, 성적, 출석상황, 자격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등 ● (법적정보) 전과·범죄 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계급, 근무부대 등
기타	전화 통화내역, IP주소, 웹사이트 접속내역, 이메일 또는 전화 메시지, 기타 GPS 등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 출처 |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김대리, 정보보호 달인되기'

- 모든 임직원에게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 형태는 각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 자체교육, 위탁 교육 등 선택할 수 있음
 - 자체교육의 경우,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외부 기관에서 유·무료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 *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 온라인 교육, 현장 교육,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 운영 등 지원사업 진행
- 또한, 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SMS-P)' 등의 제3자 인증을 통해 대외 신뢰도 향상 및 내·외부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 저감을 도모할 수 있음
 - 기업의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을 심사하여 인증
 -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 사업자, 정보 통신시설 운영·관리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사업자, 등은 인증 의무 대상자에 속함

| 사례 1 |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 N기업은 내부 정보보호 시스템 및 관리를 통해 임직원이 업무상 이용하는 PC에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통해 보호 조치 시행
- 검색결과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식하여 마스킹(Masking)처리 후 게시

[그림24] N사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행 결과



출처 | N사 프라이버시 센터

사례 2 | 소비자 사생활 보호 체크리스트

• 답변은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으로 구분

항목	체크리스트
소비자 사생활 보호	회사는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회사가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2019년도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보고서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S-8 | 소비자이슈 > 제품 안전 및 품질

관리 항목 |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안전 및 품질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까? | 항목 구분 | ●*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안전·품질 기준을 준수함과 더불어 선제적, 적극적인 안전평가·관리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 B2C기업군에만 적용

의의 | 기업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제품의 안전·품질에 대한 결함 예방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켜 손해배상 책임 완화, 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만족도 향상 및 신뢰관계 형성 등의 긍정적 결과를 낳게 됨

- 제품 품질과 안전성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기본이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 수준의 충족 여부가 기업의 생존, 그리고 지속가능 성장과 직결됨
 - 더군다나 삶의 질 향상 욕구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점차 상승하여 생산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기존의 단순 품질관리 기법으로는 한계가 있음
- 아무리 세심한 사후관리도 제품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리콜, 기업 이미지 하락 및 그에 따른 장기간 매출 감소 위기를 막을 수 없으므로, 사전 예방을 위한 제품 안전성 및 품질 리스크 관리가 최선의 방법으로 꼽힘
 - 최근에는 실손해의 배액까지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제품 사고가 발생하여 집단소송으로 번질 경우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반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기업이 소비자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소비자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필요성이 더욱이 대두됨

이행 방안 | 각 제품별 안전·품질 기준을 확인·준수함과 동시에 제품의 설계부터 소비자의 사용·폐기 등 모든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제품을 검사하고 개선해야 함

- 안전성 평가는 제품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의 제품 안전성, 품질의 결함뿐만 아니라 사용이 완료된 제품의 보관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함
 - 더불어 운송과정과 최종 소비자에 따라 동일한 제품이라도 안전성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 경유 등), 의약품, 전기 및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일부 제품은 안전 또는 품질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자사 제품에 대한 기준을 확인 후, 최소한 이를 준수해야 함
 - 주 소비자가 안전에 취약하거나 제품이 직접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하여 제품 출시 전 시험·인증을 받아 해당 제품에 KC마크를 부착해야 할 의무가 있음

[표55] 안전관리제도 구분

마크	구분	세부 사항	위해정도
KC마크	안전인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제품시험(안전성시험), 공장심사(제조·검사설비, 원자재·공정검사, 제품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2년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함 	
	안전확인대상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간에 신고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없음	안전기준준수	제품시험 의무 없이 안전기준 준수	

출처 | <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2>

- 국가에서 정한 안전 및 품질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업은 내부적으로 더 엄격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파악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소비자를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평가하기 위해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험성 평가를 설계 단계에 통합시킨 '제품 안전설계' 프로세스를 수립할 수 있음



출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제품 위험성 평가관리 수행 지침서'

- 특히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아동, 고령층, 임산부, 장애인 등의 소비자 유형에는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일반 성인보다 세밀한 기준을 적용하고 관리해야 함
- 사용자의 부주의한 제품 취급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시장의 동일한 제품군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 사항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또한, 소비자가 제품 사용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품질 관련 의견 수집, 불량품·리콜 발생 추세 기록, 새로운 위험 발생 요인 추적 등의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 사례 1 | 제품개발부터 소비자사용까지 관리

- Y기업은 제품 개발부터 생산, 소비자 사용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관리하며, 판매 후에도 소비자 불편정보 및 안전성에 대한 이슈를 모니터링함



출처 | Y사 홈페이지

| 사례 2 | 소비자인권 보호 체크리스트

- 답변은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으로 구분

항목	체크리스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회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회사는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회사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회사는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품 결함 시 조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회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한다.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즉시 소비자에게 알린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2019년도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보고서'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S-9 | 소비자이슈 > 소비자 의견 수렴

관리 항목 |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피드백 할 수 있는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항목 구분 | ○*

소비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사업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 B2C기업군에만 적용

의의 | 소비자 니즈가 다양해지고 구체적으로 변하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 의견 수렴은 소비자로서도 최적의 산출물을 제공 받고, 기업도 고객 니즈 충족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시킬 수 있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핵심 요소임

-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으로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촉각을 기울여야 하는 기업에게 경영의 근본이 되며 매우 중요한 자산임
- 뿐만 아니라, 개별 고객과 단순 관리 차원의 응답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고객과의 사이에서 친밀감 및 충성심을 형성할 수 있음

이행 방안 | 소비자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수집된 의견이 최종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개선사항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운영 주체, 주기,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따름

- 소비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콜센터,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채널을 구축하여 편협되지 않은 전 계층의 소비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
 -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소통 채널의 경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편리함이 있지만 노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서도 의견 수집을 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 다양한 유형의 소통 창구를 개설하도록 함
 - 자사가 마련한 채널 이외 커뮤니티, SNS, 한국소비자원 민원상담,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등 외부 채널도 소통 채널로 인식하고, 접수된 소비자 의견을 모니터링하여 관리하도록 함
- VOC 수집부터 대응, 분석, 활용단계까지 소비자의 만족도를 분석 및 기업의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총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확립해야 함
 - 소비자의 의견이 부정적인 내용으로 제품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이를 식제하는 등 부당제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함
 - 유형별 소비자불만사항, 처리내용·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회사 전반에서 공유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소비자 불만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함

[표57] VOC 운영 프로세스

①VOC 수집	→	②VOC 처리	→	②VOC 분석	→	④VOC 공유/활용
콜센터		문의/응답		원인분석		VOC 현황 부서 통보
대외민원		요청처리		이슈도출		
홈페이지		불만대응		개선요인 발굴		회의체 공유
SNS				취약항목 점검		VOC 조회
CS(고객만족도 조사)		현 수준 및 개선대상 파악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평가반영 (우수직원 포상 등)
대외기관						

| 출처 | 서울시설공단, '소비자중심경영(CCM) 운영 매뉴얼'

| 사례 1 | 체계적인 VOC 관리 시스템을 통한 개선 활동

- C기업은 콜센터, 현장 VOC 등의 전사 VOC 채널을 통합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과정부터 개선 과제 도출 및 해결까지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이슈에 대응
- VOC 채널을 통해 제기된 개선 과제는 유관부서에 전달되고, 주기적으로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함

[그림] C사의 VOC 처리 프로세스



| 출처 | C사 홈페이지

| 사례 2 | 소비자 체험단 운영

- O사는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서포터즈를 가동하고 있으며, 주요 소비층으로 체험단을 구성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평가하고 품질 리뉴얼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출처 | 세계일보, 2020.01.14., '소비자 의견 수도 없이 듣고 상품 성공 확률 높이는 기업들'

| 사례 3 | SNS 적극 활용

- P사는 자사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고객이 동감할 수 있는 공감형 소통 콘텐츠 제공을 통해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등 고객친화적인 SNS 소통 활동을 통해 고객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냄
- 해당 활동으로 인해 P사는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에서 고객과 열린 소통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음

| 출처 | 베이비뉴스, 2017.11.16., 'P사, 고객과 열린 소통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

비고 (출처)

- ISO 26000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RBA Code of Conduct

S-10 | 사회공헌 > 지역사회 발전 및 참여

관리 항목

지역사회 공헌 및 개발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관련 활동(공헌방침 수립, 산학협력, 창업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를 파악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의의

최근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강화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여겨 기여를 통해 장기적으로 상호 발전하는 관계에 이를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경제적 활동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련의 공익적 활동으로, 재정·비재정적 지원 등 기업의 자산과 핵심 역량을 사회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함
- 사회가 발전하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는 기업에게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책임이 점차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형태로 발전하였음
- 더 나아가 최근에는 지역사회가 생산 자원, 소비자, 시장 등을 포함한 기업이 영위하는 터전으로, 지역사회의 붕괴는 곧 기업의 붕괴로 이어지며, 기업 역시 시민의 일원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이행 방안

단편적인 활동수행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이행하고, 활동의 지속성 및 효과성 확보를 위해 투입 자원, 성과 등을 수치화하여 관리해야 함

- 경영진의 사회가치경영 전략을 담은 공헌방침을 수립하는 한편, 해당 공헌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주체인 임직원의 인식과 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교육을 제공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임직원의 활동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재무적·비재무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만족도가 높은 유형의 활동을 계획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할 수 있음
 - 사회공헌에 대한 참여 및 지출 대비 영향력이 미미할 경우를 예방하고자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중심이 아닌 이해관계자 관계 관리 및 사회공헌 이슈에 대한 통합 연계 등으로 기업의 역할 및 인식을 변화시켜야 함
 - 이를 위해 수익 환원 기부 및 봉사활동 등의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에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이 필수로 요구됨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업의 특성을 살린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연관성 없는 보편적인 원조 활동에 비하여 주민들의 인식 속에 기업의 대표적인 기여 활동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음
 -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활용 및 구성원을 직접 참여시켜 소통함으로써 지역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심사하고 인정해주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인정패 및 증명서를 부여하고 우대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심사 지표와 방법, 세부 가이드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을 기업이라도 기업 활동 예시자료로서 활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됨
- ※ 지역사회공헌인정제(<https://crckorea.kr/cscommunity/library/8967>)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표58] 지역사회공헌인정제도 안내

구분	주요 내용
심사 목적	●기업과 기관의 건강한 사회공헌 조직문화 구축 지원 및 조직과 임직원의 역량 강화
지표 구성	●한국형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Korea CSR in the Community) 표준 가이드 개발 • ISO 14001(환경) · 26000(사회적책임) · 37301(준법경영), UN SDGs(지속가능발전 목표), UNGC(10대 원칙) • GRI Standards(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평가기준(MSCI, SASB, TCFD, KCGS, SUSTINVEST)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사회적 가치 실현)

구분	주요 내용
심사 방향	●기업과 기관의 사회공헌 수준 진단을 위해 변화이론에 성숙도 5단계 모델 적용 • 변화이론(TOC, Theory of Change): 투입→활동→산출→결과→임팩트 • 성숙도 모델(Capability Maturity Model) 5단계: 인식→기준→적용→확산→성과
심사 분야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조직, 직원 교육, 의사결정 ●문제인식: 문제 확인, 문제공유,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자원투입,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점검, 프로그램 평가 ●네트워크: 지역주민,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조직, 중소기업, 지방정부 ●영향성과: 성과측정, 성과평가, 성과확산 (* 회색으로 표기된 지표는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평가 지표를 의미함)
인정패 인정라벨	●사용기간은 인정 승인일로부터 1년(승인 공고일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명함과 홍보물 등 자체 제작·생산물품 인정라벨 부착 등 사용 가능
우대혜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농협중앙회로부터 보증료 차감, 보험료 할인, 무료 경영컨설팅, 기업연수, 심사비 지원, 예·적금 우대 등



출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안내자료'

- 전사 차원의 관리를 위해 공헌 활동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과 성과 등을 정량화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사회 공헌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 정성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공헌 활동은 정량화가 어려울 수 있어 간접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항목(e.g. 성과 달성정도, 인원·자금이 투입된 장소의 수 등)들은 가능한 수치화하여 기록하는 것이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 용이함

| 사례 1 |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D사는 2011년부터 어려운 환경에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원 멘토와 정기적 만남, 직업체험, 여름방학 캠프 등 적성을 찾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25] D사 드림스쿨 활동 사진



출처 | 월드비전, 기업사회공헌 국내사업 사례

Ⅰ 사례 2 | 업종 맞춤형 사회공헌

- S사는 기업의 특성을 살려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 타사와 협력하여 치료비 및 교육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림26] S사의 그린희망메이커 사업 활동 사진



출처 | 월드비전, 기업사회공헌 국내사업 사례

Ⅰ 사례 3 | 청년 일자리 창출

- H사는 인턴십 프로그램, 연구장학생·특성화고 등과 협력을 통한 전문인재 확보(산학협력),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미래기술 직무 교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 15,000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
- 또한, 향후 3년 간 로보틱스,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수소에너지와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신규 인력 채용을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함

출처 | 조선일보, 2021.11.22., 'H사, 4만6000개 청년 일자리 창출...로봇·자율주행 채용 확대'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Ⅲ. 지배구조(Governance)

부문별 관리항목		구분
중분류	체크리스트	
최고경영자 의지	최고경영자는 ESG 경영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습니까?	●
조직/시스템	ESG 경영 추진을 위한 담당 인력 또는 조직이 있으며,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이사회 운영	ESG 기회 및 위기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준법경영	ESG 관련 법규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관련 리스크가 없도록 관리하는 조직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윤리경영	반부패, 공정경쟁 등 사업성립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습니까?	●
정보공개	이해관계자들의 ESG 정보공개 요구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
내부 의사소통	ESG 관련 이슈 발생시, 내부 직원에 대한 비밀보장, 고충처리, 차별 및 보복 금지 등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
환경	협력사 선정 시 법규준수 여부, 환경리스크 등을 선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
사회	협력사 선정 시 공정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 인권보호, 윤리경영 적용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

● 핵심항목, ○ 부가항목, * 조건항목(B to C, 상장기업 등의 경우 해당)

- 지배구조(Governance)는 경영수익 및 기업가치 극대화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나 틀로, 한 조직을 다스리는 구조를 의미하며 가장 보편적인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는 최고경영자,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기관들이 설치되어 있음
- 국내외 여러 평가기관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는 새로운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기업 발전과 추가상승이라는 선순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의 원천이자 척도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한국은 주요 대기업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본격화되는 등 '새로운 리더'의 등장으로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지배구조(G)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반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진행한 ESG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지배구조 점수는 300점 만점 중 89.6점으로, 지배구조가 장기 관점에서 보완할 점으로 지적됨
 - 유가증권시장 평가대상기업인 중소기업 117개 사 중 임직원 윤리규정을 갖춘 기업은 10%인 11개 사에 불과하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기업 수는 한 자리에 불과함
- 환경(E)과 사회(S)를 추진하기 위한 기업 활동은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달린 만큼, ESG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이 필수적이고, 이에 중소기업도 전사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함

G-1 | ESG 경영체계 > 최고경영자 의지

관리 지표 | 최고경영자는 ESG 경영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습니까?

항목 구분



최고경영자는 ESG 경영에 대한 확고한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의의 |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혁신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최고경영자의 실천 의지는 핵심적 위치에 있음

-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최고경영자가 기업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므로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 또는 역할은 ESG 경영을 주도하는 강한 원동력으로 작용함
- ESG 경영은 수익성과 바로 직결되지 않는 장기과제로, 특히 중소기업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고경영자가 ESG를 우선순위에 두는 선제적 결단이 매우 중요함
- 경영 성과 증진과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최고경영자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실천 의지를 경영활동에 반영하고자 ESG 경영에 대한 확고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음

이행 방안 | 최고경영자는 명시적 표명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가 확고함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음

| 사례 1 | ESG 경영 실천의지 공식 홈페이지 게재

- S사는 ESG 경영 의지 제고 및 실천을 위해 당사 공식 홈페이지 상 관련 카테고리를 개설하고, ESG 경영의 기본 원칙, 전략 등의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경영 추진 의지 표출



세정사업에는 기후변화와 자연자원의 손실을 포함한 글로벌 지속가능성 차이를 인식하고, 기술과 혁신으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고자 노력합니다.

최신 ESG 경영 목표인 "자연과 공존하고 사회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100년 세명"의 구체적인 달성을 위해 ESG 경영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회사의 경영과 운영 전반에 걸쳐 환경, 기후변화, 안전, 화력, 안전, 노동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협약과 유엔 지속가능성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 사회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며, 이를 제 2025-2030년 전략과 2030 로드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출처 | SA 홈페이지

| 사례 2 | 서약식 참석 및 ESG 경영 선언

- '21년 4월 30일, 기업의 최고 경영진들은 공식적으로 개최된 포럼에 참석하여 '서울 ESG CEO선언'에 서명함으로써 CEO 주도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할 것을 선언

| 출처 | 데일리임팩트, 2021.04.30., 'CEO 83명, 'ESG시대'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다.'

| 사례 3 |

슬로건 제정

- L사는 지속가능한 기업의 의지를 공유할 수 있는 당사의 환경경영 슬로건을 제작 및 선포하여 캠페인의 목적과 방향성 및 당사의 친환경 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홍보



| 출처 | GREEN U SMILE 2021 ESG(E) Annual Report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G-2 | ESG 경영체계 > 조직/시스템

관리 지표 ESG 경영 추진을 위한 담당 인력 또는 조직이 있으며,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

요구되는 책임 및 성과 수준을 파악하여 이를 중점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적절한 인적자원 배분을 통해 ESG 경영을 전담하는 실무조직 및 보고·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의의 ESG 경영의 기본은 ESG관점에서 기업이 책임과 목표 및 성과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 과제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이를 성공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임

-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의 경영 활동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ESG 경영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 요구 및 리스크 분석 등에 입각한 경영 전략과 이를 실행 및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자원은 효율적인 ESG 경영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에 도움을 줌

이행 방안 내·외부 이해관계자 소통, 리스크 분석,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시각에서 ESG 경영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적절한 인원 및 프로세스를 포함한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함

- 내·외부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파악하고 리스크 분석 및 지속가능성 등 현실 요건을 고려하여 핵심 ESG 요소와 우선순위를 도출한 후, 이를 중점으로 전략 전개 방향 설정
 - 전략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ESG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와 핵심 토픽, 전반적인 비전과 전략, 기업 활동과 연관된 영향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환경영향 및 성과, 애로사항 등에 따라 일정 부분 수정·보완될 수 있으나 조직의 ESG 경영이념과 활동 목적이 반드시 일관되어야 함

[그림27] ESG 경영체계



출처 | 삼성 KPMG Newsletter 2021년 4호,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조직 내 구성원은 전문 지식 등 일정 조건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활동과 관련한 명확한 역할, 책임, 권한을 부여해야 함
 - 구성원에게 ESG 경영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 전담조직은 위험 및 기회요인(잠재적 영향) 파악 및 사업전략과의 연계, 다수의 부서 간 협업 조정, 최고의사결정권자로의 보고·의사결정 등 전반적인 업무 이행 효율 개선을 위한 표준 업무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함
 - 기업의 가치 사실 전반에 걸친 잠재적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제, 평판, 공급망, 인적 자본 등 다양한 유형의 위기와 기회를 모니터링하여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는 통합적 관리가 요구됨
- 기업의 ESG 경영 전략과 전담조직, 구성원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조직 내·외부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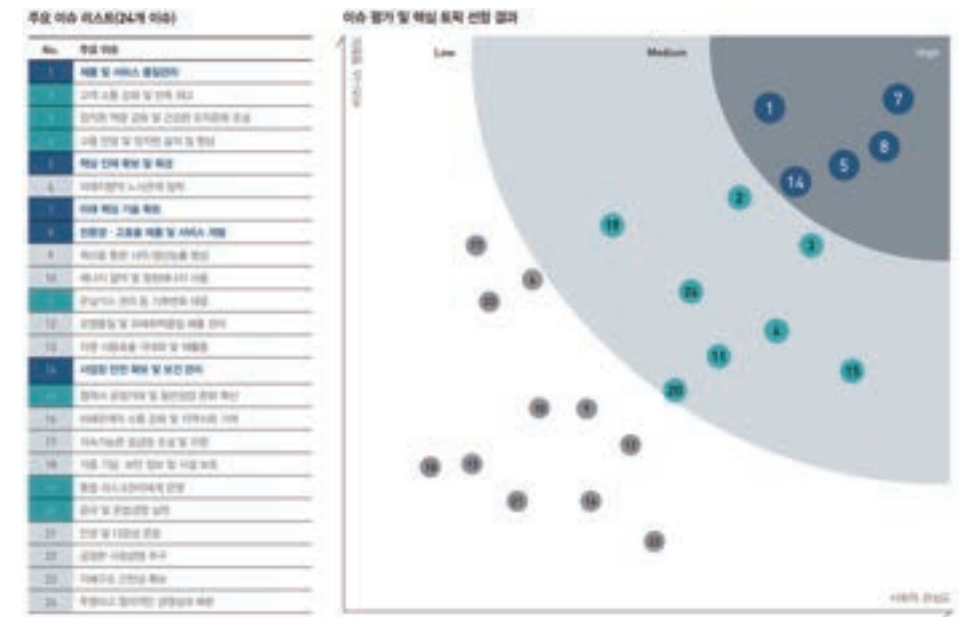
| 사례 1 |

ESG 핵심요소 중대성 평가

- D사는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당사 지속가능 경영에 연계된 주요 이슈 후보를 도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도와 당사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핵심 토픽 선정
- 선정 요소에 대한 관리 현황,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공개하고 있으며, 경영 계획 및 전략에 반영

[표59] D사 중대성평가 프로세스

단계	주요 내용
이슈 도출	● GRI, UN SDGs 등 국제 가이드라인, 동종업계, 언론, 내외부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당사의 지속가능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도출
이슈 평가	● 도출된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평가 및 비즈니스 영향도 평가 수행 ● 외부 이해관계자 및 임직원 설문조사, 매출·비용·리스크·평판 영향평가 반영
토픽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른 상위 이슈 중합하여 핵심 토픽(Material Topics) 선정
보고 승인	● 경영진 중대성 평가 결과, 핵심토픽 선정 결과 보고 및 승인 ● 향후 경영 계획 및 전략에 반영



출처 | D사 Integrated Report 2021

| 사례 2 |

위기 및 기회요인 식별 방법

- 메가 트렌드 분석, 이해관계자 참여, 중요성 평가, 미디어 모니터링, 규제 변화 모니터링, 공급망 실사 등

[표60] 기업에서 도출 가능한 위기 요인

유형	내용	사례
공급망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전체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	· 공급업체 인권 침해(근로자 안전사고, 임금 미지급 등) · 제품 및 서비스 납품 불가 사태 발생 등
평판	기업 평판 악화로 발생하는 위기	·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활동 · 제품 · 서비스로 인한 불매운동 · 기업 핵심가치와 모순되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 등
규제	규제 변화에 부적절한 대응으로 발생하는 위기	· 규제 미준수로 발생하는 제재, 벌금 등 · 글로벌 규제 미준수로 인한 사업영역 확장 불가 등
소송	소송으로 발생하는 직 · 간접적 비용에 관한 위기	· 사회적 책임 미흡으로 인한 정부, 공공기관, 협력사, 소비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분쟁 및 소송
인적	인적 자원과 관련된 위기	· 업무 만족도 및 몰입도 저하 · 이직으로 인한 핵심인재 이탈

[표61] 기업에서 도출 가능한 기회 요인

유형	내용	사례
신사업 모델 발굴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 발굴	· 친환경 사업 모델 구축 (전기차 등) ·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 개발 등
신규 고객 확보	사회 ·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고객 확보	· 원재료 조달, 제품 생산 과정에 사회적 책임 이행 (공정무역, 적정임금 지급 등) · 친환경 포장, 동물복지 인증 제품 출시 등
규제비용 절감 및 지원금 확보	관련 법 · 규제를 준수하여 규제 비용 발생 가능성을 감소하게 하고 정부지원 등의 부수적 효과 기대 가능	·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한 매출 증대 · 장애인고용과 고용 창출을 통한 정부 지원금 획득 등
운영 효율화	자원 효율화로 운영 비용 절감	· 폐기물, 부산물 재자원화 · 지역사회 원재료 수급을 통한 유통 비용 절감
우수 인재 유치	지속가능한 기업문화를 통한 우수인재 유치 및 생산성 제고	· 임직원 복지, 역량개발 지원 등 근로조건 개선과 적정 임금 지급, 근로자 권리 보호를 통한 우수 인재 유치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08. 'ESG 모범규준'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G-3 | ESG 경영체계 > 이사회 운영

관리 항목	ESG 기회 및 위기로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
-------	---	-------	----

ESG 경영의 최종 책임 기구로서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의 이사회를 설치해야 한다.

* 상장기업 적용

의의

이사의회의 중심 역할은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진을 감독하며, 더 나아가 경영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기업의 지배구조는 이사회로 대표되며, 이사회는 회사의 전략, 투자, 실적, 공시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경영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함
- ESG 이슈는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사회는 기업의 대표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최고경영자가 설정한 ESG 경영 전략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
 -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중장기 목표 수립 및 성과 평가, 개선방안 마련 등 전 과정의 주도적인 참여가 요구됨

이행 방안

ESG 경영 활동에 대한 주요 이슈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함

- 자본금 총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상법」에 의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수를 3명 이상으로 규정해야 하며,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기업도 필요에 의해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 있음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지배주주나 경영진인 집행임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외이사를 다수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총수의 25%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함
- 이사회는 객관적 ESG 경영 평가와 모니터링 등 의사결정 조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업 자원의 효율적 사용,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 요구사항 조정, 의사결정기구 역할 정립 등의 사항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함

[표] 이사회 권한 범위 (예시)

-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전략, 목표, 지표 수립
- ESG 경영 관련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 정립
- 기업 자원(재무적, 비재무적)의 효율적 사용
- ESG 경영 성과와 연계된 금전적, 비금전적 인센티브 시스템 제안
-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의 요구사항 조정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절차 수립 및 문제해결 관여
- 의사결정 이행의 사회책임경영 원칙 준수 여부, 긍정적/부정적 영향 점검 등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08. 'ESG 모범규준'

- 이사회를 비롯한 ESG 경영체계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공개 내용에는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 이사의 역할, 역량 및 성과 목표, 모니터링 방법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례 1 | ESG 경영체계 확립

- K사는 'ESG기획팀'과 '에너지 환경기술팀' 등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ESG 경영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독립된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이사회 중심의 선진적 지배구조를 도입하여 지배구조(G)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출처 | 매디케이트뉴스, 2021.01.13., '백복인 K사 사장, 올해 ESG로 승부... 전담조직 가동'

| 사례 2 | 투명성·다양성 확보한 이사회 시스템

- P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사 선임 프로세스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공정한 감독 및 의사결정을 위해 사외 이사 주요 결격사유를 규정해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통합보고서를 통해 대외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공개하고 있음

[그림28] P사 이사 선임 프로세스



출처 | P사 홈페이지

| 사례 3 |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 혁신

- S사는 회사 경영의 핵심 요소인 인사, 전략, 감사 등 3대 영역을 이사회와 보다 폭 넓게 공유하고 최고 의결 기구로서 이사회의 실질적 참여 수준과 독립성, 전문성 대폭 향상하여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재혁신
- 이사회 산하에 '인사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신설하여 ▲대표이사·사외이사 후보 추천·대표이사 평가, ▲사내 이사 보수 심의, ▲중장기 성장전략 검토 등 핵심 경영활동 수행

[그림29] S사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 도식



출처 | 이코노믹리뷰, 2021.03.28., '[한국경제 4대 엔진④] S사 "안으로 ESG, 밖으로 공격경영"'

- 비고 (출처)**
- GRI G4 Standards
 - RBA Code of Conduct

G-4 | ESG 경영체계 > 준법경영

- 관리 항목** | ESG 관련 법규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관련 리스크가 없도록 관리하는 조직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항목 구분** | ●*

법 동향 및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SG 요소별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상장기업 적용

의의 | 법을 준수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준법경영은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존립을 사수하며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진화함

- 기업에서는 제품의 생산을 포함한 제반 행위에 대해 다양한 법규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배상책임, 벌금, 행정조치, 기업의 이미지 하락 등 직·간접적 제재로 인해 경제적 손실 및 책임 비용이 발생하게 됨
- 가치소비의 유행과 SNS를 통한 빠른 여론 형성으로 단순히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정도가 아닌,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고 더 나아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함
- 뿐만 아니라 위반에 따른 제재의 강도가 점점 거세지면서 법 준수의 난이도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각종 민사 소송 내지 형사상·행정상 철폐 역시 기업 운영에 타격을 줄 여지가 충분함
-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분야에 적용되는 법률이 복잡·다양화되면서 준법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기업차원의 전략이나 대응 방안 마련 등이 부족하여 의도치 않게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사태가 벌어진 후에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은 극도로 제한적이고, 손실 비용이 크므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전에 컴플라이언스에 관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임

이행 방안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통 또는 업종별로 적용대상이 되는 규제를 파악하고, 관련 법률 공유, 이행상황 모니터링, 결과 평가 등 효과적 내부통제 및 자발적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일련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 여러 차원의 공통·업종별 적용 규제를 식별하여 풀(pool)을 정비하고, 발생가능성과 영향도를 고려하여 대응 범위를 설정한 후, 리스크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프로세스 구축
- 주요 리스크는 최우선 개선 대상으로 삼아 기업의 경영 전략, 업무절차, 사내 규정 및 지침 등에 즉각 반영함

[표62] 준법경영 프로세스

① 리스크 풀(pool)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운영에 있어 공통·업종별 준수해야 할 법률 및 제도를 식별하여 리스크 풀(pool) 마련 • 주기적으로 법률의 개정·제정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업데이트 필요
② 대응범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가능성과 영향도, 기업에서 중요시 여기는 기타 요소를 기준으로 수많은 리스크 중 어디까지를 대응해야 할 법적 위험으로 설정할 것인지 결정
③ 우선순위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현황, 준법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리스크(최우선 개선 대상), 중간 리스크(중장기 개선 대상), 낮은 리스크(현행 유지) 분류
④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를 기초로 업무 절차 및 내규 정비, 사내 교육 등 개선방안 도출

출처 | HOTEL&RESTAURANT, 2020.10.27., [율촌의 Law Mentoring] 시대적 변화와 함께 달라진 '준법경영'의 가치

- 또한,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활동 등 사후 조치에 관한 계획도 포함되어야 함
- 상장기업의 경우, 내부감사기구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준법경영 및 투명경영을 촉진하는 방안도 바람직함

| 사례 1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S사는 준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림30] S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역할



| 출처 | S사 홈페이지

| 사례 2 | 준법경영시스템 ISO37301 국제인증 획득

- S사는 '정도(Integrity)'를 회사 핵심가치 중 하나로 선정해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회사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준법지원시스템(ex. 준법지원인제도)을 도입
- 모든 임직원과 경영활동에 관련 법규와 회사 규정을 숙지시켜 자연스럽게 준수하는 기업문화 정착

| 출처 | 뉴데일리경제, 2021.05.20., 'S사, '세계최초' 준법경영시스템 ISO37301 국제인증 획득'

비고
(출처)

- ISO 26000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GRI G4 Standards
- RBA Code of Conduct

G-5 | ESG 경영체계 > 윤리경영

관리 항목

반부패, 공정경쟁 등 사업청렴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모든 형태의 부패 근절을 위한 사내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내외부적으로 공개하고,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규정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평가해야 한다.

의의

윤리경영은 기업 내 잘못된 관행이나 비용구조를 바로잡아 경제적 부가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경영활동의 일환이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이익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대의 기업모형은 경제적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향상을 위한 책임이 있다는 사고를 반영하고 있어 기업이 과거 어느 때보다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가치의 증진에 노력하기를 요망받고 있음
- 비록 법적으로 공식화되지는 않았으나 기업은 자발적으로 사회 통념에 의해 형성된 윤리적 기준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소비자, 근로자, 투자자 등)의 기대와 가치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

이행 방안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뇌물, 부패, 갈취 및 횡령 등 모든 형태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으로써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교육 가이드를 통해 임직원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교육하고 평가해야 함

- 기업 현황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명확한 목적에 따른 윤리경영 전략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도입 후에는 임직원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평가하고 개선해야 함

[표63] 윤리경영시스템 도입 Action Plan 7단계

구분	주요 내용
목적/목표설정	• 윤리경영 목적의 명확한 설정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목표 수립
현황 진단/분석	•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최고경영자, 주요 임원, 관리자 면담 및 자가진단 실시 • 설문조사 및 진단 결과 분석, 문제점 및 개선점 도출
추진전략 수립	• 윤리경영 전략적 추진계획 수립 • 윤리경영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설정 • 윤리경영모델 및 윤리경영시스템 구성요소 정립
윤리경영 조직구성	• 윤리운영위원회 구성, 행동강령책임관 임명 • 윤리경영전담 조직(윤리담당부서) 설치 • 윤리경영규정, 윤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윤리경영시스템 도입	• 윤리경영모델 정립 및 윤리경영시스템 구성요소 확정, • 윤리강령·실천지침·윤리경영방침 중 필수적 방침 제정
교육프로그램 실시	• 임직원 윤리교육 계획 수립 • 윤리교육프로그램 개발 • 윤리교육 실시
평가 개선	• 윤리경영시스템 평가 Tool 개발 • 윤리경영시스템 운영실태, 임직원 실천상황 평가 실시 • 윤리경영시스템 운영 및 실천 개선활동

※ 단, 중소기업의 특성 고려 시 '윤리경영 조직구성'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은 아니며 [표50]에 기입된 주요 내용은 자사의 업종별 특이사항,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압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기업경영종합연구원(KBMI)

- 주요 부패방지 이슈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사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며 주요 내용은 기업의 경영 전략 결정과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기준으로 구성
 - 윤리규정은 무관용 원칙을 준수하여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아야 하며, 해당 규정은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되 위반 정도와 책임에 비례하여 합당한 수준의 제재를 취해야 함
 - 필요 시, 윤리규정의 적용 대상을 자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업체, 협력사, 합작 투자사까지 확대할 수 있음

[표] 윤리규정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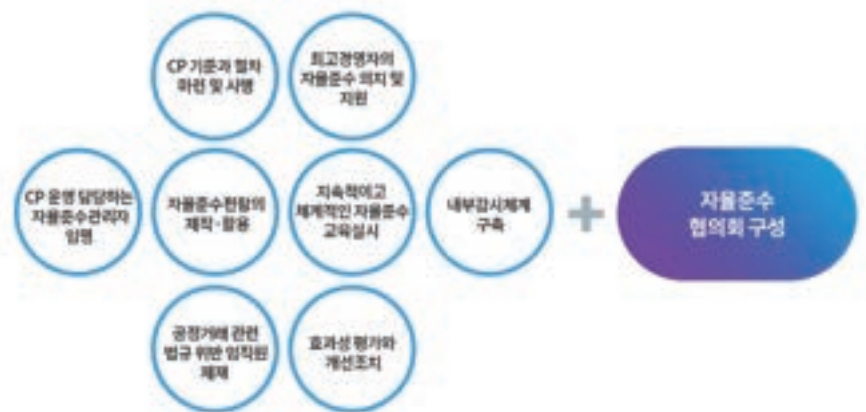
- 임직원의 사익 편취, 횡령·배임, 부패행위, 돈세탁 및 내부자 거래, 뇌물수수 및 청탁 금지
-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독과점 및 반경쟁 행위 금지)
- 회사 또는 고객의 비밀 정보 및 내부정보 등 정보 기밀 준수
-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금지
- 환경·안전·보건·의식 함양
- 불법적·비윤리적 행위 발생 시 보고 의무 및 내부고발 보호 등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08., 'ESG 모범규준'

| 사례 1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 P사는 2002년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자체적 내부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운영하여 임직원에게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3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8대 핵심요소



출처 | P사 홈페이지

| 사례 2 | 윤리경영 실천 12원칙

- S사는 '윤리경영 실천 12원칙'을 제정하여 경영이념의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임직원들에게 실천 원칙으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윤리경영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함

[표64] S사의 윤리경영 실천 12원칙

1. 임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과 윤리적 원칙을 준수합니다.
2. 목표 달성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모든 업무사항은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3. 모든 업무 활동에서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며 회사의 정보와 자산을 소중히 하여 유용하지 않습니다.
4. 사원 상호 간 예절을 중시하고 성희롱, 폭언 등 동료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5. 윤리적으로 부당한 지시는 해서도 안되고 그 지시를 따라서도 안됩니다.
6.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상사에 대한 선물 등 청탁행위를 하지 않으며,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합니다.
7. 사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향응 등 금전적 편익을 취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8. 고객만족을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하며, 고개고가의 약속은 고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9. 고객의 재산과 정보는 회사 자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10. 협력회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의 관계를 구축하고, 법과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며 거래합니다.
11. 친환경경영,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사회공동체에 기여하고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합니다.
12. 윤리경영 및 회사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보고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FKI, 2013 윤리경영 실천 사례집, '윤리경영! 그 길을 묻다'

| 사례 3 | 활동성과 평가 및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

- P사는 'Ethics Week'을 통해 각 부서에서 실시한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윤리실천 활동성과에 대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짐
- 또한, 담당 임원이 각 부서별 활동실적 리뷰와 함께 한 해동안의 윤리경영 활동 현황 및 이슈, 다양한 윤리 관련 사례 등을 교육함으로써 모든 임직원에게 기업 윤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킴
- 특히 담당 임원이 직접 진행함으로써 윤리마인드 및 실천력 제고에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됨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FKI, 2013 윤리경영 실천 사례집, '윤리경영! 그 길을 묻다'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G-6 | 커뮤니케이션 > 정보공개

관리 지표

이해관계자들의 ESG 정보공개 요구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

내·외부 이해관계자(고객사, 투자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기업 현황을 간담회, 홈페이지 등 접근이 용이한 소통 수단을 통해 공개하고, 관련 주요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상장기업에만 적용

의의

ESG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서 기업의 ESG성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지속가능 수준 및 비재무적 리스크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공시는 기업 신뢰 향상, 시장참가자들에게 공평한 기회 부여, 불공정 행위 억제 등에 기여함
- 해외 기업들은 이미 GRI, CDP(탄소공개프로젝트), SASB(지속가능성 회계 기준 위원회)의 Standard 등 다양한 정보 공개 표준 및 프레임워크를 통해 자발적으로 ESG 정보를 공개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
 - GRI기준은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공개 기준을 제시하고, 경제·환경·사회 분야의 지표를 구체화함
- 올해 1월,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E·S)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G)의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ESG 정보 공개 가이드선스'를 제시함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 공시 의무화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현재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는 1조원 이상, 2024년부터는 5천억 원 이상, 2026년부터는 전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

이행 방안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사를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 항목과 함께 공개하되, 모두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 ESG성과를 공개 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이니셔티브가 제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며 이 중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지표를 추려 '공개 또는 설명' 원칙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특정 기업 또는 특정 기업이 속한 업종에만 적용되는 지표일 수 있으므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자사에 맞는 지표를 미리 도출하기 위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특정 지표 생략 시 그 이유를 주석을 통해 설명해야 함
 - 지표는 연간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와 다른 경우 대상 기간을 따로 밝혀야 함

[표65] ESG정보 공개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주제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성 평가를 통해 핵심 보고 중요 이슈 선정
중요성 평가	① 경영 기초자료 수집 및 검토: 이사회 회의록, 부서별 KPI, 내부감사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ESG 관련 이슈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ESG요소가 실제 경영전략 및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
	② 국내외 ESG 동향 분석: 언론 보도 및 국내외 동종 산업 벤치마킹 조사를 통해 보고에 반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 이슈 및 이해관계자들 관심 파악
	③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집
	④ 중요 주제 선정: 내외부 중요성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주제 도출

단계	주요 내용
보고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적인 보고 방향을 기획하고 그 내용 구성 이해관계자의 관심 사항, 기업 전략 등을 기본적인 프레임으로 적용하여 기업의 사업모델, 주요 보고 주제 등을 고려한 가장 적절한 구조 선택 내용작성
내용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요소를 조직의 전략, 조직 구조, 운영체계, 활동 및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보고하는 것 권고 정보공개원칙에서 제시된 요건을 고려하여 내용 작성 후, 함께 검토하고 보완해야 함
내용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의 품질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킴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통해 독립 검증을 진행하거나 공인된 검증 표준 준용
대외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적시에 취득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 선택 정보는 연 1회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일정한 시기에 공개하는 것을 권고 ESG요소와 재무정보를 연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공개 시기는 사업보고서 공개 시점과 비슷하게 설정

| 출처 | KRX한국거래소, ESG 정보 공개 가이드선스

- 기업 정보 공개 시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문 용어 사용 시 해설을 병기하도록 하며, 홈페이지, 홍보책자 등 일반인도 접근이 용이한 수단을 활용하여 모두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수출, 해외 법인, 외국인 주주 등을 고려해야 하는 기업은 중요 공시 사항을 영문으로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보 선택, 효과적 수단 모색 등의 활동을 전담할 전문성을 갖춘 공시책임자(또는 조직)를 지정하고, 효율적 업무 이행을 위해 공시 교육 이수 및 타 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을 부여해야 함

[표66] ESG 정보공개 원칙

정확성 (Accuracy)	정보는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확해야 한다.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보의 작성자 및 보고서 작성자 등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보의 오류나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
명확성 (Clarity)	정보 공제를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개략적인 것은 이를 지양하여야 한다. 정성적 정보 및 정량적 정보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정보는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목표와 성과를 비교할 수 있고, 이를 다른 기업의 성과와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된 방법을 적용하여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지표의 산출 방법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전의 정보를 정정하고 변경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기업과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을 적용하고, 권장된 지표 및 방법론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형 (Balance)	많은 기업들이 사고 등 부정적인 이슈는 축소하고 긍정적인 활동을 부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보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자가 조직 전반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에 유리한 정보뿐만 아니라 불리한 정보도 이를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이 부정적인 이슈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을 권장한다.
검증가능성 (Verifiability)	정보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정의, 수집 및 기록되어야 하며, 정보의 공개는 재무 보고서와 유사한 내부통제절차를 따라야 한다. 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검증 수준, 범위 및 과정등을 보고서에 함께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시성 (Timeliness)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의 적시성을 위해서는 재무보고서와 ESG 정보의 공개기간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무보고서 발간 이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재무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적시에 공개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례 1 | 주요 ESG정보 공개 항목

구분	항목	지표	비고
조직	ESG 대응	경영진의 역할	ESG 이슈의 파악/관리와 관련한 경영진의 역할
	ESG 평가	ESG 위험 및 기회	ESG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의 ESG 프로세스 참여 방식
환경	온실가스 배출	직접배출량(Scope 1)	회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물리적 장치나 공장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간접배출량(Scope 2)	회사 소비용으로 매입 또는 획득한 전기, 냉난방 및 증기배출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 집약도	활동, 생산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당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사용	직접 에너지 사용량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의 에너지 소비량
		간접 에너지 사용량	판매제품 사용 및 폐기처리 등 조직 밖에서 소비된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사용 집약도	활동, 생산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당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
	물 사용	물 사용 총량	조직의 물 사용 총량
폐기물 배출	폐기물 배출 총량	매립, 재활용 등 처리 방법별로 폐기물의 총중량	
법규위반·사고	환경 법규위반·사고	환경법규 위반·환경 관련 사고 건수 및 조치 내용	
사회	임직원 현황	평등 및 다양성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 현황, 차별 관련 제재건수 및 조치 내용
		신규고용 및 이직	신규 고용 근로자 및 이직 근로자 현황
		청년인턴 채용	청년인턴 채용 현황 및 정규직 전환 비율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 임직원 현황
	안전·보건	산업재해	업무상 사망, 부상 및 질병 건수 및 조치 내용
		제품안전	제품 리콜(수거, 파기, 회수, 시정조치 등) 건수 및 조치 내용
		표시·광고	표시·광고 규제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공정경쟁	공정경쟁·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내부거래·하도급거래·가맹사업·대리점거래 관련 법규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출처 | KRX한국거래소, ESG 정보 공개 가이드선

사례 2 | 이해관계자별 소통 채널 운영

· K사는 가치 프로세스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구분하고, 이해관계자 특성에 맞는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대사항을 경영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림32] K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출처 | K사 홈페이지

- 비고 (출처)**
- GRI G4 Standards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G-7 | 커뮤니케이션 > 내부 의사소통

관리 항목	ESG 관련 이슈 발생시, 내부 직원에 대한 비밀보장, 고충처리, 차별 및 보복금지 등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
--------------	---	--------------	---

내부 이슈 발생 시 근로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즉각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의의 기업은 내부고발을 통해 회사 내 문제점을 빠르게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건전한 운영과 발전, 구성원들 사이의 원만한 소통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음

- 국내외적으로 기업 평가 시 내부고발제도를 중요한 지표로 제시하며, 글로벌 ESG 공시기준을 비롯한 국내외의 ESG평가기관, ISO 26000, ISO37001 및 국내 표준준법통제기준 등에서도 내부고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함
- GRI 기준에서는 기업이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 조직의 청렴성 문제에 대한 신고 매커니즘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요한 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SASB 역시 내부고발자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런 흐름에서 기업이 내부신고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회사 명에 실추, 생산성 감소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됨
- 그럼에도 신분노출에 따른 불이익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내부고발을 망설이는 많은 조직구성원을 위해 기업은 이들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보호함은 물론, 긍정적 역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이행 방안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입각하여 제기된 문제 처리와 고발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절차를 확립하여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익명성, 보복금지 등이 보장되는 내부고발시스템을 구축하여 의견을 수렴함

- 지침과 절차에는 담당자와 이들의 권한, 관련 안전에 대한 처리 방법, 비밀보장, 보복금지 등과 같은 사항이 필히 포함되어야 하고, 내부고발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든 고발에 대해 조사 및 제재가 이루어져야 함
- 내부고발시스템 매뉴얼 및 전문담당자 지정 운영(일반적으로 인사부에서 담당)을 통해 내부고발 접수, 처리, 제재 등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객관성,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표67] 내부고발시스템 구축 로드맵 설계

단계	주요 내용
기준선 설정	· 내부고발과 개인적인 불평불만은 분명히 구분하여 별도의 보고체계를 가져야 함
내부고발 정책검토	· 내부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조직 상층부는 끊임없이 내부고발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함 · 직원의 신원은 확실히 보호되고 모든 제보가 진지하게 다루어지며 제기된 문제는 적절하게 조사된다는 내용이 정책 상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내부고발은 자발적 행위가 아닌 의무로 설정되어야 함
정책의 범위	· 정책은 조직 내 모든 관리자와 직원에게 적용되고, 관련 내용은 조직 내·외부에 전달되어야 함 · 정책이 조직을 대신해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ex. 에이전트, 중개인, 컨설턴트, 계약자 등)을 비롯한 기타 이해관계자(ex. 고객사 등)까지 포괄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음
제보 의무	· 제보에 대해 '24시간 이내'와 같은 매우 신속한 응답시간을 제공해야 함 · 과잉신고 및 허생양 문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사소한 의심과 같은 불확실한 제보에 대해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필요한 훈련을 받고 경험이 많은 임직원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요구됨

단계	주요 내용
제보 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쉬운 제보를 위한 다양한 보고 채널을 수립해야 함 • 담당자는 조직원이 신뢰할만한 인물(내부감사 책임자, 조직대표 등)로 지정해야 함 • 내부자와의 대화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필요 시 다양한 외부 공익제보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비밀보장 및 익명성의 딜레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보자를 비롯한 제보를 조사하는 사람도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함 • 단, 조사관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적절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밝히되 철저한 비밀보장을 약속해야 함
내부고발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보자를 해고, 징계, 보복, 희생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함 • 단, 조직이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는 악의적 고발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고발시스템의 존재를 조직 내외부에 주기적으로 알리고 메커니즘의 실제 작동 예시와 질의 응답 등을 포함한 관련 교육 세션을 진행해야 함 • 내부고발 교육에서는 고위직 임원의 전격적인 참여가 중요함
조사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는 완전하고 신속하며 비밀스럽게 진행하되, 연루된 개인의 기본 권리는 항상 존중되어야 함 • 내부채널만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외부조사기관과 공동조사를 취할 수 있음 • 조사 진행 과정은 내부고발자에게 알려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함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고발의 결과로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이를 감사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함 • 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함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17.12., '효과적인 내부고발 프로세스 실현 방안'

- 상담전용(헬프라인) 시스템, 인터넷 전화접수,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 등을 내부고발 채널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스템은 임직원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내외에 공개해야 함
- 내부고발시스템은 문제에 대한 고발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조언이나 도움, 업무 중의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함양 등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사례 1 | 외부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익명보장 제보시스템 운영

- N사는 주주 및 전 계열사에 투명한 경영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익명보장 제보시스템을 확대 운영
- 내부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에서 비윤리적 사실을 인지할 경우 스마트폰, PC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원천적으로 제보자 신분 확인 불가능함
- 접수된 제보사항은 내부 감찰조사반을 통해 조사·처리되며, 확인된 위법·부당 사실에 대해 조치가 이뤄짐

[그림33] N사 익명제보시스템 내 주의사항 안내문 (일부 발췌)

※ 본 시스템은 공자의 윤리적 가치와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보자 보호를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비밀보장이 보장되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완벽하게 보장합니다.

※ 제보대상은 임직원(정규직 및 비정규직)이며, 직권 내 과소청구(과소청구, 횡령, 부패, 배임, 뇌물, 횡령, 배임, 과소청구, 과소청구) 또는 업무를 제외한 사정(가족, 사생활)에 관련된 부당행위, 직권남용 또는 사기수술 등입니다. (내부 제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직권 내 과소청구(과소청구) 관련 사항은 과소청구 및 제재처분 목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고, 직권사항(과소청구) 관련 신고 및 과소청구 관련 사항은 제보하지 않습니다.

※ 제보내용은 반드시 사전 사전으로 내부감찰조사반에 전달된 후에야 외부에 전달되며, 승인자 또는 확인자 등 신고자를 일부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필요한 조사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출처 | <https://www.redwhistle.org/report/report.asp?organ=7655&RTYPE=1>

| 사례 2 | 사내 게시판 및 신문고 등을 활용한 직원 고충 처리 지원

- S사는 부서별 현장 담당자를 지정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충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제보는 익명/가명 모두 가능하여 제보자에 대한 신원 보호가 보장됨
- 징계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내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징계 진행
- 또한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문상담사의 개인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병행 지원

[그림34] 고충처리 프로세스



출처 | S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1'

비고 (출처)

- ISO 26000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RBA Code of Conduct

G-8 | 공급망관리 > 환경

관리 지표 | 협력사 선정 시 법규준수 여부, 환경리스크 등을 선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

협력사의 환경경영 수준 점검, 위험요소 개선 지원 등 협력사의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이행하고, 협력사 선정시 거래대상선정 조건에 환경경영 평가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

의의 최근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다수의 ESG 리스크가 공급망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규제 및 투자자 동향이 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공급망 내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환경, 품질 및 안전보건 등 다양한 ESG의 이슈가 모기업의 명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점차 확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모든 가치사슬에서의 ESG요소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함
 - 애플의 경우, 모든 공급망 내 협력업체의 환경보호, 인권, 노동권 등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만을 사용하는 부품 공급업체 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선언
- 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은 법률 및 규제, 투자자, 표준 및 가이드라인, 지표, 산업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꾸준히 강화되고 구체화 되고 있음

이행 방안 신규 협력사 선정 시 환경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ESG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실사를 통한 환경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관리해야 함

- 기존 사용하던 협력사 선정 · 평가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고 진단 시트에 환경경영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협력사의 환경경영 현황에 대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종합평가에 반영해야 함
 - 사전에 협력사에게 요청할 정보에 대한 항목을 중요성에 따라 핵심영역과 부과영역으로 구분하여 목록화하고, 협력사의 규모 및 특성 등에 의해 적절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요구하도록 함
 - 필요 시,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객관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음

[표68] 협력사 신뢰성 판단을 위한 핵심영역 필수정보

핵심영역	필수정보
기업정보	공식 법인명, 상호, 전화번호, 담당자 정보(이름, 직위,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록사업장수, 사업영역, 공식문서에 명시된 운영기간, 등록 종업원수, 조직도
생산능력/역량	산업분류, 월별 생산능력, 사업장규모, 업무별 직원수, 연간매출
재무정보	과거 3년의 사업보고서(매출, 영업이익)
지배구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소유형태, 임원성명과 국적 증빙서류, 반부패 정책 혹은 성명서 사본, 반부패 관리시스템,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및 절차
임직원 정책	사회책임경영 시스템 인증서, 최신본의 산업이니셔티브(예:EICC) 심사보고서, 고용 최저연령 규정, 아동노동 금지정책 및 절차서, 채용 시 연령확인 절차에 관한 문서 및 기록 등
안전보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서, 소화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 기록, 공정/작업영역에 대한 위험평가 기록,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절차, 사고조사 기록 등

핵심영역	필수정보
정보보호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정보 수집, 처리, 보관에 관한 정책과 절차, 수집정보의 보관기간에 관한 정책과 절차, 정보 삭제 권한에 관한 정책과 절차,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서 등
환경경영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제품환경 인증서, 환경경영정책, 배출시설 허가서, 유해화학물질목록, 현지언어로 작성된 MSDS,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서 등
품질경영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품질경영방침, 매뉴얼, 절차서 목록,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 등

| 출처 | PAS7000:2014, <http://bsiblog.co.kr/archives/343>

- 협력사의 환경성과 점검 시, 환경경영 원칙 준수 여부, 환경성과 실적 등 정성 · 정량적인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선과제의 이행 수준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 협력업체에는 장기공급권, 계약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평가 결과는 협력업체에게 공유하여 개선에 대한 동기부여 및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함

| 사례 1 | 협력사 행동 규범 수립

- G사는 협력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 건전하고 바람직한 거래 관계 유지, 협력사의 역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근로자의 인권 존중, 안전한 작업환경, 환경친화적 사업장 관리, 기업윤리 준수 등과 관련한 '협력사 행동 규범'을 수립하여 협력사에 공유하였음
- 20년 초부터 거래 계약서에 사회적 책임(상생 발전을 위한 환경, 안전, 노동 등)을 다룬 내용을 반영하여 협력사에 '협력사 행동 규범' 준수 및 ESG 평가 및 방문실사에 협조 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그림35] 공급망 ESG 평가 프로세스



| 출처 | G사 2020 지속가능성보고서

| 사례 2 | 협력사 선정 · 평가 규정 개정

- H사는 협력사 선정 · 평가와 관련한 규정과 진단 시트를 개선하여 협력사의 ESG 위험유형별 평가 및 위험도를 분석하였으며, 개정된 규정은 글로벌 전 구매, 공장에 적용시킴

- 실사 평가 후, 개선이 잘 이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단하고 있으며, 진단 효율성을 위해 체크시트를 간소화하여 필수항목에 대해서는 실사(QC)진단을 하고 있음

[그림36] H사 협력사 선정·평가 규정 개정사항 및 평가시트

№	평가항목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1	CSR	CSR 1	CSR 11	인권	CSR 111
2	17항목 사회적 책임	인권, 노동, 직원복지	CSR 12	노동	CSR 121
3			CSR 13	사회책임채움 채움	CSR 131
4		CSR 2	CSR 21	공시정보 제재와 실적	CSR 211
5	공자 거점	CSR 22	공시정보 제재와 실적	CSR 221	공시정보 제재와 실적
6		CSR 23	공시정보 제재와 실적	CSR 231	공시정보 제재와 실적
7		CSR 3	CSR 31	인권	CSR 311
8		CSR 32	CSR 321	인권	CSR 321
9			CSR 33	인권	CSR 331
10			CSR 34	인권	CSR 341
11			CSR 35	인권	CSR 351
12			CSR 36	인권	CSR 361
13			CSR 37	인권	CSR 371
14		CSR 4	CSR 41	환경	CSR 411
15		CSR 42	CSR 421	환경	CSR 421
16		CSR 43	CSR 431	환경	CSR 431
17		CSR 44	CSR 441	환경	CSR 441

출처 | SC-3협력사 ESG 개선-H사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G-9 | 공급망관리 > 사회

관리 항목 | 협력사 선정 시 공정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 인권보호, 윤리경영 적용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항목 구분** | ●

기존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점검, 위험요소 개선 지원 등 협력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이행하고, 신규 협력사 선정 시 거래대상선정 조건에 사회적 책임 이행 평가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

의의 | 최근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다수의 ESG 리스크가 공급망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제 및 투자자 동향이 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공급망 내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환경, 품질 및 안전보건 등 다양한 ESG의 이슈가 자사의 명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점차 확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모든 가치사슬에서의 ESG요소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함
 - 애플의 경우, 모든 공급망 내 협력업체의 환경보호, 인권, 노동권 등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만을 사용하는 부품 공급업체 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선언
- 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은 법률 및 규제, 투자자, 표준 및 가이드라인, 지표, 산업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꾸준히 강화되고 구체화 되고 있음

이행 방안 | 신규 협력사 선정 시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ESG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실사를 통한 사회적책임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관리해야 함

- 기존 사용하던 협력사 선정·평가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고 진단 시트에 사회적 책임 관련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현황에 대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종합평가에 반영해야 함
 - 사전에 협력사에게 요청할 정보에 대한 항목을 중요성에 따라 핵심영역과 부가영역으로 구분하여 목록화하고, 협력사의 규모 및 특성 등에 의해 적절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요구하도록 함
 - 필요 시,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객관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음

[표69] 협력사 신뢰성 판단을 위한 핵심영역 필수정보

핵심영역	필수정보
기업정보	공식 법인명, 상호, 전화번호, 담당자 정보(이름, 직위,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록사업장수, 사업영역, 공식문서에 명시된 운영기간, 등록 종업원수, 조직도
생산능력/역량	산업분류, 월별 생산능력, 사업장규모, 업무별 직원수, 연간매출
재무정보	과거 3년의 사업보고서(매출, 영업이익)
지배구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소유형태, 임원성명 및 국적 증명서류, 반부패 정책 혹은 성명서 사본, 반부패 관리시스템,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및 절차
임직원 정책	사회책임경영 시스템 인증서, 최신본의 산업이니셔티브(예:ECC) 심사보고서, 고용 최저연령 규정, 아동노동 금지정책 및 절차서, 채용 시 연령확인 절차에 관한 문서 및 기록 등
안전보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서, 소화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 기록, 공정/작업영역에 대한 위험평가 기록,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절차, 사고조사 기록 등
정보보호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정보 수집, 처리, 보관에 관한 정책과 절차, 수집정보의 보관기간에 관한 정책과 절차, 정보 삭제 권한에 관한 정책과 절차,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서 등
환경경영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제품환경 인증서, 환경경영정책, 배출시설 허가서, 유해화학물질목록, 현지언어로 작성된 MSDS,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서 등
품질경영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품질경영방침, 매뉴얼, 절차서 목록,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 등

출처 | PAS7000:2014, <http://bsiblog.co.kr/archives/343>

-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 점검 시, 사회적책임경영 원칙 준수 여부, 성과 실적 등 정성·정량적인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선과제의 이행 수준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 협력업체에는 장기공급권, 계약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평가 결과는 협력업체에게 공유하여 개선에 대한 동기부여 및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함

사례 1 | 협력사 평가를 통해 공급망 발생 리스크 사전 파악

- S사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규 협력회사 선정 시 ESG 요소를 평가하고 있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전문 인력이 방문해 현장점검도 진행함
- 5개 영역(구매/품질·환경안전·노동/인권·에코파트너·재무현황)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회사만 협력회사로 등록하고, 매년 1차 협력회사를 대상 종합평가 진행(평가 항목 : 비즈니스 경쟁력, 지속가능성 리스크)함

[표70] S사 협력사 종합평가 항목

구분	항목	주요 내용
비즈니스 경쟁력	Technology	기술특허 보유, 연구개발 투자비중 등
	Quality	불량발생률,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등
	Responsiveness	모기업 주도 정책 참여, 혁신활동 등
	Delivery	입고 정확도
	Cost	거래금액 증가율, 원가경쟁력 보유 등
지속가능성 리스크	EHS	사업장 안전, 국제인증 보유 등
	Finance	신용평가등급, 부채비율 등
	Law(Social)	사업장 노동·인권, 부정행위 등

출처 | S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1'

사례 2 | 공급망 교육 및 훈련 지원

- G사는 협력사 임직원들의 ESG요소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간담회 운영

[표71] G사 공급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구분	주요 내용
안전교육·훈련 지원	● 안전 및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하여 여수공장 정비용역 협력사 대상 교육 지원
대정비작업 기간 SHE 강화 프로그램	● 작업반장, 화재감시자, 외부감시자 대상 특별 안전교육 실시 ● 안전감독 및 안전담당자를 위한 TA Safety 워크숍 운영
급유선 안전교육 및 점검	● 안전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급유대리점, 급유선사 대상으로 연 2회 실시 (2020년은 개별 선박 방선 점검만 실시)
내항수송선 안전교육 및 점검	● 안전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연 4회 실시
전국 물류센터 안전교육	● 사고예방교육, 안전의식교육, 고객만족교육 등 총 1,728회 실시
협력사 ESG교육	● 협력사 ESG역량 향상을 위하여 구매담당·협력사 대상 공급망 ESG 동향 및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에 대한 교육 연 1회 실시

출처 | G사 2020 지속가능성보고서

비고 (출처)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경영 이행가이드

발행일 2022년 1월
발행처 (재)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기획·편집 (재)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주)에코엔파트너스
ISBN 979-11-963899-9-4

※ 발행처와 협의되지 않은 무단복사 및 모방을 금지합니다.

